

연구보고 98-11

통일법제연구(V)

# 北韓法律用語의 分析(IV)

- 商事 및 對外經濟開放法制 編 -

1998. 12.

研究者 : 朴井源(招請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 發 刊 辭

북한은 1998년 9월 제10기 최고인민회의를 새로이 구성하고, 그 첫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헌법개정은 이른바 김정일시대의 공식화·제도화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1992년에 이은 재차 개정은 정치적·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의 현실변화를 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개정내용은 김정일체제를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과 경제제도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일체제하에서 북한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정일체제의 정책구도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김일성사후 사실상 북한체제를 이끌면서 추진해온 정책의 골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분야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경제회복은 북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한적이거나 경제부문에서의 개방과 개혁을 통한 외자유치를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국제연합개발기구(UNDP)의 주관하에 두만강지역지역개발사업(TRADP)에 의거한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여 해외자본과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분적이거나 자본주의의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경제특구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외자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북한은 대외경제개방관련법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북한은 경제난극복이라는 목표하에 외국인투자관련법제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경제원리에 입각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통합과정에서 통일법제의 완성이라는 면에서 이롭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북한법제를 통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원에서는 「북한법률용어의 분석」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번으로 네 번째 연구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서는 북한의 商事 및 對外經濟開放關聯法에 관한 법률용어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원리하

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제도와 질서를 규율하는 상사법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의 북한법제를 보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와 도입을 위해 필요에 따른 자본주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의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에 대한 자본주의경제원리와 제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북한에서는 자본주의경제원리에 의한 경제운용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외국인투자의 확대노력은 남북의 경제교류·협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그룹이 북한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일면 남한주민의 금강산관광의 실현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성과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북한에 대한 임가공사업의 실현 등 대북투자사업의 추진은 북한의 대외경제관련법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방법제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을 대비하는 데에 있어서 통일의 최종단계는 남북의 법적 통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중시하면, 북한법제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본 연구서는 북한의 商事 및 對外經濟開放法制의 내용을 개관하고, 주요 법률용어를 북한용례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북한법제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북한진출 기업 및 기업가에게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한의 商事關係를 비롯한 私法領域에서의 통일법제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서가 北韓法 및 統一法研究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구에 최선을 다해준 朴井源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98년 12월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徐承完



# 目 次

第1章 序論 .....	13
第1節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	13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	15
第2章 北韓의 商事法制 概觀 .....	17
第1節 北韓 商事法制의 基本內容과 發展 .....	17
I. 北韓 商事法制의 變化 .....	17
II. 北韓 商事法制의 特徵과 變化 .....	19
III. 北韓 商事法의 一般內容 檢討：南韓商法과의 比較 .....	20
1. 概 觀 .....	20
2. 南韓의 商法과의 比較 .....	22
(1) 商行爲法 .....	22
(2) 會社法 .....	24
(3) 銀行法 및 保險法 .....	25
(4) 海運法(海上法) .....	26
(5) 手形(어음)法·手票(行票)法 .....	28
1) 手形(어음)法 .....	28
2) 行票(手票)法 .....	29
第2節 北韓의 商事關聯 基本法制 .....	30
I. 民法 .....	30
II. 社會主義商業法 .....	32
1. 概 觀 .....	32
2. 社會主義商業의 基本(제1조~제8조) .....	33
3. 社會主義商業의 事業形態 .....	33
4. 商業의 文化性·奉仕性 및 商業施設의 現代化· 商業經營의 科學化·合理化 .....	35
5. 社會主義商業에 대한 指導·統制 .....	35

III. 保險法 .....	35
1. 概 觀 .....	35
2. 保險當事者(제3조~제16조) .....	36
3. 保險契約(제17조~제28조) .....	37
4. 保險補償(제29조~제43조) .....	38
5. 保險事業에 대한 指導統制 및 紛爭解決(제44조~제47조) .....	38
第3節 北韓의 商事關聯法制 .....	39
I. 對外經濟契約法 .....	39
II. 對外民事關係法 .....	40
III. 外貨管理法 .....	42
IV. 貿易法 .....	45
V. 土地賃貸法 .....	46
1. 概 觀 .....	46
2. 主要內容 .....	47
(1) 土地賃貸法の 基本 .....	47
(2) 土地賃貸方法 .....	48
(3) 土地利用權의 讓渡와 抵當 .....	49
(4) 土地의 賃貸料와 使用料 .....	50
(5) 土地利用權의 返還 .....	51
(6) 制裁 및 紛爭解決 .....	51
第3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法制 概觀 .....	53
第1節 對外經濟開放法制的 立法背景 및 法的 根據 .....	53
I. 立法背景 .....	53
1. 沈滯된 經濟難局 克服 .....	53
2. 制限的 經濟開放政策의 推進 .....	54
II. 對外經濟開放 및 外國人投資關係法制的 憲法上 根據 .....	55
1. 對外經濟開放政策의 法的 根據 .....	55
(1) 外國人投資의 憲法的 根據 .....	55
(2) 憲法上 人民의 福祉向上的 強調 .....	56
2. 中國의 外國人投資關聯法制과의 關係 .....	57

III. 北韓의 經濟管理原則·體系 및 對外經濟管理構造 .....	59
1. 北韓의 經濟管理原則 .....	59
2. 北韓의 經濟管理 體系 .....	61
3. 北韓의 對外經濟管理 機構 .....	62
第 2 節 外國人投資法制 .....	64
I. 外國人投資法：外國投資家の 北韓投資에 관한 基本法 .....	64
1. 概 觀 .....	64
2. 主要 內容 .....	65
(1) 基本原則 .....	65
(2) 投資當事者 및 投資領域·對象 .....	65
(3) 特惠 및 投資目的物 .....	66
(4) 土地使用權 및 勞務管理 .....	66
(5)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 .....	67
II. 合營法 .....	67
1. 概 觀 .....	67
2. 主要 內容 .....	68
(1) 基本原則 .....	68
(2) 合營當事者 및 合營對象 .....	68
(3) 合營企業의 法的 地位 .....	69
(4) 設立節次 및 出資 .....	69
(5) 合營企業의 組織과 管理 .....	70
(6) 經營活動과 生産 및 販賣 .....	71
(7) 財政 및 外貨管理 .....	71
(8) 決算과 分配 .....	72
(9) 解散 및 紛爭解決 .....	72
III. 合作法 .....	73
1. 概 觀 .....	73
2. 主要 內容 .....	74
(1) 合作의 基本原則 .....	74
(2) 投資對象 및 當事者 .....	74
(3) 創設節次 .....	75

(4) 組織 .....	75
(5) 經營活動, 決算 및 納稅 .....	76
(6) 投資償還 및 利潤分配 .....	77
(7) 解散 및 清算 .....	78
(8) 監督統制 및 紛爭解決 .....	78
IV. 外國人企業法 .....	78
1. 概 觀 .....	78
2. 主要內容 .....	79
(1) 基本原則 .....	79
(2) 外國人企業의 創設 .....	80
(3) 經營活動 .....	81
(4) 解散과 紛爭解決 .....	82
V. 外國投資銀行法 .....	83
1. 概 觀 .....	83
2. 主要內容 .....	83
(1) 基本原則 .....	83
(2) 外國投資銀行의 法的 地位 .....	84
(3) 外國投資銀行의 設立 .....	85
(4) 外國投資銀行의 資本金과 積立金 .....	86
(5) 外國投資銀行의 業務 .....	87
(6) 決算 및 優待措置 .....	88
(7) 解散과 制裁 및 紛爭解決 .....	88
II. 外國人投資法制 關聯細部規定 .....	89
1. 外國人投資企業 名稱制定 및 登錄規定 .....	89
2. 外國人投資企業 勞動規定 .....	89
3. 外國人投資企業 簿記計算 및 簿記檢證規定 .....	90
4.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	91
(1) 概 說 .....	91
(2) 稅金法의 一般規定 .....	92
(3) 稅金의 種類 .....	92
(4) 制裁 및 申訴·請願 .....	94

第 3 節 自由經濟貿易地帶法制 .....	94
I. 自由經濟貿易地帶法：自由經濟貿易地帶에 관한 基本法 .....	94
1. 概 觀 .....	94
2. 主要內容 .....	95
(1) 基本原則 .....	95
(2) 管理機關의 權限과 任務 .....	96
(3) 經濟活動條件의 保障 .....	97
(4) 關 稅 .....	98
(5) 通貨·金融 .....	99
(6) 特惠誘引制度 .....	100
(7) 紛爭·解決 .....	101
II. 自由經濟貿易地帶에 대한 關聯規定 .....	101
1.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人出入規定 .....	101
2.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企業常駐代表部事務所規定 .....	102
3. 自由經濟貿易地帶 自由貿易港規定 .....	103
4.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人滯留 및 居住規定 .....	103
5. 自由經濟貿易地帶 稅關規定 .....	103
6. 自由經濟貿易地帶 中繼'집입자'代理業務規定 .....	104
7. 自由經濟貿易地帶 建物讓渡 및 抵當規定 .....	104
8.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人投資企業 公印彫刻 및 登錄規定 .....	105
9. 自由經濟貿易地帶 加工貿易規定 .....	105
10. 自由經濟貿易地帶 廣告規定 .....	105
11. 自由經濟貿易地帶 工業地區開發 및 經營規定 .....	106
12. 自由經濟貿易地帶 國境檢疫規定 .....	106
13. 自由經濟貿易地帶 請負建設規定 .....	107
14. 自由經濟貿易地帶 觀光規定 .....	107
15.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投資家代理人規定 .....	107
16. 自由經濟貿易地帶 貨幣流通規定 .....	108
17. 自由經濟貿易地帶 中繼貿易規定 .....	108
18. 自由經濟貿易地帶 境界通行檢查規定 .....	108
19. 自由經濟貿易地帶 自動車登錄規定 .....	109

20. 自由經濟貿易地帶 價格規定 .....	109
21. 自由經濟貿易地帶 企業所管理運營規定 .....	109
22. 自由經濟貿易地帶 統計規定 .....	110
23. 自由經濟貿易地帶 家內便宜 奉仕業規定 .....	110
24. 自由經濟貿易地帶 朝鮮'원'貸付規定 .....	110
25. 自由經濟貿易地帶 國內投資企業 創設 및 運營規定 .....	111
第 4 節 對外經濟開放法制的 特色 .....	111
I. 法制整備의 展開 .....	111
II. 對外經濟開放 立法의 特徵 .....	112
第 4 章 北韓의 商事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	117
第 1 節 社會主義商業法上 用語의 概念 .....	117
第 2 節 保險法上 用語의 概念 .....	135
第 3 節 對外民事關係法上 用語의 概念 .....	144
第 4 節 對外經濟契約法上 用語의 概念 .....	159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	169
第 1 節 外國人投資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	169
I. 外國人投資法上 用語의 概念 .....	169
II. 合營法上 用語의 概念 .....	186
III. 合作法上 用語의 概念 .....	214
IV. 外國人企業法上 用語의 概念 .....	224
第 2 節 外國人投資企業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	238
I. 外國投資企業勞動規定上 用語의 概念 .....	238
II.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上 用語의 概念 .....	244
III. 土地貸貸法上 用語의 概念 .....	262
V. 稅關法上 用語의 概念 .....	274
VI. 外國投資銀行法上 用語의 概念 .....	279
第 6 章 自由經濟貿易地帶法上 用語의 概念 .....	297
第 1 節 自由經濟貿易地帶法上 用語의 概念 .....	297

第 2 節 自由經濟貿易地帶 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	301
I.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人出入規定上 用語의 概念 .....	301
II.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企業常駐代表事務所에 관한 規定上 用語의 概念 .....	303
III. 自由經濟貿易地帶 加工貿易規定上 用語의 概念 .....	305
IV.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人投資企業 公印彫刻 및 登錄規定上 用語의 概念 .....	309
V. 自由經濟貿易地帶 工業地區開發 및 經營規定上 用語의 概念 .....	312
VI. 自由經濟貿易地帶 廣告規定上 用語의 概念 .....	315
VII. 自由經濟貿易地帶 中繼貿易規定上 用語의 概念 .....	318
VIII. 自由經濟貿易地帶 觀光規定上 用語의 概念 .....	322
IX.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投資家代理人規定上 用語의 概念 .....	328
X. 自由經濟貿易地帶 貨幣流通規定上 用語의 概念 .....	332
XI. 自由經濟貿易地帶 境界通行檢查規定上 用語의 概念 .....	337
XII. 自由經濟貿易地帶 自動車登錄規定上 用語의 概念 .....	338
北韓의 對外經濟關係法規 現況 .....	341
參考文獻 .....	345
用語索引 .....	351





## 第1章 序論

### 第1節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북한에서 김일성 사망 이후 파행적인 정치체제를 벗어나 '김정일시대'가 열렸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199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의 재차 개정을 계기로 북한에서 김정일시대가 공식화되었다.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을 계기로 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에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제분야에서도 새로운 전개국면을 맞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돌아보면, 북한은 1980년 후반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 개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계사적 변혁에 대해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북한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역행하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내부체제를 결속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 연대의 와해에 의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북한 경제체제 및 경제정책의 기초<sup>1)</sup>는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혁은 결국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북한경제의 회복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북한은 정치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사회주의이념을 강화하고 주민의 내부결속을 강제하는 한편 경제의 회생은 주민의 체제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급박한 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이념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제한적이거나 개방을 모색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경제부문에서의 개혁시도는 북한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일성 사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에 따른 체제강화를 위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상강화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한 북한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민의 의·식·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북한주민

1) 「'95 북한개요」(통일원, 1995), 140~143면.

의 이반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정치체제의 고수와 부분적인 경제개방이라는 이중적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전환은 법제면에도 반영되었다.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법제정비는 1992년 사회주의헌법의 개정을 통해 그 방향이 제시되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한 북한의 정책변화는 1992년 헌법개정을 전후한 법제정비를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sup>2)</sup> 이 가운데 이른바 외국인투자 법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외경제개방방법제는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개방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법제이다. 북한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으며, 그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이 지역에 남한기업과 기업인의 투자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남북간 경제교류 및 협력관계는 확대 일로에 있다. 올해 들어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사업의 전개는 대표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한의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의 하나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sup>3)</sup> 이에 따라 남북은 경제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그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경제적 파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한도 남북 교류협력기반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입법 및 법제정비를 통하여 그 법적 대책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북한의 상사법제 및 대외경제개방방법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분석·고찰함으로써 그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개방방법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이들 법제를 뒷받침하는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원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면 자본주의경제원리를 수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상사 및 대외경제개방방법제를 남한법제의 그것과 비교고찰함으

2) 이에 관해서는 張明奉, “北韓의 法制整備를 통해 본 北韓의 變化展望”, 「公法研究」, 제24권 4호(韓國公法學會, 1996), 205~237면.

3)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해설자료)(통일부, 1998), 5면, 13면.

로써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북한법제의 이해에 기여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의 통일법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본 연구는 「북한법률용어분석」의 헌법 편,<sup>4)</sup> 형사법 편,<sup>5)</sup> 민사법 편<sup>6)</sup>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상사법제 및 대외경제개방법제를 대상으로 그 연혁과 법률용어를 분석하되, 기 연구한 북한법률용어분석의 내용과 연계하여 고찰한다.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토대는 헌법 및 민사법을 통해 그 기본적인 법적 근거의 기초위에 그 후속조치들이 마련되어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서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인투자법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먼저 북한의 상사법제 및 대외경제개방법제의 일반내용과 각 법률의 주요내용을 개관함으로써 그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북한의 상사법제 및 대외경제개방법제의 입법배경과 일반사항을 검토한다. 여기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변화내용과 북한법의 체계상 대외경제개방법제의 지위에 관하여 고찰한다.

둘째, 북한의 상사법제 및 대외경제개방법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와 법적 연관성을 가지는 북한의 「민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셋째, 북한의 상사 및 무역관계법에 해당하는 법으로서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무역법」, 「보험법」, 「세관법」 등에 관한 내용을 개관한다.

넷째, 북한에 대한 외국투자의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외국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및 종류를 살펴되, 합영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외국투자은행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각각의 법제(「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를 통해 알아본다. 아울러 북한의 「외화관리법」을 중심으로 외화관리 및 환율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섯째,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그 관련법제를 고찰한다. 그 관련법제에는 자유무역항 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의

4) 「北韓法律用語分析(Ⅰ)」(한국법제연구원, 1995), 1~463면.

5) 朴相哲 外, 「北韓法律用語의 分析(Ⅱ)」(한국법제연구원, 1996), 1~299면.

6) 朴井源, 「北韓法律用語의 分析(Ⅲ)」(한국법제연구원, 1997), 1~322면.

## 第1章 序論

공업지구 개발 및 경영규정, 가격규정, 통계규정, 기업소관리운영규정, 외국인투자 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 규정, 외국인투자가 대리인 규정, 중계집임자 대리업무규정, 건물양도 및 저당규정, 회폐유통규정, 조선원 대부규정, 자동차등록 규정, 중계무역규정, 가공무역규정, 가내편의봉사업 규정, 청부건설 규정, 관광규정, 광고규정, 외국인출입규정,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경계통행검사규정, 국경검역 규정, 세관규정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의 기본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세부규정에 관해서는 개략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개별적 법률용어분석에서 그 관련되는 사항을 함께 언급한다.

다음 북한의 상사 및 대외경제개방법제에서 사용된 법률용어를 그 이론적 배경과 함께 법제도 및 북한용례를 통한 실제와 관련하여 그 개념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북한의 법제를 중심으로 각 용어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북한원전에서 용례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이를 통해 북한법제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의 상사 및 대외경제개방법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더욱이 이 분야에서의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필요에 따른 기초적인 법령분석 및 남한법제와의 단순비교에서 나아가 법적 시각을 통해 북한법 체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북한의 상사 및 대외경제개방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를 통한 북한의 경제부분에서의 변화의 향방을 고찰하고 북한경제교류 협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여 논구한다. 최근 북한은 그들의 법제내용을 공표하는 데에 있어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1998년 헌법개정 내용을 바로 공표하였으며,<sup>7)</sup> 대외개방 및 외국인투자 관련법은 영문 및 일문으로 번역하여 대외에 공표함으로써<sup>8)</sup> 경제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7) 1998년 改正憲法の 채택과정과 全文은 「로동신문」, 1998년 9월 6일, pp.7~8; 「민주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1998년 9월 6일, p.4, pp.7~8.

8)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법규집」, Vol 1~7(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1997)은 대외경제개방법제의 全文을 한글과 英文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月刊 朝鮮資料」(東京: 朝鮮問題研究所)를 통해 이들 법제를 대외에 공표하고 있다.

## 第2章 北韓의 商事法制 概觀

### 第1節 北韓 商事法制的 基本內容과 發展

#### I. 北韓 商事法制的 變化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상사법의 존재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인의 영업활동의 인정이 전제된다. 북한은 정권초기에는 개인상인·회사·상업등기 등의 제도들을 인정하고 있었다.<sup>9)</sup> 북한의 1948년 헌법을 보면, 중소 상업기관에 대한 개인소유의 법적 보장(제8조) 및 국민의 중소산업 또는 상업의 자유경영을 인정(제19조)하는 대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북한에서 노동에 의하지 않는 모든 소득을 중간이윤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행위라는 개념을 찾기 어려웠다. 당연히 私法으로서의 상법이 성립될 여지는 봉쇄되어 있었다. 법제면에서 북한정권수립 후 상법전의 제정은 없었으며, 초기 단편법령에 의해 상사관련규정들이 있었지만, 그 법령들은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원리상 그 효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북한헌법은 생산수단의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소유원칙을 규정하고 제한적 범위에서 개인소유를 인정하고<sup>10)</sup> 또한 1990년에 제정된 북한민법은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규정하고(제32조), 그 소유형태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7조). 특히 개인소유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9) 예컨대 상업국임시행정조치요강(1945. 12. 29), 산업 및 상업발전에 관한 법령(1946. 11. 25), 상법기관에 관한 명령(1946. 11. 25) 등의 규정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II) - 商事·經濟, 勞動關係法 -」(法務部, 1997), 39~40면.

10) 이에 관하여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에 의해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협동단체의 소유를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개정하였다. 1998년 개정헌법은 소유제와 관련하여 국가소유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회협동단체의 소유 및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북한경제의 현실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1998년헌법상 경제조항의 변화내용에 관해서는 장명봉, “북한개정헌법(1998. 9. 5)의 경제조항변화의 고찰”, 「統一經濟」, 1998년 10월호(現代經濟研究院, 1998), 40~54면.

사회주의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제58조)고 규정하였다. 이 점에 있어 북한의 1998년 개정헌법은 북한민법의 개인소유부문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제24조)

북한법분야에서 상사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형식적인 상법전의 존재여부만을 두고 볼 때, 북한에는 남한에서와 같은 독립된 상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상법이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민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해결하고 있다. 형식적 법규정과 관련하여 북한의 상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북한법분야에서의 상법분야의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sup>11)</sup> 상거래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북한에서 상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우 남한의 상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sup>12)</sup> 남한에서의 상법과 같은 의미의 독자적인 상법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 있는 북한에서 자본주의적 원리의 토대위에 있는 상법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현재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제양상을 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 있는 북한의 상사관계에 관한 변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기업(회사)에 관한 영역에서는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북한은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북한영역 내에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제16조),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법인 또는 개인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의 장려조항(제37조)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여기에다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하는 대목을 추가하였다(제37조).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북한에서 대외경제개방방법제 및 외국인투자법제가 제정되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11) 그 한 견해는 북한민법에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상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법이 상법 및 경제법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독자적인 상법분야는 없다고 보는 견해 <崔達坤, “북한법의 체계와 법원”, 「북한법령집」, 제1권(대륙연구소, 1990), 15면>이고, 다른 견해는 북한법제상 ‘상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이상 상법영역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崔鍾庫, “北韓法の 構造와 思想”, 「北韓研究」, 제1권 4호(大陸研究所, 1990), 36면>가 있다.

12) 북한민법은 제2조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에서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그리고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가 된다”고 하여 상업활동에서의 계약관계에 민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위한 제도적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인투자법제는 상사법에 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제들은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상법은 아니지만 그 내용상 상사법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인투자법제를 통해 북한의 상사법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

## II. 北韓 商事法制的 特徵과 變化

북한의 상사법제의 특징은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징 및 원칙과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에 기초하여 다음에 북한 상사법제의 원칙에 관하여 언급한다.

첫째,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사회화를 말하는 것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사회적 생산물의 생산·분배 및 소비 대부분을 단일국가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전술하였듯이 북한은 정권초기 개인상공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1958년경부터 이른바 사회주의단계로의 진입이라는 북한 스스로의 평가에 따라 국유화 내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도입과 함께 개인상공업의 영역은 부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점에서 북한에서 생산수단의 소유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확대되고, 국가소유의 대상과 범위의 축소에 따른 사회·협동단체 및 개인의 소유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들 영역에서의 상사관계의 범위는 확대될 것이고 이를 규율하게 되는 법제도 발전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종래 사회주의국가에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법의 기능은 국가의 경제조직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는데, 북한에서 경제영역에서 제한적이나마 자율원칙과 자본주의원리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변화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부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국가들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회에 있어서 모든 갈등과 모순의 온상이고 자본주의적 폐단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따라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였다. 결국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무의미하게 된다. 사회주의체제인 북한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부인하였으며, 사법의 대표적인 형태인 민법에 대해서도 공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예컨대 계약이 재산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권리주체간의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이해되기 보다 국가경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 절차

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노동에 의하지 않는 모든 소득을 중간이윤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는 북한에서 상행위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사법으로서의 상법은 성립될 여지가 없게 된다.<sup>13)</sup>

셋째, 영리성이 부정된다는 점이다. 상행위란 개념이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북한에서 영리성의 추구가 있을 수 없다. 그 예로써 북한민법은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sup>14)</sup>하는 것을 금지”(제155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내경제면에서 독립채산제 및 분조경영제의 실시, 농민시장의 허용, 터발경리의 인정 등은 자본주의에서의 인센티브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의 영리성의 배제라는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 개정헌법은 독립채산제와 ‘원가·가격·수익성’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제33조) 자본주의적 원리를 가미하고 있다. 이런 점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방법제는 기본적으로 서방 자본주의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자본주의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북한에서 합영회사, 합자회사,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설립은 법에 의해 가능하고, 이러한 기업설립은 금융분야에도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을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따라서는 북한경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중국의 경제개혁의 과정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다.

### Ⅲ. 北韓 商事法의 一般內容 檢討 : 南韓商法과의 比較

#### 1. 概 觀

북한의 상사법을 남한의 상법상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이를 상대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전술하였듯이 북한 상사법의 원칙이 남한의 그것과는 다르며 북한의 상사법의 내용은 개별법제에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상사에 관한 법제는 대부분이 개인상공업이 허용되던 정권초기에 제정되었던 것이었다. 이에

13)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법무부, 1992), 10면.

14) 북한에서 이를 어떤 상품을 사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비싸게 팔아 넘기는 일이라고 한다. 「조선말대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902면.



비해 199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상업법」은 그 명칭에 '상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명칭과는 달리 국가의 계획경제에 의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규율하는 경제법으로서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하면서 제한적이거나 상법상 개념을 도입하거나 부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남한에서의 상법상 일반개념에 비추어 북한의 상사에 관한 일반사항을 살펴본다.<sup>15)</sup>

첫째, 상업의 주체에 대한 사항이다. 먼저 북한에서는 상인의 개념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원리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북한에서 상인은 "상업적 리득을 얻으려고 장사하는 계층. 장사군"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상업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고, "상인의 활동에 의해서는 아무런 사회의 물질적부도 창조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들이 얻는 리득은 직업적생산자들이 창조한 가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6)</sup> 북한에서 상인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의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그 이후의 법령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법에서 개인과 구별되는 상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남한에서와 같이 개인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과 구별되는 상법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sup>17)</sup> 그러나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개방과 관련하여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설립되는 합영회사 등을 인정하는 외국인투자법제에서는 상법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북한 민법에 의하면, 남한의 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용되는 기관·기업소·단체가 주체가 되고, 예외적으로 합영회사가 상거래 당사자로 인정된다(제11조). 아울러 이들은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15) 이에 관해서는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Ⅲ)」, 前掲書, 49~53면.

16) 그러면서 북한에서 상인은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과도기의 첫시기에는 일정한 기간 남아있게 되지만, 사회주의혁명의 완수와 함께 비로소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고 하고, 북한에서는 광복후 민주건설시기 예속자본가이며 친일주구였던 상인들을 청산하였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중소상인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사회주의 혁명시기에 이르러서는 협동경리에 망라시켜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367면.

17) 북한은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하에서 개인상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서 기업소 등이 상품판매등 상업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주체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때로부터 민사권리능력(법인격)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게 된다(동법 제12조). 다음 상업의 허가에 관해서는 북한에서 1958년 이후 개인상공업이 금지된 이후 과거의 상업에 관한 규정들은 무효화되어왔다.

둘째, 상호에 관해서는 현재 직접 상호권을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그러나 1996년 2월 14일 정무원결정에 의해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명칭제정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에서도 상호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업등기에 관해서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외국인투자법제와 관련하여 개별법령에서 합영기업 또는 외국인기업의 등록제도(「외국인투자기업등록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등)를 통해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 2. 南韓의 商法과의 比較

다음에 북한의 상사법제를 남한의 상법상 개념 및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그 실정을 살펴본다.

### (1) 商行爲法

북한에서 상행위의 개념규정 및 상행위일반에 관한 직접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의 개별적 상행위에 관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규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계약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미비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상행위의 개념은 상인개념과 함께 상법상 적용범위를 밝히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래서 남한상법은 제46조에 열거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상행위가 되며 이에 대해 상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상인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이윤추구를 목적을 하는 영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행위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다른 일반거래와 함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일부 경제특별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다음에 북한법상 개별적 상행위에 관하여 남한상법상 상인 및 회사와 비교되는 기관·기업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거래관계에 관한 해당법령과

연관하여 언급한다.

첫째, 북한에서는 매매에 관한 계약으로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이 인정된다. 전자는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물건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값을 물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고 한다.<sup>18)</sup> 후자는 국가의 물자배정계획에 기초하여 한편 당사자(공급자)가 약정된 조건에 맞게 제품을 상대방에 공급할 의무를 지며 상대방 당사자(수요자)는 그 제품을 받고 대금을 제때에 물 의무를 지는 사회주의적 기관·기업소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한다.<sup>19)</sup>

둘째, 운송법에 관해서 북한법은 운송계약을 수송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은 한편당사자(수송인)가 짐 또는 여객을 일정한 장소까지 실어다 줄 의무를 지고 다른 편 당사자(짐을 보내는 사람 또는 여객)가 그에 대하여 미리 정한 운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중요 운수수단들이 국가 또는 협동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인은 언제나 국가 또는 협동단체 수송기관이 된다. 한편 짐을 보내는 사람은 기관·기업소·단체이거나 개별적 공민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의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소유의 대상에서 '교통·운수' 부문을 '철도·항공운수'로 한정함으로써(제21조) 이외의 도로 및 해상운수 부문이 국가소유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 및 해상운수 분야에서 건설 및 운영사업에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육운 및 해운관련 사업에 대해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연 셈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한 진일보한 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에서 수송계약은 수송수단의 종류에 따라 철도수송계약·자동차수송계약·해상수송계약·강하수송계약 및 항공수송계약으로 구분되며,<sup>20)</sup> 수송대상에 따라 화물수송계약<sup>21)</sup>과 여객수송계약<sup>22)</sup>으로 나뉘어진다.

셋째, 창고업에 관하여 북한민법은 '보관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66

18) 「법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261면.

19) 상계 사전, 30면.

20) 북한의 수송체계는 철도수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로수송과 하천 및 해상수송은 철도수송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보면, 화물수송은 전체 물동량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와 해운은 각각 7%와 5%를 담당하고, 여객수송의 경우 철도가 62%, 도로가 37%, 해운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總攬(1983~1993)」(북한연구소, 1994), 441면.

21) 북한민법 제125조~제133조.

22) 북한민법 제194조~제196조.

조~제176조). 이에 의하면, 공민간의 보관계약은 무상으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상대로 창고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제167조2문). 따라서 보관료를 받는 보관사업의 주체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같은 경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1950년의 「창고사업에관한규정」<sup>23)</sup>에 의하면 '교통성 룽운관리국 산하 룽운사업소'와 같은 기관이 창고업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었다.

넷째, 공중접객업에 관하여 북한민법상 규정을 유추하여 살펴볼 수 있다. 남한의 상법은 공중접객업에 관하여 공중의 집래에 적합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어 이 시설의 이용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제151조),<sup>24)</sup>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사안마다 개별단속법규를 두고 있었다.<sup>25)</sup> 다만, 북한민법은 "려관, 극장, 회관과 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진다"(제171조)고 규정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남한상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 (2) 會社法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법인으로 인정함으로써(북한민법 제11조제1문) 공민 외에 기관·기업소·단체와 같은 법인에만 재산관계의 권리주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해 북한에서는 사법인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개방법제로서 「합영법」 및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등에 의한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등은 사법인으로서 회사에 해당한다.<sup>26)</sup>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합영회사 등의 기업은 그 설립근거를 달리하고 있

23) 1950년 4월 29일 교통성 규칙 제9호로 제정되었는데, 현시점에서 이 규정의 효력유무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北韓法の體系的考察(Ⅲ)」, 前掲書, 61~62면.

24) 여관, 음식점, 목욕탕, 리발관, 극장, 다방, 당구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25) 예컨대 「여관영업단속규칙」·「음식점영업단속규칙」·「목욕탕영업단속규칙」·「이발사업단속규칙」(1946. 6. 4. 보건국 지령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비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법규가 현재 시행되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6) 북한민법은 합영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제11조제2문), 1992년헌법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과의 합영과 합작의 장려조항(제37조)을 신설하였다.

지만, 남한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기업소·단체는 남한법상 회사기업과 비교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를 띠고 그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종래 북한에서 사회주의원리에 입각한 목적상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남한에서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개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도모하면서 북한에서도 회사의 개념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회사는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상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은 북한의 회사법영역을 이루는 기초법체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법제면에서도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sup>27)</sup>

북한은 회사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태인 동시에 사단법인”이라고 정의하고, “둘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가들의 결합은 설립과 존속의 필수적 조건”이며 “법적으로 회사임을 인정받을 때만이 회사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28)</sup> 그리고 “회사는 원래 자본주의적 기업의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련의 회사를 조직하는 것은 대외경제관계에서 자본주의나 라회사들과 평등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에서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며 합병법과 합작법에 따라 조직운영된다고 밝히고 있다.<sup>29)</sup> 이를 보면, 북한도 자본주의국가에서와 같은 회사의 법적 형태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회사법을 “회사의 조직과 활동, 해산등과 관련한 관계를 규제한 법”이라고 하고, 북한에서 회사와 관련한 문제를 합병법, 합작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sup>30)</sup>

### (3) 銀行法 및 保險法

북한은 은행에 관하여 “자금의 융통업무를 전문으로 맡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상품화폐관계의 발생과 관련하여 화폐자금의 융통을 전문화하는 기관으로 발생발전하였다”고 설명한다.<sup>31)</sup> 북한에서 현재 금융기관으로는 조선중앙은행을 정점으로 하여 무역외환전문은행<sup>32)</sup>과 저축전문기관<sup>33)</sup>으로 구성되는 단일은행제도

27) 이에 관한 상론은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Ⅲ)」, 前掲書, 70~76면.

28) 「민사법사전」, 前掲 辭典, 708면.

29) 上掲 辭典, 709면.

30) 上掲 辭典, 709~710면.

31) 上掲 辭典, 751~752면.

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합영은행<sup>34)</sup>과 대외보험거래를 취급하는 조선국 제보험회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는 은행이 인민경제계획을 재정적으로 보장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비해, 자본주의사회의 은행은 자본주의적 상품유통의 기초 위에서 발생한 경리기관으로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의 도구라고 비교하고 있다.<sup>35)</sup>

북한에서 은행계약은 자금계약(예금계약)과 은행대부계약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전자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를 위한 계약을 말한다(북한민법 제200조). 후자는 은행기관이 기관·기업소·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를 위한 계약으로(동법 제225조), 이 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 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성립한다(동법 제226조). 다시 말해 은행대부계약은 한편 당사자(은행)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화폐자금을 꾸어줄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그 대부금을 받아쓰고 원금과 이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sup>36)</sup> 이 계약은 소비대차관계로서 신용거래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꾸기계약(북한민법 제221조)과 공통점을 가지나 그 당사자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sup>37)</sup>

북한은 은행법과 관련하여 대외경제개방방법제 가운데 「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한편 북한의 보험제도에 관하여 「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도 후에 별도로 기술한다.

#### (4) 海運法(海上法)

해상법은 일반적으로 해상기업의 주체, 해상운송, 공동해손·선박충돌 등 해산 관련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sup>38)</sup> 북한은 「해운법」을 제정하였는데<sup>39)</sup> 이

32) 무역은행, 금강은행, 대성은행 등이 있다.

33) 우편저금, 협동농장신용부 등이 있다.

34) 조선합영은행, 조선락원금융회사 등이 있다.

35) 「민사법사전」, 前掲 辭典, 752면.

36) 上掲 辭典, 752면.

37) 이를 좀 더 보면, 은행대부계약의 당사자는 은행과 기관·기업소·단체만이나 꾸기계약의 당사자는 공민들이며, 은행대부계약의 대상은 화폐자금이거나 꾸기계약의 대상은 돈이나 소비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8) 남한의 상법은 제5편에서 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운법」이 곧 해상법을 말한다.<sup>40)</sup> 북한에서 해상법은 해상운수와 관련한 사회관계를 규제한 법으로 정의된다.<sup>41)</sup> 이 법을 통해 북한의 해상법에 관한 골격을 알 수 있는데, 북한의 「해운법」은 총 9장 10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그 골자를 살펴본다.<sup>42)</sup>

첫째, 해운법의 목적은 해상운수를 발전과 항해와 배의 관리운영의 제도 및 질서를 세우고 바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수는 국가의 지도 하에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해상운수분야에서도 대안의 사업체계가 관리원칙으로 강조되며 배운영기관의 기업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 경영상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제1조~제10조).

둘째, 배의 소유와 해사사업에 관한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북한에서 배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라고 한다.<sup>43)</sup> 배는 해당기관에 등록하고 국적을 인정받아야 하며 북한국기를 달도록 하였다(제11조~제20조).

셋째, 선원에 관하여 선장과 선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다. 선원은 항해의 직접담당자이며 배관리의 주인이며, 선장은 항해와 선원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배의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제32조).

넷째, 항해와 관련하여 배운영기관은 배의 항해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배운영에서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하고, 기자재 및 공급물자를 배에 날라다주는 체계를 세우고 항해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배는 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당 수역의 특수항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국배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해와 무역항, 그밖의 수역에 들어올 수 있으며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제33조~제42조).

다섯째, 해상수송과 관련하여 국내 여객 및 짐 수송과 대외무역화물수송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상수송기관은 해산수송계획을 분기, 월, 지표별로 수행하며 집중수송, 연대수송을 강화하고 짐함수송<sup>44)</sup>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화물수송은 수송계약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제43

39) 198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로 채택.

40) 「민사법사전」, 前掲 辭典, 703면.

41) 「법학사전」, 前掲 辭典, 723면; 上掲 辭典, 503면.

42) 북한의 「해운법」에 관해서는 「민사법사전」, 上掲 辭典, 503~504면.

43) 이에 관하여 북한의 1998년 개정헌법은 배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규정하여(제22조)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44) 북한은 이에 대해 “규격화된 짐함(짐을 담은 함박)을 리용하여 짐을 실어나르는 것 또는 그런수송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408면. 남한에서의 컨테이너수송과 유사한 개념이다.

조~제68조).

여섯째, 배에 대한 봉사와 관련하여 무역항에서 외국 배에 대한 대리업무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대리업무는 외국선박대리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제69조~제78조).

일곱째, 바다재해와 관련하여 해난구조, 배충돌, 공동해손문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관·기업소·단체의 배들은 해난발견시 해난구조기관 또는 해당기관에 바로 알리며 해난구조에 대한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배가 충돌한 경우 선장들은 상대편 배의 안정을 위해 도와야 하며, 배운영기관은 자기 배의 잘못으로 생긴 충돌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진다(제79조~제91조).

여덟째,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해상보험의 목적을 배운영기관과 무역기관의 기업활동의 정상화와 대외무역의 발전에 두고 있다. 해상보험의 대상은 배짐과 운임, 짐에 의하여 얻은 이익, 배, 배운영과 관련한 이익, 배운영기관이 부담하는 책임 등이다(제92조~제102조).

아홉째,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항해관련 분쟁은 해사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이 심리해결하며,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 해상법규, 북한에서 승인한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103조~제109조).

그러면서 북한은 해운법이 당과 국가의 해상운수정책의 실현을 담보하는 법적 무기라고 강조한다.<sup>45)</sup>

#### (5) 手形(어음)法·手票(行票)法

##### 1) 手形(어음)法

북한에서도 어음을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국가와의 거래에서 이용하는 것이라 하고 하여 그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어음의 용어는 手形이라는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수형은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고 서명한 일정한 형식의 유가증권”<sup>46)</sup>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보면, 북한은 수형을 자본주의 상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적으로 제정된 서면상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일내에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이해하고 있음<sup>47)</sup>을 알 수 있다.

45) 「민사법사전」, 前掲 辭典, 504면.

46) 上掲 辭典, 410면.

47) 「법학사전」, 前掲 辭典, 392면.



북한은, 수형이 그 종류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지불받을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채무증서라고 하면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48) 즉, 신용거래수단으로서의 역할, 49) 금융수형의 경우 자금유통수단으로서의 역할, 50) 송금수단으로서의 역할, 51) 채권회수수단으로서의 역할<sup>52)</sup> 등을 말한다. 또한 수형은 무역부문에서 외국환수형이 국제결제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며, 법률상으로는 '양속수형'과 '환자수형'의 두 종류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사용목적과 거래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한다.<sup>53)</sup>

그리고 수형거래는 원래자본가들 사이의 결제 또는 송금을 보장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지만, 수형거래의 형태는 사회주의국가의 회사들이 자본주의국가와의 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국가간의 수형과 관련된 법률행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초국가적인 수형법 또는 어느 특정국가의 수형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행위가 이루어지는 해당국가의 수형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54)</sup> 이는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을 통해 외국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음제도의 현실성을 인정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2) 行票(手票)法

북한에서는 남한의 수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행표는 "기관, 기업소, 개인이 은행돈자리에 맡긴 돈을 지불받기 위한 결재문서"라고 하고, "발행자가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은행에 있는 자기의 돈자

48) 「민사법사전」, 前掲 辭典, 410~411면.

49) 상업거래가 진행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약속수형을 발행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 앞으로 환자수형을 발행하며 판매자는 여기에서 받는 수형을 제3자에게 넘겨주기수표를 하여 넘겨주거나 은행에 팔아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50) 실제로 상품거래의 담보없이 단순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51) 수형은 처음에 현금수송의 위험과 비용을 덜기 위하여 나온 것이며, 지리적으로 원격지인 경우에도 가까운 지역에 가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52) 수형은 집환자수형에서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불인으로 하고 자기 또는 제3자를 받는 자로 하는 환자수형을 발행하여 은행에 상품대금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고 있다.

53) 예컨대 그 발행이 상품매매에 기초할 경우는 '상업수형', 자금유통목적일 경우는 '금융수형'이라고 하며, 지불기한에 따라 '즉시지불수형'과 '기한부수형', 신용상분류에 따라 '은행수형'과 '개인수형', 담보물의 구분에 따라 '신용수형'과 '담보물수형', 지불책임자의 인원수에 따라 '단명수형'과 '복명수형' 등으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민사법사전」, 前掲 辭典, 411면.

54) 上掲 辭典, 같은 면.

리에서 기재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위임하는 증권"이라고 한다.<sup>55)</sup>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행표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은행이 발급한 것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행표가 제시되면 행표에 밝힌 금액은 즉시 지불된다. 행표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없으며 오직 은행과 행표계약을 맺은 자나 이러한 행표를 소지한 자만이 그에 의한 지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행표는 이용지역, 지불방법과 이용자, 발행자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이용지역에 따라 한 나라안에서만 유통되는 '국내행표'와 외국과의 무역 및 비무역결제에 이용되는 '국제행표', 지불방법과 이용자에 따라 '송금행표'와 '여행행표', 발행자에 따라 '은행행표'와 '개인행표', 이밖에도 '제시식행표', '추산행표', '보증행표' 등이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에서는 그 용도에 따라 '무현금행표'와 '현금행표'로 구분된다고 한다. 전자는 기관, 기업소들이 구입한 물자 대금이나 수송운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봉사요금을 지불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기재 사항을 밝혀 공급자에게 넘겨주는 결제문서이며, 후자는 기관, 기업소들이 은행으로부터 현금계획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이용되는 현금지불청구서라고 설명하고 있다.<sup>56)</sup> 그러면서 사회주의국가에서 행표는 화폐거래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금결제문건으로 이용된다고 한다.<sup>57)</sup> 이에 비추어 북한에서도 남한의 수표와 같은 제도가 현금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행표(수표)법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 第2節 北韓의 商事關聯 基本法制

### I. 民法

북한은 개별 민사규정들에 의해 민사관계를 규율해 오다가 1990년 독립된 「민법」을 채택(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 1990. 9. 5)하여 처음으로 통합 성문민법을 마련하였다.<sup>58)</sup> 북한은 1950년과 1958년에 「민법초안」을 마련하였으

55) 上掲 辭典, 707면.

56) 上掲 辭典, 같은 면.

57) 上掲 辭典, 707~708면.

58) 이에 관해서는 申榮鎬, "北韓民法 40年과 그 動向", 「北韓法律行政論叢」, 第8輯, 前掲書, 129~157면; 「北韓의 민법개요」(북한연구소, 1992), 23~29면; 崔達坤, "北韓民法의 回顧와 展望", 「北韓法律行政論叢」, 第10집, 前掲書, 92~95면.

나 민사관계를 확정짓는 경제부문의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자칫 북한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민법의 법전화작업을 미루었다.<sup>59)</sup> 이후 1986년 「민사규정」(중앙인민위원회 정령, 1986. 1. 30)은 실질적으로 재판실무상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이 규정은 주로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경제거래관계에는 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민법전과는 거리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민법은 경제질서의 기본을 정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민법의 채택은 북한이 경제질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sup>60)</sup> 즉, 북한에서 민법의 확정은 경제질서의 변화대응과 기존 질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에 1990년 북한민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sup>61)</sup>

첫째,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채권채무제도에서 분리하여 시효제도와 함께 1개 편(제4편)에서 규정하였다. 시효제도를 분리하여 규정(제259조~제271조)한 것은 개인간의 권리관계의 확정 이외에 주로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독립채산제와 계획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주의민법례와 종래 북한법이론과 달리 상속법을 민법전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가족법전에 담은 점은 특이하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을 가정 내지 가족유지를 위한 중요자원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다.<sup>62)</sup>

둘째, 민사관계의 당사자로서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를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제11조).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기업과의 민사관계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비책의 일환으로서 바로 외국인투자관련법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셋째,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대상에 가정용품·문화용품·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같은 기재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소유권의 대상을 확대하였다(제58조, 제59조). 이에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의 보장에 따라 개인소유의 인정범위는 확대될 여지를 보이고 있다.<sup>63)</sup>

59) 崔達坤, “北韓民法의 制定과 그 變化 - 比較分析的 研究를 중심으로 -”, 「北韓法律行政論叢」, 第9輯, 前掲書, 95~96면.

60) 上掲 論文, 93~94면.

61) 이에 관해서는 朴井源, 「北韓法律用語의 分析(III)」, 前掲書, 13~28면

62) 崔達坤, “北韓民法의 制定과 그 變化 - 比較分析的 研究를 중심으로 -”, 前掲 論文, 97~98면;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 - 民事關係法 -」, 法務資料 第166輯(法務部, 1992), 48면.

63) 上掲書, 48~50면.

## II. 社會主義商業法

### 1. 概 觀

북한은 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로 「사회주의상업법」을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 4. 9)에서 이 법을 법령 제5호로 승인하였다. 이 법은 북한의 정부기관지인 「민주조선」에서의 법무해설<sup>64)</sup>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원리에 입각한 자유민주국가의 상사법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과 외국과의 상업교류와 협력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와 연관되어 있으며 대외경제개방에 대비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회주의상업법」은 총 9장 96개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sup>65)</sup> 북한은 이 법이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며, 따라서 해당기관·기업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를 구현한 사회주의 상업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집행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66)</sup>

그러나 이 법은 남한의 상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는 법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상업법」을 통해 상업을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상품유통사업을 조직하고 상품을 끌고루 공급하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국가관리하의 물품 및 용역의 공급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상인을 주체로 하여 거래관계에 관한 계약내용을 규율하는 남한의 상법과는 그 기본내용에서 다

64) “사회주의 상업법에 대하여(1~9)(법규해설)”, 「민주조선」, 1992년 5월 8일·10일·13일·22일·26일·28일·31일, 6월 2일·9일. 여기서의 法規解說에 바탕한 이 法의 概略적인 意義와 內容에 關해서는 鄭在吉, “새로 制定된 北韓 社會主義 商業法에 關한 研究”, 「北韓研究」, 제3권 3호(大陸研究所, 1992년 가을), 189~206면.

6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1992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법령 제5호로 승인)」(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1~20면.

66) “사회주의 상업법에 대하여(1)(법규해설)”, 「민주조선」, 1992년 5월 8일, 2면.

를 알 수 있다.

## 2. 社會主義商業의 基本(제1조~제8조)

「사회주의상업법」은 그 본질에 관하여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제1조)이며, 그 역할은 생산과 소비의 연결, 도시와 농촌·공업과 농업·서로 다른 지역과 지방간의 경제적 연계 강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의 실현, 화폐유통의 공고화와 국가 재정예산수입의 보장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는 북한에서 상업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품을 골고루 공급”한다는 목적을 충족시킨다는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상업상 문제는 매상고가 아니라 쓸모있는 소비품을 실제적으로 공급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최대로 기여하는 것이며, 사회주의상업법도 이러한 상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67)</sup>

또한 사회주의상업의 발전을 위한 원칙으로는 주문제(제3조),<sup>68)</sup>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거한 상품원천 조성<sup>69)</sup>과 수매·가공업 강화 및 상품예비 동원에 의한 상품 확보(제4조), 국가의 봉사혁명 제고(제5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의한 상업의 지도관리체계 확립(제6조), 상품유통사업의 강화 및 완전한 공급제(제7조), 우호국과의 교류와 협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3. 社會主義商業의 事業形態

사회주의상업의 사업형태로는 ‘상품공급사업’(제9조, 제10조), ‘수매’(제30조), ‘사회급양사업’(제41조), ‘편의봉사사업’(제50조), ‘상품보관관리사업’(제5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이를 좀 더 살펴본다.

첫째, 상품공급사업(제9조~제29조)은 사회주의상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업이라고 한다. 국가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이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에게 골고루 공급되도록 상품공급에서 도매 및 소매상업기

67) 「內外通信」, 綜合版 46(1992. 7. 1~12. 31)(內外通信社, 1992), 240~242면.

68) 여기서의 주문제는 생산자 내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주문거래방식이 아니라 지도기관 및 공급기관이 수요를 예측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내는 주문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상업이 기초로 하는 주문제는 남한의 시장경제와 달리 경제계획기관이 생산 및 공급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의미를 가진다.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Ⅲ)」, 前掲書, 167면.

관, 기업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업 및 상품생산기관·기업소·단체는 상품공급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sup>69)</sup>을 맺어야 한다. 상품생산기관은 식료품원료기지를 두고 여기에서 생산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식료품을 생산하며(제15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생산에 차질없도록 원활히 공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제16조~제20조).

둘째, 수매사업(제30조~제40조)은 북한에서 도시와 농촌, 농업생산과 도시의 소비를 연결시켜 주민들이 식료품수요를 충족시키고 공업원료와 자재를 공급하는 상업형태이다. 이 사업의 목적과 사명은 도시근로자들에 대한 소비공급사업을 개선하고 농촌의 상품원천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데 있다고 한다.<sup>70)</sup> 사회주의상업법은 수매사업에서 국가와 수매시키는 자의 이익을 올바르게 결합시키고 자원성의 원칙<sup>71)</sup>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수매의 형식에는 계획수매<sup>72)</sup>와 자유수매<sup>73)</sup>의 방법이 있다.

셋째, 사회급양사업(제41조~제49조)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봉사사업이다. 여기서 사회급양의 의미와 역할, 음식물의 종류 확대와 질 제고, 청량음료공급, 주식물가공, 사회급양원자재공급 등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넷째, 편의봉사사업(제50조~제56조)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편의, 이용편의 등 편의봉사망을 도시와 노동자구, 농촌리에 꾸리고 업종을 규정해주며 앞선 봉사방법을 널리 도입하여야 한다(제51조).

다섯째, 상품보관관리사업(제57조~제64조)은 상품을 질적, 양적으로 검수하고 선별하여 정확히 보관하여 상품의 손실을 막고 원상태로 보존하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상업기관, 기업소에서 상품보관관리에 필요한 창고를 기준대로 갖추고 상품의 특성에 맞게 보관관리를 하여야 한다(제57조).

---

69) 이 계약에 관해서는 북한민법 제102조~제108조.

70) 「민주조선」, 1992년 5월 13일, 2면.

71) 이 원칙은 수매품생산자와 구매자간에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수매를 진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72) 북한민법 제109조~제116조.

73) 북한민법 제152조.

#### 4. 商業의 文化性·奉仕性 및 商業施設의 現代化·商業經營의 科學化·合理化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봉사조건외의 보장, 봉사망의 조직과 배치, 봉사구역담당제 실시, 상품공급, 포장과 상표, 봉사형식과 봉사방법의 개선에 관한 조건과 요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5조~제72조). 또한 상업시설의 현대화·상업경영의 과학화·합리화를 위하여 봉사망건설, 상업설비의 현대화, 상업봉사활동의 정규화 및 규범화, 상업일꾼들의 기술기능수준의 제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73조~제85조).

#### 5. 社會主義商業에 대한 指導·統制

사회주의상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를 위해 상업지도기관을 통해 사회주의 상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검열감독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88조). 여기서 상업지도기관의 역할을 보면, 상품유통과 봉사활동을 장악·지도하며(제87조), 상업부문계획을 수립하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제88조, 제89조), 상업부문의 기술자 및 전문가를 배치하고(제90조), 상업근위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제91조).

또한 검열기관과 감독기관의 임무에 관하여 상업검열과 대책을 수립하고(제94조), 상업활동에 대한 감독통제(제9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상업법」을 위반하여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과 봉사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책임있는 기관·기업소·단체의 일꾼과 공민에게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96조).

### Ⅲ. 保險法

#### 1. 概 觀

북한에서 보험제도는 1946년 국가와 민간이 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했던 것을 처음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다가 1954년 국가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보험업무는 국가가 독점하게 되었다. 이후 모든 보험업무는 재정성의 보험

관리국에서 총괄하여 처리하여 오다가 1964년 국가보험사업에 대부기능까지 수행하는 산업은행에서 총괄하게 되었다. 그후 1976년 산업은행이 중앙은행에 통합되면서 보험업무는 중앙은행에서 맡게 되고, 국내보험은 조선중앙은행이 대외보험거래는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다.<sup>74)</sup>

북한에서 보험에 관한 규정으로는 1990년 민법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제205조~제212조), 1995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보험법」을 채택하여 보험에 관한 기본법제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해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 「보험법」은 총 5장 47개조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 법의 목적을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제1조). 보험의 종류에는 인체보험<sup>75)</sup>과 재산보험<sup>76)</sup>으로 나누고, 보험사업은 북한의 국가보험기관이 행하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보험사업은 북한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와 외국보험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sup>77)</sup> 이 법은 전체적으로 자유민주국가의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자유원칙에 입각함으로써(보험사업의 자율성과 의무성원칙의 실현, 제2조) 북한의 개방정책과 관련한 입법임을 엿볼 수 있다.

## 2. 保險當事者(제3조~제16조)

이 법에 의하면, 보험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인데, 보험자(보험기관)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투자보험기업(합영·합작·외국인보험기업과 외국보험기업의 대표부·지사·대리점 등)이 담당하며, 피보험자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외국기관·외국투자기업·외국인으로 되어 있다.

보험업무를 담당·수행하는 보험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 지불의무, 보험료 반환의무, 보험증권교부의무, 이익금배당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또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금을 내줄 의무는 보험자가 지게 되며 피보험자는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74) 전홍택, 「북한의 금융제도현황과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북한 금융부문의 개혁과제」(한국개발연구원, 1994), 5~7면.

75) 여기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재해보험 등이 해당한다.

76) 여기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보험 등이 해당한다.

77) 「민사법사전」, 前掲 辭典, 473면.



다(제9조). 이 때 의무적인 보험과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을 하려는 보험자는 국가보험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0조). 특히 외국투자보험기업은 자기가 받은 보험료의 30%이상을 정해진 보험기관에 재보험하여야 한다(제13조).

한편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제14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대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내야 하며,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도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제15조).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시 보험대상에 관한 중요자료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며, 재산보험대상의 피해와 손해를 막기 위한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재산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곧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제16조).

### 3. 保險契約(제17조~제28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맺지만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제17조). 북한에서 국내보험의 경우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생명·건강을 대상으로 하여 인체보험에 든 주민과 집에서 사육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재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며, 국제보험의 경우에는 무역화물보험의 경우 무역회사이고 선박보험인 경우 선박회사, 항공보험인 경우 민영항공국이 된다.

보험당사자들은 인체보험계약을 국가보험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고(제18조), 재산보험계약을 해당 보험계약 표준조건에 따라 맺어야 하는데 해당 보험계약 표준조건 없는 사항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제19조).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에게서 보험료나 보험료 지불담보를 받은 때로부터 생기며,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생명보험·어린이보험계약을 맺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며 보험료를 다시 내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제21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산이나 생명·신체를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재산보험계약의 대상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가격은 재산보험에서 보험대상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2조).

한편 재해보험·여객보험계약 같은 것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나 생명보험·어린이보험계약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가 가능하다(제27조).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계약된 보험대상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제25조). 재산보험대상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보험계약에 따르는 당사자들이 권리의무도 함께 이전되며, 이미 계약으로 정한 위험이 커지게 되면 해당계약을 갱신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26조).

#### 4. 保險補償(제29조~제43조)

보험보상은 보험금, 보험보상금을 지불하는 준칙으로 인체보험에서는 보험금으로, 재산보험에서는 보험보상금으로 보험자가 계약에서 정한대로 하되(제29조),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보험금액은 보험보상금의 최고한계이며 보험료계산의 기초로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제30조). 보험금액은 보험가액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가격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으나 높게는 정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기관·기업소·단체·개인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는 전부보험을 기본으로 하며, 대외경제관계에서 수입상품에 대한 보험에서는 일부보험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보험자는 생명보험·어린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사고가 없이 보험계약기간이 끝나고 정해진 보험료를 다 납부한 피보험자에게는 만기보험금을 주어야 한다(제31조). 여객보험·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노동능력감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한다(제32조). 그러나 생명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몰수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제33조). 한편 여객보험·재해보험·재산보험의 경우에 보험사고가 없이 보험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미 받은 보험료는 보험자의 수입으로 한다(제34조).

#### 5. 保險事業에 대한 指導統制 및 紛爭解決(제44조~제47조)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보험관리기관이 하며, 이 기관은 보험사업을 장악지도하며 보험계약표준조건과 보험요율의 적용을 감독·통제하도록 되어 있다(제44조). 따라서 국가보험관리기관과의 합의없는 의무·외화·재보험의 가입 또

는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없는 보험계약표준조건이나 보험료 적용의 경우 등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45조), 보험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제46조).

보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의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절차에 의해 해결한다(제47조).

### 第3節 北韓의 商事關聯法制

#### I. 對外經濟契約法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입법의 하나로서 외국인투자법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대외경제계약법」의 제정(1995. 2. 22)이다.<sup>78)</sup> 이 법에 의해 북한에서 대외무역·투자 및 서비스관련 제반 상업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법제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는 북한의 대외경제계약은 외국인투자관계법과 북한민법<sup>79)</sup> 등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계약체결의 절차와 방법,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계약강제 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sup>80)</sup>

이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은 북한기업과 외국기업간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규율하며 계약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북한과 외국과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두었다(제1조). 북한기업이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대외경제상사거래는 이 법에 따라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해당법규(예컨대 「민법」·「사회주의상업법」·외국인투자관련법 등)에 의거하도록 하였다(제8조). 이 법은 북한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국제상사거래를 위한 대외경제계약, 즉 모든 형태의 무역·투자·봉사(서비스) 등에 관련한 계약을 그 적용대상으로

78) 대외경제계약법의 全文은 「月刊 朝鮮資料」, 第412號(東京:朝鮮問題研究所, 1995年 9月號), 40~44면.

79) 북한민법상 민사계약에 관한 북한의 설명은 조용봉, “민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3권 4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64~68면.

80) 신웅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월간 경영법무」, 제17호(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년 8월), 20면;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통일사법정책자료 95-IV(법원행정처, 1995), 135~136면.

한다(제2조). 한편 대외경제에 있어 외국과 맺은 조약과 관례를 존중한다는 원칙 규정(제5조)은 북한이 경제법적 측면에서 국제화를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81)</sup> 그러나 북한에서 대외경제계약당사자는 대외경제를 하도록 승인받은 기관·기업소·단체로 한정되어 있어(제3조) 개인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며, 더욱이 대외경제계약에는 내각(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제7조) 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sup>82)</sup>

## II. 對外民事關係法

북한은 1995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1995. 9. 6)으로 「대외민사관계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북한 최초의 국제사법으로서 이제까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였던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해 체계적인 준거규정을 마련한 대외민사관계의 준거법이다. 북한에서 「대외민사관계법」은 “대외민사관계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부문법의 하나”이며, 대외민사관계는 “대외매매관계, 해산수송관계, 대외보험관계와 같은 재산관계와 외국국민들의 상속관계, 가족관계와 같은 다른 나라 법인,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산, 가족관계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83)</sup> 이 법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입법의 하나이며, 이로써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길을 열게 되었다. 또한 그간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외국과의 경제교류에 의한 인적·물적 교류에 따른 사법상 섭외적 법률관계의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sup>84)</sup>

다음에 이 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이 법의 목적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익보장과 대외경제협력 및 교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제1조). 그래서 「대외민사관계법」은 이른바 당사자주권존중의 원칙을 근본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sup>85)</sup> 이

81) 신용식, 前掲 論文, p.21.

82) 이밖의 대외경제계약법에 관한 설명은 上掲 論文, 20~26면.

83) 박명의, “공화국대외민사관계법의 몇가지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4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53면.

84) 이에 관한 概略的 解説은 任京河,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對外民事關係法(國際私法)についての解説”, 「月刊朝鮮資料」, 1996년 1월호(東京: 朝鮮問題研究所, 1996), 37~46면.

85) 박명의, 前掲 論文, 53~56면.

법은 북한의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법인·공민과 외국법인·외국인 사이의 재산 및 가족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 이에 관한 민사분쟁의 해결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제2조, 제16조). 또한 국가에 대해 당사자의 자주적 권리존중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구현의 의무를 부여하였다(제3조·제4조). 이 법의 제정은 북한의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재산관계와 신분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와 국제민사소송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과 관련한 입법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같은 재산관계에 관해서는 북한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정하였다(제27조).

둘째, 이 법은 내용면에서 최근의 국제사법의 입법경향을 반영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중국적자 및 무국적자에 대한 준거법의 적용원칙을 정하고(제7조, 제8조),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점유권·소유권 등의 물권에 대해 목적물의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2조),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국가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당사자주의의 원칙을 정하였다(제24조). 또한 신분관계에 관해서는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되, 당사자의 주소지법이나 밀접한 관계지법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1조).

셋째, 재외공민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북한법 준거의 원칙을 정하되,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은 바로 '재일조선인'의 권익보장과 관련하여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규정으로는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한 거주지법 적용(제18조), 결혼의 효력과 이혼에 관해 부부와 이혼당사자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되, 부부와 이혼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거주지법과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 적용(제36조, 제37조), 상속에 관해 부동산상속인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법·동산상속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재지법 적용, 예외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공민의 동산상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거주지법 적용(제45조)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대외민사관계의 분쟁해결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북한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제48조), 재산거래의 분쟁에 관한 재판 또는 중재판할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다(제49조). 그밖에 행위능력에 관한 분쟁과 상속분쟁(제51조, 제55조), 결혼·이혼분쟁(제52조), 부부재산관계분쟁(제53조), 친자관계에 관한 분쟁(제54조) 등에 관한 북한법 적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Ⅲ. 外貨管理法

북한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외화관리법」을 채택하고,<sup>86)</sup> 이어 1994년 6월 27일 정무원 결정으로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을 승인하였다. 외화관리법은 각 개별법제에 산재해 있는<sup>87)</sup> 외화관리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외국기관·외국인·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 및 북한주민에까지 적용되는 외화관리의 일반원칙을 최초로 입법화한 것이다.<sup>88)</sup>

다음에 외화관리법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개관한다.

첫째, 이 법은 외화를 이용하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하며, 북한 영역안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북한 영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적용한다(법 제10조, 시행규정 제3조). 외국기관에는 대사관·영사관·무역 및 국제기구대표부 등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3조).

둘째, 북한은 외화관리기관을 통해 북한 영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관리한다(법 제4조). 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사업을 지도하고, 외화의 수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그 지출을 통제한다(시행규정 제5조). 여기서 말하는 외화는 '외국화폐자금'의 준말로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상품을 사오거나 외채를 상환하며 화폐형태로 차관이나 원조를 주고 받을 때 이용하는 국제구매기관 및 지불수단의 총체를 의미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임무는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집행의 방법론적 지시, 외국환자은행<sup>89)</sup>과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sup>90)</sup>범위의 승인, 조선원에 대

86) 이는 같은 해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법령으로 승인되었다.

87) 북한에서 외환에 관한 규정은 1985년 합영법 시행세칙이 최초였으며, 여기서의 외화관리원칙은 「외화관리법」에 반영되었다. 1992년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법제의 골격이 갖추어진 이후에도 외화관리규정은 개별법률에 흩어져 있었으며, 그 내용은 기업운영을 통해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업청산 후 남은 자금의 국외송금보장과 같은 원칙 규정에 불과한 것이었다(예컨대 「외국인투자법」 제20조, 「합작법」 제15조, 「외국인기업법」 제22조 등).

88)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235~236면.

89) 외국환자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도록 승인된 외국환자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지만, 무역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하에 외국환자업무의 취급이 가능하다(법 제5조, 시행규정 제7조). 무역은행 이외에 북한에서 외화를 취급하는 은행은 조선대성은행, 창광신용은행, 고려상업은행, 조선합영은행, 금강은행, 황금의 삼각주 은행 등이 있으며,

한 외국환의 기준시세의 확정 등이다(시행규정 제6조).

셋째, 북한은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가 그러한 것처럼 국가가 외화의 수급을 계획에 의해 장악·관리하는 외화집중관리제도 하에 외화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내에서는 외화현금의 유통이 금지되고, 외화현금은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화교환소<sup>91)</sup>에서 조선원과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외화결제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돈자리('외화돈자리')를 통하여야 하며, 북한 영역 내에 있는 외국기관·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거래결제를 할 수 있다(시행규정 제10조). 그리고 북한영역 안에서 외화의 매매·저금·예금·저당과 같은 거래는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법 제6조, 시행규정 제11조). 아울러 조선원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와 환자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8조, 시행규정 제12조).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이 가능하다(법 제9조). 생산 및 봉사활동으로 얻은 외화와 노동보수로 얻은 외화, 외국으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가지고 온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면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정 제13조).

넷째, 외화는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sup>92)</sup> 무역외 거래,<sup>93)</sup>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자본거래<sup>94)</sup>에 이용할 수 있다(법 제11조, 시행규정 제15조). 경제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는 거래은행에 개설된 조선원돈자리, 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무현금으로 한다. 조선원돈자리에는 북한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외화결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법 제12조, 시행규정 제17조).

다섯째, 외화사용에 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

외국투자은행으로는 ING동북아은행, 페레그린-대성은행 등이 있다.

90) 외국환자업무를 외화를 팔고 사거나 국가간의 채권채무를 외화로 발생·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91) 외화교환소(외화교환대리소 포함)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법 제6조, 시행규정 제9조).

92) 무역거래는 상품의 수출입 및 그와 직접 관계되는 거래를 의미한다(시행규정 제15조제2문).

93) 무역외 거래는 여비 또는 이자, 배당금, 경비, 유지비와 같은 지불거래, 봉사제공과 관련한 거래, 증여, 상속, 보증과 관련한 거래를 의미한다(시행규정 제15조제3문).

94) 자본거래는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매, 증권의 발행 또는 취득, 부동산취득 같은 거래가 포함된다(시행규정 제15조제4문).

기관·기업소·단체는 거래은행에 외화원돈자리를 두어야 하고(시행규정 제18조1문), 외화원돈자리에는 기관·기업소·단체가 번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어야 한다(법 제13조1문, 시행규정 제18조2문). 기관·기업소·단체는 번 외화를 해당거래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외화를 외국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기관·회사·기업체·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다(시행규정 제26조).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합의하에 무역은행이나 북한영역 안의 다른 은행에 조선원, 외화원 또는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시행규정 제20조1문). 이 시행규정은 법 제18조2문과 달리 북한의 은행을 무역은행 하나로 제한하고 다른 나라 은행도 북한영역 안의 다른 은행으로 변경한 것이다.<sup>95)</sup> 그리고 외국기관, 즉 대사관·영사관·무역대표부와 같은 외국기관들은 무역은행에 조선원, 외화원 또는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이 때 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돈자리에는 외국기관유지비로 보내온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거나 외화 그대로 넣으며 그것을 현금 또는 무현금으로 쓸 수 있다(시행규정 제19조). 그리고 외국인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북한은행에 팔거나 저금할 수 있다(법 제16조, 시행규정 제42조1문). 외국인이 외화를 교환할 경우 '외화와 바꾼 돈표'(태환권)<sup>96)</sup>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섯째,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로 표시된 수표, 송금증서, 여행자수표, 귀금속 등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은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법 제22조, 시행규정 제46조). 그러나 반출시에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즉,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 또는 입국할 때 밝힌 금액 범위 내에서만 북한 영역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23조).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세관신고없이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지불수단을 북한 영역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고 하여(법 제25조, 시행규정 제53조) 지대에서의 외화현금·외화유가증권반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95) 여기서 북한영역 안의 다른 은행이란 무역은행을 제외한 북한의 다른 은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영은행 등 외국투자은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243면.

96) 태환권은 유가증권이면서 현금과 같은 방법으로 유통되며 잔액 태환권은 외화와 재교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화와 바꾼 조선원'은 지정된 상업·봉사부문에만 쓸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북한주민 등 개인 사이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팔고 살 수 없고, 또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쓸 수 없다(시행규정 제45조).



일곱째, 외화관리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은 몰수하며 필요한 경우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9조).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법 30조, 시행규정 제57조, 제58조). 더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1조, 시행규정 제61조).

#### IV. 貿易法

북한은 1998년 3월에 「무역법」을 채택하였다고 알려졌다.<sup>97)</sup> 이에 의하면, 북한 「무역법」은 총 5장 58개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역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수립하며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이는 노동당과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정책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무역법의 사명이 규정되었다고 하고,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를 바탕으로 무역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법적인 보장을 한 것이 「무역법」이라고 한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무역법」은 다음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장에서 무역법의 기본으로서 이 법의 사명, 무역의 기본원칙과 요구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여기서 무역을 하는데 있어 지켜야할 원칙으로 무역의 다각화·다양화, 신용준수를 들고 있다. 또한 무역거래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어서의 요구사항으로 무역의 통일적 균형을 위한 지도와 보장강화, 무역일꾼의 육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발전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제2장에서 무역회사의 설립과 관리운영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은 무역회사를 수출입활동의 담당자로 그 지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행하는 무역거래를 자기 소유재산으로 재산을 맞춰 경영활동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렇듯 무역회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무역회사의 역할을 높이고 대외무역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무역회사는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승인에 의해 설립되고, 무역회사가 계약을 정확히 체결·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97) 「민주조선」, 1998년 3월 10일, 13일, 17일, 각 2면.

셋째, 제3장에서 무역계획작성의 원칙과 그 시행에 제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으로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 의해 무역활동을 국가의 통일적 계획하에 전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발전과 인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넷째, 제4장에서 수출입허가기관과 수출입허가질서, 허가를 받는 물자의 반출입질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수출입허가는 내각(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문서와 계약서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수출입물자에 대한 국가의 지도통제의 강화를 보장하는 제도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제5장에서 무역사업의 지도통제에 제기되는 요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여기서 내각(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기관·기업소·단체로 하여금 수출품의 비중을 높이고 무역을 확대발전시키는 일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 V. 土地賃貸法

### 1. 概 觀

북한에서 토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규로서는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한 「토지법」이 있는데, 이 법은 총 6장 80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98)</sup> 북한의 경제사정상 자본과 기술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들이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값싼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북한에서 1984년 「합영법」은 토지에 관하여 “합영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제21조제4문)고 규정하였으며, 1992년 「외국인투자법」은 투자장려부문에 대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을 보장한다고 하고(제8조) 외국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고 임대토지에 대한 해당기관의 승인후 양도·상속할 수 있다(제15조)고 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매우 진전된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합영법시행세칙은 토지사용권을 출자목적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필요한 토지의 임차, 임차기간의 연장(제20조), 장려부문투자자에 대한 입지상 우대 및 임대료 감면(제38조)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법과 거의 비슷한 규정을 두었다.

98) 이에 관해서는 法制處 編著, 「北韓法制概要」(한국법제연구원, 1992), 436면 이하 참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토지의 사용에 관한 북한당국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1990년 중국의 입법례(1990.5.19 「중화인민공화국도시국유토지사용권양도·재양도잠정조례」등)와 많은 차이를 보여 그 성과가 미진한 데 따라 북한은 1993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로 「토지임대법」을 채택하고, 1994년 9월 7일 정무원결정으로 「토지임대법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총 6장 42개조문으로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977년의 토지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와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권리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토지로부터 생기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토지임대법」에서 비록 이용권에 국한되기는 하지만私人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2. 主要內容

### (1) 土地賃貸法の 基本

「토지임대법」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은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있다(제1조). 북한의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는 자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및 ‘공화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며 북한주민이나 북한의 기업 등은 제외된다(제2조). 그러나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가 합병·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5조) 토지는 합병·합작에 있어 북한측 당사자가 출자지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며 외국측 당사자가 볼 때 북한측 당사자가 출자하겠다고 나선 토지에 대하여 법제상 확실한 권리의 보장을 강조한 것이다.<sup>99)</sup>

임대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북한에 있으며(시행규정 제3조제2문), 토지를 임차한 자(토지임차인)는 토지이용권만을 가진다. 그러나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99) 「토지임대법」과 동 시행규정의 장소적 범위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영역 내의 토지는 모두 임대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316면.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동조제3문). 토지의 임대기간은 토지용도와 투자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한 50년 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시행규정 제6조). 임대토지의 이용권은 임차인의 재산권으로 되며(법 제7조), 따라서 토지임차인은 임차토지의 이용권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저당할 수 있다(시행규정 제7조). 임대에 관한 업무는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담당하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토지임대는 지대당국이 담당하도록 하였다(제4조).

## (2) 土地賃貸方法

북한에서 토지임대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토지임대기관과 임차 희망자간의 협상에 의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대 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9조). 이 중 어느 방법에 의하든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소정의 토지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정 제11조).

첫째, 협상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희망자 사이에 임대료, 투자 및 개발조건을 비롯한 임대차조건을 직접 합의한 후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정 제10조).

둘째, 입찰을 통한 토지임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규모가 크거나 주요한 개발대상의 토지임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정 제18조제1문). 북한에서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엄격히 토지이용권에 대한 입찰을 의미한다. 토지의 입찰은 토지임차희망자들이 지정된 기간 안에 임대료, 투자 및 개발조건을 비롯한 임차조건을 토지임대기관에 비공개적으로 제출하게 되며 토지임대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자들 가운데 유리한 임차조건을 제기한 임차인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시행규정 제18조제2문).

셋째,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부동산개발용지, 금융, 상업, 관광 및 오락용지와 같은 경쟁성이 강한 토지의 임대에 적용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토지임대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 임차희망자들을 모아 놓고 공개적인 입찰경쟁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정 제29조).

이러한 방법을 거쳐 토지임대기관이 토지이용신청을 승인하거나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토지임대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임대차계약<sup>100)</sup>을 체결

100) 토지임대차계약에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임대차의 목적과 기간, 토지의 용도 및 이용 범위, 총투자액 및 건설투자액, 단계별 투자액, 건설기간, 임대료 및 사용료와 그 지불방법, 특혜조건, 제재 및 분쟁해결방법, 이밖의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법 제11

하며, 토지임차인은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법 제14조 1문). 한편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면 토지이용증을 발급하며(법 제11조제4호, 제12조제8호, 시행규정 제36조),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시·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토지임차 이용권은 등록된 때로부터 임차인에게 넘어가며, 이용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토지임차인은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시행규정 제39조).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토지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정한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면 토지임대기관에 용도변경내용, 투자규모변경내용 등을 밝힌 토지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보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4조제2문, 시행규정 제38조).

### (3) 土地利用權의 讓渡와 抵當

토지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토지임대료의 정액을 물고 계약에 명시된 투자지분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이용권을 판매·재임대·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법 제16조). 토지임차인은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판매·재임대·증여·상속 포함)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법 제15조제1문, 시행규정 제50조). 이 때 판매·재임대·증여를 통한 토지이용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은 토지임대기관으로 임차하였거나 토지임차인으로부터 판매, 교환형식으로 양도받은 것이어야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료 전액을 지불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상의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와 건설을 한 것이어야 한다(시행규정 제42조).

다음에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토지이용권의 판매는 제3자에게 임차인이 토지이용권을 값을 받고 넘기는 행위로서(시행규정 제45조) 다음의 양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판매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8조제1·2문, 시행규정 제46조).

둘째, 토지재임대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이용권을 소유한

---

조제3호, 시행규정 제17조). 이 때 협상을 통한 토지임대는 계약체결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입찰의 경우에는 낙찰토지 고지후 30일 내에, 경매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를 개발하여 다시 제3자에게 이용권을 빌려주는 형식의 토지 양도를 말하며(시행규정 제52조), 이를 위해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임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0조). 토지재임대 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를 개발한 다음 재임대를 허용한 토지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정 제53조).

셋째, 토지이용권의 상속은 토지이용권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자 또는 유언이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자에게 토지이용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형식의 양도를 말한다(시행규정 제66조). 토지이용권을 상속받으려는 자(상속인)는 국내 또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신분등록기관 또는 국외에 있는 거주지의 신분등록기관 또는 재판소가 발급한 상속확인서를 거주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토지임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67조).

넷째, 토지임차인은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토지이용권을 저당할 수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부의 상환담보로 세우는 행위를 말한다(시행규정 제72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속물도 함께 저당된다(법 제21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려는 경우 저당자와 저당권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토지저당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22조, 시행규정 제73조).

#### (4) 土地의 賃貸料와 使用料

먼저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에 대한 값을 의미하며(법 제28조, 시행규정 제85조), 토지를 재임대받은 전차인은 토지의 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임대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며(시행규정 제8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입찰과 경매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 입찰 및 경매기준가격은 지대당국이 정하며 낙찰자가 제시한 가격을 임대료로 하고 있다(시행규정 제87조).<sup>101)</sup>

다음 토지의 사용료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요금

101) 이와 관련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다”(제38조)고 하여 협상에 의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을 말하며(시행규정 제91조), 이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 사용료의 납부자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 판매를 통하여 토지 이용권을 넘겨받은 자, 토지를 재임대한 자, 합영 또는 합작기업 등이다(시행규정 제93조). 한편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감면할 수 있다(법 제33조).

(5) 土地利用權의 返還

임대기간이 만료한 토지이용권은 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여기서 40년이상 임차한 토지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안에 준공한 건설 총투자액 2,000만원이상되는 기본건물에 대해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4조, 시행규정 제96조). 토지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토지이용증을 토지임대기관에 반환하고 토지이용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시행규정 제96조). 한편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토지임대기관에 토지이용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36조). 토지이용연기를 승인받은 임차인은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해당된 임차료를 낸 다음 토지이용증을 재발급받으며 토지이용권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100조).

(6) 制裁 및 紛爭解決

북한에서 토지이용증이 없거나 이를 등록하지 않고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저당계약을 무효로 한다(법 제39조, 시행규정 제104조). 토지임차인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관의 상급 기관에 신고·청원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법 제41조, 시행규정 제108조), 토지의 양도·저당과 관련하여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방법에 의해 해결하며,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2조, 시행규정 제109조).





## 第 3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法制 概觀

### 第 1 節 對外經濟開放法制的立法背景 및 法的 根據

#### I. 立法背景

##### 1. 沈滯된 經濟難局 克服

북한은 그들의 경제체제에 관하여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sup>102)</sup>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중앙집권적 명령체제’를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원리하에서 운영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정책의 기초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우선정책’, ‘군사·경제의 병진’ 등에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sup>103)</sup>

북한에서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은 무엇보다 북한경제의 침체와 그로 인한 체제 와해의 우려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구소련 및 중국, 동구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경제원조를 받아 교환무역을 중심으로 대외무역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 대외무역의 부진, 국제수지의 악화, 산업구조의 불균형, 경영관리의 경직성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북한경제는 날로 악화되었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기치 아래 그들 경제체제의 독자성과 우월성을 선전하였지만, 북한의 경제난을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그 배경에는 다음의 요인들이 지적된다.<sup>104)</sup>

첫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에 따른 경제난의 심화이다. 이는 에너지와 수송부문 등 기간산업의 미발전과 원시성, 수출부진으로 인한 선진기술과 원자재 도입의 곤란에 기인하는 것이다.

102) 「경제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369면.

103) 「북한개요」, 前掲書, 133~144면.

104) 西尾 昭, 張君三,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外國人投資關聯法制」(東京 : 啓文社, 1997), 5~6면.

둘째, 과중한 국방비의 지출로 말미암아 사회자본의 투자재원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중공업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만성적인 소비재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새로운 기술과 외자도입이 차단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넷째, 북한체제의 경직성은 생산체제의 효율성과 비생산적인 활동을 가속화시켰다. 계획과 명령에 입각한 경제활동은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북한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체제는 대외신용도를 상실하고 국제경제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 2. 制限的 經濟開放政策의 推進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예컨대 공업경영 면에서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지도위원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군단위에 지방공업의 분권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생산량 증대와 필요한 원료 및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였다.

독립채산제는 1962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1984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북한에서 독립채산제는 국영 공장·기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점차 농업부문과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왔다. 이는 경제 운용에 있어서 하부 경제단위에서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작업반 우대제, 분조관리제 등을 통해 물질적인 유인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왔다. 독립채산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기업적 측면에서는 이른바 '원에 의한 통제'(재정통제)를 강화하는 테두리 안에서 각 국영기업은 은행신용의 이용과 독자적인 대차대조표를 보유하며, 물자구입과 판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 이에 따라 사업평가에 있어서 화폐지표를 활용하여 이익금에 있어서는 '국가 몫'(국가계정 이익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경우, 그것은 기업소의 운영상태 개선과 종업원들의 물질생활을 높이는데 활용된다. 한편 그 통제적 측면은 경제관리의 규정화(노임·자금·상금·기금의 적립 규모 등), 고정재산의 관리·이용의 제도화, 재정의 무수행에 대한 감독·통제, 기업소 운영실적과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물질적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다. 여하튼 북한에서 독립채산제의 실

시를 통해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들의 의사결정권이 포함된 독립채산제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독자적인 경제활성화의 정책은 대내적인 부분에서의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이를 대외부문에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채택하여 해외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진·선봉·청진'을 자유무역항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여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북한은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투자관계법제를 마련하는 한편 헌법에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II. 對外經濟開放 및 外國人投資關係法制的 憲法上 根據

### 1. 對外經濟開放政策의 法的 根據

#### (1) 外國人投資의 憲法的 根據

북한은 '1948년 헌법'(인민민주주의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에 채택한 '사회주의 헌법'을 20년만에 1차개정('1992년 헌법')하였으며, 이 헌법을 1998년에 2차 개정하였다.<sup>105)</sup> 북한의 1992년 헌법은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외적 대응책으로 국제사회의 고립탈피와 경제난타개의 필요에 따라 대외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수정하고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법적 토대 마련을 특색으로 하고 있으며, 1998년 헌법은 이를 보완하고 있다. 다음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자기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제16조)고 규정하여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적 보호 및 촉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자주·평화·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제17조)라고 하여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밝힌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을 폐기하였다.

105) 이 개정헌법은 주식제폐지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상강화,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및 정부원을 개편하여 내각제로의 복귀 등 김정일시대를 맞이한 북한의 권력구조의 재편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편 경제조항의 개정내용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외교면에서의 개방노선을 천명하고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제37조)고 하여 대내외경제개방정책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1998년 개정헌법은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운동을 장려한다”는 대목을 추가하여 북한이 대외개방의 확대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북한은 나진·선봉 이외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의 마련은 북한이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시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를 계기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정비에 나섰으며, 이들 법제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주의경제원리에서 벗어나 일부나마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憲法上 人民의 福祉向上의 強調

북한은 헌법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해 투쟁한다”(제26조)고 하고,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제27조)라고 하고,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기술발전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놓고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며,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규정하였다(제50조, 제51조). 이렇듯 기술혁명을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권으로부터 과학기술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과학기술발전이 북한의 경제난의 타개에 필수적 과제로서 시급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지도관리에서 김정일의 지침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것(제32조)은 김정일 주도의 과학기술사업에 역점을 두으로써 김정일체제의 강화를 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sup>106)</sup>

또한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제25조)고 하여 인민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조항을 신설 또는 보강한 점은 주목된다. 김일성은 1992년 신년사에서 “자립적민족경제로선을 철저히 관철

106) 「中央日報」, 1992년 12월 27일, p.4.

하여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같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인민의 세기적염원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면하여 우리가 달성하여야할 중요한 목표"라고 하였다.<sup>107)</sup> 이러한 '식·의·주문제'의 해결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되고 있다.

## 2. 中國의 外國人投資關聯法制과의 關係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은 중국이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중국헌법의 개정과 유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즉, 중국은 '1982년 헌법'에서 외국기업·기타 경제조직·개인의 중국투자 및 경제합작의 추진허가 규정(제18조제1항)과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합법적 권익보호 규정(제18조제2항)과 유사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북한은 1984년 9월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1979)을 모델로 한 「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84년의 합영법을 통한 외자유치 내지 북한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것은 북한경제여건의 불안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담보상태에 머무른 데에 기인한다.<sup>108)</sup> 따라서 이를 통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투자확대는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sup>109)</sup>

북한과 중국의 대외경제개방법제를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비교할 때, 그 투자 유형에서 외국의 100%단독투자에 대해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지역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합작의 경우 북한은 경영권을 북한이 행사하도록 한데 비해 중국은 경영관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윤분배 및 고용, 외국투자기업의 존속기간에서도 북한은 그 제약요소가 많고 존속기간이 단기(예컨대 합영의 경우 10년원칙)인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비교적 자

107) 김일성, 1992년 신년사, 「統一速報」, 92-1호(統一院 教育弘報局, 1992. 1. 3), 5면.

108) 金永信, "南北經協의 展望", 「北韓研究」, 제3권 4호(大陸研究所, 1992 겨울), pp.102~104; 「北韓의 合營法制」, 法制資料 제160집(法制處, 1992), pp.9~16; 「北韓 外國人投資關聯法 研究」(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 1993), p.3.

109)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방법제비교에 관해서는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Ⅲ)」, 前掲書, 345~352면 참조.

유로운 방식으로 계약에 위임하고 있으며 존속기간도 장기이다(예컨대 합영기업의 경우 10~30년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부문은 50년이상도 가능하도록 함). 이렇듯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의 일반사항을 보면, 그 대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있어 북한은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의 틀과 내용을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세부규정을 보면, 그 계약요소와 그 범위가 중국에 비해 협소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는 1개지역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외자유치와 체제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경제특구는 경제개방의 창구로서 경제개혁을 위한 실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지역도 5개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양국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체계의 혼란, 법령내용의 불명확성 등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외국인투자법제의 실효성이란 면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기실 사회주의 계획경제원리에 입각한 북한경제는 경제기반의 취약성 및 경제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권과의 경제적 연대가 와해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어왔다.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따라 기존의 자립형 경제정책에 수정을 가하여 '개방형경제'로의 정책적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sup>110)</sup>

실제로 소련방이 붕괴한 뒤 1990년 이후 중국은 북한과의 최대교역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교역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역방식으로 에너지·원료·곡물·기계·부품 등 경제가동에 필수적인 주요물자의 수입을 구소련과의 교역으로 충당해왔다. 그러나 소련방의 해체 이후 이들 주요물자의 공급은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중국이 북한에 대해 1992년에 우호가격을 철폐하고 경화결제를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국과의 교역은 물물교환, 청산결제, 변경무역을 통하여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수송 및 통관비용과 절차가 용이한 중국과의 교역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여전히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 우호가격적용 등 일종의 특혜무역을 허용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은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11)</sup> 이러한 중국과의 경제환

110) 吳炳勳, "北韓의 對外經濟政策 變化展望", 「統一問題研究」, 제4권 3호(統一院, 1992 가을), 100~111면.

111) 박정동·오강수, "대의경제관계 : 최근 북한·중국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성", 「統一經濟」,

경은 법제면에서도 중국의 제도와 경험을 모방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정이 중국과 다른 만큼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는 그 세부적인 면에서 중국의 경우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Ⅲ. 北韓의 經濟管理原則·體系 및 對外經濟管理構造

#### 1. 北韓의 經濟管理原則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경제체제로서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이란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국가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분배·무역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직접 통제하의 경제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관리원칙에 대하여 “사회주의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노동당은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행정기구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경제운영 역시 당의 전반적인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배합원칙,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 독립채산제의 실시원칙 등이며, 이 원칙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경제지도 및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경제체제는 대내외적 현실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비록 그것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한 북한 경제관리체계의 변화는 북한경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점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북한의 경제관리의 원칙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당·정치사업의 우선원칙이다. 이는 북한에서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강, 노력조직, 협동생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직사업’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위주로 조직·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의 전개는 바로 당정치사업의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1998년 9월호(現代經濟研究院, 1998), 103~104면.

사례이다.

둘째, 집단적 지도와 유일적 지위의 결합이다. 북한에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해당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가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하여 이것이 집행되도록 지도·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군중노선의 관철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이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계획의 일원화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계획화사업을 일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의 세세한 부분까지 맞물리도록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강조하는 것은 계획경제체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경제부문간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경제관리가 중앙집권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독립채산제의 실시이다. 북한에서 독립채산제는 기업소들이 국가의 유일적 계획에 따라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 밑에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띠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에 지출되는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면서 국가에 이익을 주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합리적인 계획적 관리운영방법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경제제도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기업운영 및 생산조직상의 형식주의와 낭비, 국가재산 애호정신 결핍, 개인이기주의·기관본위주의·지방본위주의적 사업태도, 노동제일주의에 대한 의식결여 등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것이었다.<sup>112)</sup>

현재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붉은기쟁취운동 등

112) 독립채산제는 북한에서 모든 공장·기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제관리원칙으로 대상기관 및 실시정도에 따라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2중독립채산제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완전독립채산제는 196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본래 형태이다. 북한 경제는 국가의 계획적 관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므로 모든 부문 및 단위들의 생산활동이 계획하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부문 및 단위에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단위별 채산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계획적 경제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립채산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는 결국 중앙계획에 의해 공급되고 제한받는 노동력·자재·자금의 절약, 비생산적 지출의 감소, 노동생산성의 제고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들의 제기되고 있다. 그 원칙들은 중앙집권적 계획·관리, 기업소운영의 융통성, 상품과 화폐간의 적절한 배합 등이며, 이와 함께 정치적·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이 옹계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을 강화하면서도 이른바 '작업반우대제' 내지 '분조관리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그 운영면에서 일부 하부경제단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1984년부터 이전의 독립채산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장 및 기업소 등에 이를 적극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의해 북한의 기업관리체계는 생산계획의 수립과 평가, 자재공급체계 등에서 분권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중앙집권적 관리체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형태는 크게 농업관리체계에서의 이른바 '청산리방법'과 공업관리체계에서의 이른바 '대안의 사업체계'를 들 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리에서의 현지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경제관리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대안의 사업체계도 김일성의 현지도를 통해 제시된 것으로 청산리방법을 공업부문에서 구현한 관리형태인 것이다. 이와 함께 상업유통 관리부문에서의 관리체계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상업·유통 및 가격체계에 관한 것인데, 전자는 소유형태·시설·운영면에서 그 관리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도·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관리원칙을 정하고 있다.

## 2. 北韓의 經濟管理 體系

북한의 경제관리 체계는 이른바 '대안의 사업체계'로 집약된다. 북한은 공업관리에 있어서 처음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이 제도의 관료주의화 및 기관본위주의 등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1년 12월에 대안전기공장을 몸소 현지도하시고 창조하신 우리식의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sup>113)</sup>라고 한다. 이는 공업부문의 관리형태로 출발하였으나 모든 경제분야의 경영관리체제를 발전하였으며, 각 개별법률에서도 반영되었다. 예컨대 북한민법에는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요구되는 원칙'(제5조), 사회주의상업법에는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제6조), 노동법에는 '노동조직의 원칙'(제26조)으로 규정되어 있다.<sup>114)</sup>

113) 「민사법사전」, 前掲 辭典, 180~181면.

114) 申雄滉·安成祚, 前掲書, 32~33면.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 원칙으로 당의 지도적 역할강화, 경제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는 정치사업의 우선, 공장·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토의와 지도, 당간부와 지배인의 생산현장지도 강화, 중앙집권화된 계획적 관리, 독립채산제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대안의 사업체계는 집단주의원칙 아래 근로대중을 동원하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가운데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관리형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경제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부문들에 대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서 「민법」의 제정을 비롯한 대외경제개방방법제 및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 등의 변화는 북한변화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경제부문에서의 변화움직임은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대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관리원칙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 3. 北韓의 對外經濟管理 機構

북한에서 대외경제정책과 그 집행을 관장하는 기구와 조직은 1998년의 헌법개정에 의해 국가기관체계의 개편으로 인해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에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결정·집행기구인 당노선과 정책수립 및 수행을 조직·지도하는 「중앙위원회」, 정부차원에서는 최고지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대외정책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의 정책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최고행정기관으로서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 등에 의해 북한의 대외경제관리가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대외경제관리기구 및 조직들은 1998년 개정헌법에 따른 권력구조의 개편과 함께 변화되었다. 특히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북한의 대외경제관리기구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sup>115)</sup>

과거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무역상사의 수출입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대외경제관리기구로는 정무원내에 무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계획위원회」, 무역정책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무

115) 1998년 헌법개정에 따른 북한의 국가기관체계의 개편에 관해서는 張明奉, “北韓 社會主義憲法 改正(98. 9. 5)의 背景·內容·評價”, 「公法研究의 回顧」, 韓國公法學會 第79회 이 學術發表會 發表論文(韓國公法學會, 1998. 12. 19), 12~23면.

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업무를 전하는 「무역부」, 외국의 투자유치·기술도입·시방개척을 담당하는 「대외경제사업부」 등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더욱이 1992년 12월에는 대외경제기구의 개편을 단행하여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가 「대외경제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었다.<sup>116)</sup> 이러한 북한의 대외경제관리기구는 대체로 「대외경제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실질적인 대외접촉활동을 해온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해온 「대외경제협력총국」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경제관리기구는 헌법상 국가기관체계의 개편에 의해 북한의 대외경제교역정책을 집행하였던 「대외경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내각」의 「무역성」으로 개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17)</sup>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관련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란 명칭도 자동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기술하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당연히 북한의 「내각 무역성」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18)</sup>

아울러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에 의해 「행정경제위원회」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관리와 관련하여 대외경제개방법 및 외국인투자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행정경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인민위원회」에로 이관되어 실행될 것이다. 이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해당업무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서 관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상 행정경제위원회의 기능도 지방인민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구개편에 따라 종래의 기구명칭을 바꾸어야 하지만, 북한에서 아직 그 실무기구들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북한법제의 규정상 종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116)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하는 당해 연도 대외경제부문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구체적으로는 외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각종 협정체결과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의 추진, 무역관련업무, 해외시장조사, 해외파견된 무역대표부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34면.

117) 아울러 내각의 무역성의 기능과 역할의 확립과 함께 그간 대외경제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의 위상정립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中央日報」, 1998년 10월 14일.

118) 이하에서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란 명칭은 1998년 헌법개정에 따른 내각실무진의 개편에 따라 「내각 무역성」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임.

## 第2節 外國人投資法制

### I. 外國人投資法：外國投資家の 北韓投資에 관한 基本法

#### 1. 概觀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고 함)을 채택하였다.<sup>119)</sup> 이 법은 합영·합작·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기본법 내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은 합영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의 설립·운영·해산·분쟁처리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합영법과 관련하여 합영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법은 신법으로서 합영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120)</sup> 이 법은 총 22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영역 안에 설립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이를 보면, '합작기업'은 양측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를 상환하거나 또는 이윤을 배분하는 기업이다. '합영기업'은 북한측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운영하며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전형적인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이다. 그리고 '외국인기업'은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제2조). 여기서 합영은 공동투자·공동경영 방식으로 이익배분과 손실부담은 지분에 따르고, 합작은 공동투자·북한단독경영 방식으로 이익배분은 계약에 의하고 손실은 북한이 부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sup>121)</sup>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과거 외국인투자형

119) 이날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이 함께 채택되었다. 이로써 북한에서 1984년 「합영법」의 채택 이래 '합영' 이외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투자형태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120) 諸成鎬, "南北經濟交流協力에 다른 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저스티스」, 제26권 2호(한국법학원, 1992), 199면; 김정환,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 分析", 「北方通商情報」, 제85호(대한무역진흥공사, 1992. 11), 1~9면.

121) 북한에서 합작의 형태는 북한단독경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의 합작과 다른 점이다. 중국의 경우 합작은 외국인투자자가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

태를 합병에 국한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외국인의 대북투자형태를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투자형태를 합병(equity joint venture), 합작(contractual joint venture), 외국인기업(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등 3가지 방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 2. 主要 內容

### (1) 基本原則

이 법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제2조)한다. 이어 외국투자자는 북한영역 내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자유무역지대 내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으며(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 (2) 投資當事者 및 投資領域·對象

투자당사자로 다른나라의 기관·회사·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과 함께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 대해 이 법에 따라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북한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범위에 대해 재일·재미교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남한주민도 포함 것인지에 관하여 명문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문헌을 통해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은 “행정적·법률적 관할권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로서 해외동포들과 남조선동포들을 포함한다”<sup>122)</sup>고 설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북한은 남한주민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법상의 투자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북한에서 합작을 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계약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대신 투자가측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제외하고는 합작기업의 경영실패에 대한 손실은 부담하지 않는다.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分析”, 『主要國際問題分析』(외교안보연구원, 1993. 4. 28), 15면, 諸成鎬,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분석 및 평가”, 『統一研究論叢』, 제2권 1호(民族統一研究院, 1993), 206면.

122)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1996. 6), 45면.

또한 외국인투자의 영역과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은 북한의 전 지역에서 설립할 수 있으나,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만 창설·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3조).<sup>123)</sup> 외국인투자의 대상은 외국의 기관·회사·기업체·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은 물론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외국인투자의 대상으로는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과학기술·관광·유통·금융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이며(제6조), 첨단기술부문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는 장려된다(제7조). 다만,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정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여기서 장려되는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외의 보장, 은행대부 제공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다(제8조).

### (3) 特惠 및 投資目的物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 특혜는 특정품목을 제외한 수출입물자에 대한 관세면제, 이윤발생년도로부터 3년간 소득세면제, 이후 2년간 소득세 50% 범위내의 감면, 결산이윤의 14%로 소득세를 인하 등이다(제9조).

투자방법 및 투자가치이다. 투자방법은 화폐·현물·공업소유권·기술비결 등 재산과 재산권으로 할 수 있으며, 투자가치는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제10조). 여기서 북한의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방법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업소유권·기술비결 등에 관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제3자에 의한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sup>124)</sup>

### (4) 土地使用權 및 勞務管理

토지사용권에 관한 규정이다.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는 최고 50년까지 임대해주고, 임대기간중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양도 또는 상속을 인정하

123)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설립지역의 제한이 없다. 이와 달리 북한이 외국인기업의 설립지역을 제한한 것은 경제개방으로 인한 체제에 대한 불안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4) 崔達坤·申榮鎬, 「北韓法入門」(세창출판사, 1998), 410면.

고 있다(제15조).<sup>125)</sup>

외국투자기업의 인력채용에 관해서는 계약상 정해진 관리원,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제외하고는 북한주민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주민의 고용 및 해고는 해당 노동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제16조).

#### (5)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아울러 기업운영으로부터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수입, 기업청산후 잉여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이러한 국유화의 원칙적 금지와 보상규정은 진전된 외국인투자유치책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의견상이'가 있을 때, 우선 당사자간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사건을 심의·해결하거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2조).

## II. 合營法

### 1. 概 觀

북한은 1984년 처음 외국인투자법제로서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나 북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는 점은 전술한 바 있다. 북한은 「합영법」에 의해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실험하였으나, 합영을 위한 헌법적 근거는 물론 私的 所有權을 부정하고 세금도 자본주의적 요소라고 배격하는 상황에서 합영법은 중국의 「中外合作經營企業法」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북한은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 등의 외국인투자법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1992년 10월 합영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1984년

125) 토지임대기간을 50년까지 보장한 것은 중국의 廣東省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와 같다. 「廣東省便覽, 1996」(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6), 212~214면.

합영법을 그대로 둔 채 시행세칙만 손질함으로써 법체계상 무리가 있었다. 이에 북한은 1994년 1월 「합영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어 1995년 7월 합영법 시행규정도 새로이 정비하였다.

## 2. 主要 內容

다음에 1994년 「합영법」과 1995년 「합영법시행규정」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1) 基本原則

합영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으로 북한과 외국간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의 확대·발전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시행규정 제1조). 또한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규정하고(법 제6조), 구체적으로 합영기업의 국유화 또는 몰수를 금지하고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의 법적 보호와 함께 이들의 북한법규정의 존중·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정 제4조).

### (2) 合營當事者 및 合營對象

합영당사자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를, 외국당사자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아울러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로 정하고(제2조), 특히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와의 합영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 제공 등 우대혜택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시행규정 제2조). 여기서 '기관·기업소·단체'는 북한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개념을 그대로 규정한 것으로 북한에 사실상 존재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26)</sup>

한편 합영대상을 과학기술·공업·건설·운수를 비롯한 부문으로 규정하고(법 3조),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부문과 전자·자동차, 기계제작, 금속, 채취, 동력, 건설, 제약, 화학공법부문·건설·운수·금융·관광·봉사부문을 비롯한 여러부문으로 규정하였다(시행규정 제8조). 한편 국가가 정한 부문과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동의 이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합영을 금지하고(시행규정 제11조), 또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공

126)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Ⅲ)」, 前掲書, 198년.



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적은 대상에 대해서는 합영기업의 창설을 제한하고 있다(시행규정 제12조). 이와 함께 경쟁력이 높은 제품생산, 하부구조건설,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대상에 대해서는 합영을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3조).

### (3) 合營企業의 法的 地位

합영기업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법 제4조)고 하여 그 법적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며(제5조),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의 합영기업은 규약을 가지며 기본규약과 이사회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된다(제20조). 합영기업은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한 대상에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경영활동 결과에서 얻은 소득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기업형태이다.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며 기업채무에 대하여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지며 합영당사자도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이다.<sup>127)</sup>

### (4) 設立節次 및 出資

합영기업의 창설신청과 승인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합영을 하려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계약서 사본·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그리고 합영기업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합영사업에 관한 관장기관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여기서 대외경제기관은 자유경제무역지대밖에 창설되는 합영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총투자액 2,000만원

127) 崔達坤·申榮鎬, 前掲書, 415~416면.

이상되는 하부구조건설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밖의 대상 가운데서 총투자액 1,000만원이상되는 합영대상에 관해 심사승인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은 지대 안에서 총투자액 2,000만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건설구조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서 1,000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시행규정 제18조제2항). 이에 따라 합영창설승인을 얻은 합영기업은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법 제10조제1항), 기업등록시에는 기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시행규정 제25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동 제26조제1문). 합영기업의 설립절차는 기업등록기관에 등록한 때 종료하고 이 때로부터 합영기업은 성립하며 법인으로 된다(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정 제26조제2문).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하며(법 제10조제3항, 시행규정 제27조),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시행규정 제28조, 제29조).

다음 합영기업의 출자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보면,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법 제11조제1항, 시행규정 제31조제1항), 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기술비결·토지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법 제11조제2항제1문), 출자가액은 해당시기에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1조제2항제2문, 시행규정 제39조제1항). 이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출자지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있다.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지분을 상속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법 제12조),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합영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다음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시행규정 제41조제2항).

#### (5) 合營企業의 組織과 管理

합영기업에는 필요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법 제16조, 시행규정 제49조제1·2항), 이사회에는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2명을 두고 부이사장과 이사의 수는 합영당사자가 기본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49조제3·4항).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고, 이사장은 합영기업의 법정대표자의 지위를 갖는다(시행규정 제50조). 또한 합영기업에는 경영관리기구를 두는데 여기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이 포함되고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재정검열원은 합영당사자

들이 나누어 맡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정 제58조). 합영기업의 경영대표권은 기업 책임자가 행사하며 경영대표권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시행규정 제59조).

한편 기업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을 북한의 勞力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와 기능공만을 내각(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합의하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법 제26조). 합영기업은 북한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 따라 勞力을 관리·이용하여야 하며(법 제27조), 노동보호용구·작업필수품·영양식료품과 같은 노동보호물자는 북한의 노동법상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없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91조).

#### (6) 經營活動과 生産 및 販賣

합영기업은 기본규약, 이사회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22조). 이에 따라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승인서에 밝힌 조업예정날자 안에 조업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조업기일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1조, 시행규정 제64조). 합영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 내에서만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시행규정 제71조제1항). 또한 경영기업에 필요한 물자와 공업소유권·저작소유권·기술비결을 북한 영역 내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팔거나 수출할 수 있으며, 특히 물자·노력·전기를 북한 영역 내에서 보장받고자 할 경우나 생산한 제품을 북한의 기관·기업소에 판매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간 물자 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시행규정 제74조).

#### (7) 財政 및 外貨管理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산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시행규정 제96조~제103조).<sup>128)</sup> 한편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하에 북한은행에 계좌(돈자리)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하에 외국은행에도 계좌를 설치할 수 있으며(법 제28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 또는 외국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동 제29조). 그리고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128)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5년 12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산부기계산규범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을 제정하고, 1996년 7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을 제정하였다.

외화를 이용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104조).<sup>129)</sup>

(8) 決算과 分配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는 합영당사자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결산은 다음 해 2월 내에 히도록 되어 있다(법 제33조, 시행규정 제115조).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하여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에 의한다(시행규정 제116조). 합영기업이 적립하여야 할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의 매년도 결산이윤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법 제35조제1항),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을 위한 상급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등은 결산이윤의 10%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법 제36조, 시행규정 제118조). 이윤분배는 재정검열원이 결산문건을 검영하고 이사회에의 비준을 얻은 다음에 하며, 이윤분배방법은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 등을 공제한 다음 출자지분에 따라 합영당사자 사이에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법 제37조).

(9) 解散 및 紛爭解決

합영기업의 해산사유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불이행, 자연재해 등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법 제43조, 시행규정 제135조). 존속기간이 만료전이라도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법 제44조). 이 경우 이사회가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하며,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재판소가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동조).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정지하고 청산을 완료한 다음 청산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업등록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동조제3항, 시행규정 제148조).

한편 합영기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하되(법 제47조제1항),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동조제2항).

---

129) 북한은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으로 「외화관리법」과 「외국투자은행법」을 마련하고 있다.

### Ⅲ. 合作法

#### 1. 概觀

북한은 1992년 10월 「합작법」을 제정하고, 1995년 합작법 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합작법」은 21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행규정은 7장 132개조문으로 되어 있다. 합작의 법적 개념은 「외국인투자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이 정의되어 있다. 즉,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라고 한다.

이를 보면, 합작기업의 경영권은 북한측 당사자에 전속되고 외국측 당사자는 경영문제에 대하여 자문 내지 협의만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법 제6조, 시행규정 제11조).<sup>130)</sup> 따라서 외국측 당사자는 투자대가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지분을 상환받거나 이윤을 분배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북한이 「합작법」을 통해 외국의 직접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외채부족으로 인한 추가적 차관 도입의 애로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즉, 외국측 당사자의 자본주의식 기업논리가 북한에 침투함으로써 야기할 수 있는 체제불안 요인을 차단하면서도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북한의 경제현실여건상 합작의 효용성을 판단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임가공방식의 상법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sup>131)</sup> 합작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확대는 북한의 새로운 유형의 투자형태이다.<sup>132)</sup>

130) 일반적으로 합작기업은 사업을 공동으로 할 목적으로 공동의 소유자가 설립하는 전형적인 사업형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 또는 기술을 가진 둘 이상의 기업결합으로 같은 사업상의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며, 사업체의 공동경영권을 갖는 조합의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합작기업은 자기회사의 자금부족이나 경영자원의 부족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자본의 단독진출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진출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崔達坤·申榮鎬, 前掲書, 423면.

131) 북한의 합작법제정의 배경에 관해서는 「北韓法の體系的考察(Ⅲ)」, 前掲書, 213~214면.

132)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합작이라는 표현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제1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 主要 內容

### (1) 合作의 基本原則

「합작법」은 북한과 외국간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법 제1조), 그 시행규정은 합작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시행규정 제1조). 북한의 합작기업은 당사자들이 투자한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서 늘어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북한의 법인이고(시행규정 제8조), 자기 소유의 범위안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진다(동 제9조). 이는 합작기업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합작법」은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의 공화국의 법과 규정의 존중의무를 규정하였다(시행규정 제12조). 합작사업에 대한 통일적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하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합작사업에 대한 지도는 지대당국이 한다. 특히 합작법 시행규정은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몹이 기업등록자본의 30%이상인 합작기업에 적용되고 또한 맞물림무역(구상무역)이나 가공무역 형태로 외국투자를 도입하여 합작을 한 기업에도 적용된다(시행규정 제15조).

### (2) 投資對象 및 當事者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관광·봉사부문에 조직할 수 있다(법 제3조). 여기서 합작투자유치의 목적이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진흥과 산업기술의 낙후성을 벗어나기 위한 기술도입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합작사업을 관광·봉사부문에서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외화가득률을 높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법 제4조, 시행규정 제5조). 합작투자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합작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또는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제공 등의 우대혜택이 마련된다고 한다(시행규정 제6조). 한편 나라의 안전과 국가 및 사회의 이익에 지장을 주는 대상, 국가가 따로 정한 대상에 대해 합작을 금지하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심히 낙후된 대상, 북한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

하는 대상이나 경제적 효과성이 적은 대상의 합작을 제한한다(시행규정 제7조). 여기서 합작의 당사자는 북한측은 기관·기업소·단체이며, 외국측은 법인과 개인 및 북한영역 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가 해당된다(시행규정 제2조). 이는 「합영법」상 규정과 같다.

### (3) 創設節次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북한측 투자가는 합작계약서초안, 경제기술서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 외국측 투자가와 함께 합작계약서·기본규약·경제기술타산서를 작성하고(법 제6조, 시행규정 제17조),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한다. 이에 대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하며(시행규정 제21조),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관계기관에 합작기업창설합의의뢰서를 보내어 관계기관별 해당 내용을 합의하여야 한다(동제24조). 여기서 관계기관으로는 계획기관·재정기관·과학기술행정기관·국토관리기관, 환경보호기관 등이 있다.

합작기업창설합의의뢰서를 받은 해당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보내고(시행규정 제25조) 기업창설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안으로 심의하고 합작기업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승인 또는 부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법 제7조, 시행규정 제26조).

합작기업창설일은 기업을 등록한 날이며 이날부터 북한의 법인으로 된다(법 제8조, 시행규정 제27조). 또한 합작기업은 기업등록일부터 20일안에 해당 재정기관(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시행규정 제28조), 이와 함께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29조). 그리고 합작기업의 투자에 대해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법 제10조)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규정에서 정하였다(시행규정 제39조~제41조).

### (4) 組織

북한측 당사자가 기업의 생산 및 경영을 전담하되 별도로 합작당사자들이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 기구에서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상 중요문제들을 합의하도록 하였다(법 제16조). 공동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필요한 수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

해 정하며, 공동협의회에는 합작당사자와 기업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합작당사자 일방에서 전담할 수 없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32조).<sup>133)</sup>

합작기업은 북한측의 단독경영형태로 되어 있으나 「합작법」은 내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원리는 북한의 국영기업 내지 협동단체에 적용되는 일반원리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합작기업의 관리성원은 다른 기관 또는 기업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시행규정 제30조), 재정검열원은 재정부기문건을 검열하고 검열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정 제31조).

#### (5) 經營活動, 決算 및 納稅

합작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영업허가증서는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밝힌 조업예정날자 안에 발급받아야 한다(시행규정 제56조).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허가신청서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 내야하고(시행규정 제59조·제60조), 합작기업은 허가받은 업종의 범위내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하며 업종변경시에는 업종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시행규정 제61조). 합작기업은 기업창설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의 해당 기관·기업소에서 구입하거나 생산제품이나 구입한 물자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따른 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64조). 그리고 합작기업의 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부기계산규범에 의하고(시행규정 제78조), 합작기업의 출자증서, 연간결산보고문건, 청산보고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도록 하였다(동 제80조).<sup>134)</sup> 한편 합작기업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하되 외국합작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외화환산금액을 부기할 수 있는데, 이 때 외화환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교환 및 결제시세로 한다(시행규정 제79조).

그리고 합작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은 월별·분기별·연도별로 하고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재정은행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법 제17조). 합작

133) 공동협의회기구의 성격 내지 지위는 단순한 경영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崔達坤·申榮鎬, 前掲書, 427면. 다만, 공동협의회기구에서 토의하고 합의한 문제는 합작계약서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시행규정 제35조)에서 공동협의회기구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나 비상설기구로 하였다는 면에서 보면 외국투자자의 보호에 어느 만큼 실효성을 갖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北韓法の體系的考察(Ⅲ)」, 前掲書, 219면.

134) 이와 관련한 규범으로는 1995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이 있다.



기업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영기업의 경우와 동일하다(시행규정 제89조 이하). 또한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시행규정 제92조).<sup>135)</sup> 다만, 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북한국적의 조선동포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외의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우대조치를 부여한다(시행규정 제93조).

#### (6) 投資償還 및 利潤分配

「합작법」은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시행규정 제98조). 투자상환과 이윤분배에 있어서 합작제품에 의한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태환성이 있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며 경우에 따라 원자재의 구상무역방식에 의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여기서 합작제품에 의한 투자상환 내지 이윤분배방식의 채택은 외국투자자에게 판매 등의 처분부담을 지우며 북한측의 납기준수·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등의 요구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해 이 방식은 임가공방식에 의한 합작투자가 아닌한 회피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다.<sup>136)</sup>

한편 합의에 의한 다른 방법이란 의미는 투자대가를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지분을 제한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도록 한 것으로 이 경우 투자지분의 상환형태는 일종의 차관 공여 내지 대북투자의 방식으로서 직접투자라 볼 수 없으며, 이윤분배형태는 이윤이 없으면 어떠한 투자이윤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측 당사자는 회사경영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측 투자자의 투자의욕의 제고면에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sup>137)</sup> 따라서 투자지분 상환형태의 채택에 있어서는 이 자율과 상환시기에 관하여 상세한 약정을 할 필요가 요구되며, 이윤분배의 형태를 채택할 때에는 최소한 경영평가 내지 결산방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이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4조, 시행규정 제99조). 이는 일종의 주의규정으로 합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135) 여기서의 세금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의한 각종 세금을 말한다.

136) 崔達坤·申榮鎬, 前掲書, 426면.

137) 上掲書, 같은 면.

(7) 解散 및 清算

합작기업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시행규정에 의하면, 합작기업의 해산사유로 합작당사자들의 계약위반에 의한 기업운영의 불가 내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기업운영이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해산합의, 파산, 합작승인 또는 기업등록의 취소 등을 들 수 있다(시행규정 제112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그리고 합작기업이 해산되면 청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청산절차를 이행하게 된다(시행규정 제115조 이하). 즉,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업의 해산 승인 다음날부터 15일안에 공동협회의를 열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지만, 합작기업이 파산되었거나 합작기업창설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재판소 또는 기업창설승인기관이 청산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청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시행규정에 규정되어 있다(제117조).

(8) 監督統制 및 紛爭解決

합작기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사안에 따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다. 합작관련 한 법규범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기업등록기관이 감독통제하며, 재정부기문건에 관한 검열은 세무기관이 담당한다. 아울러 북한측 투자가의 상급기관은 합작기업에 대한 기술과 실무적 지도와 통제를 한다(시행규정 제127조). 한편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의 해결은 상호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한다(법 제21조, 시행규정 제132조).<sup>138)</sup>

## IV. 外國人企業法

### 1. 概觀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해 「외국인기업법」을 승인하고, 같은 해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에서 이를 법령으로 승인하였다. 이 법은 4장 31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국인투자법」과

---

138) 합작법은 합영기업에서와 같은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복되는 규정이 많다. 「외국인기업법」은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외국인기업 창설과 운영질서에 관한 규정이다. 외국인기업이라 함은 북한에서 1992년 외국인투자법제의 정비와 함께 새로이 나타난 투자형태로서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점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내로 그 설립이 제한된다.<sup>139)</sup> 이는 중국 전역에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중국의 외자기업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4년 3월 27일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기업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이 시행규정은 8장 80개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외국인기업의 투자대상, 투자금지분야, 투자시 구비조건, 등록자본, 제재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2. 主要內容

### (1) 基本原則

「외국인기업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가의 범위는 '다른나라의 법인과 개인'으로 명시하였다(제1조).

둘째,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sup>140)</sup>

셋째, 외국인 단독 투자대상분야로서 전자공업·자동차공업·기계제작공업·식품가공업·피복가공업·일용품공업과 운수·봉사를 여러부문으로 규정하되, 나라의 안정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의 창설을 금지하고 있는데(제3조, 시행규정 제7조), 이는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141)</sup> 여기서 투자금지의 범위가 막연하고 포괄적이며, 투자금지의 사유도 자

139) 이는 북한이 외국인투자법제를 마련하면서 개방범위의 한계와 관련하여 북한측의 단독 경영을 골자로 하는 합작기업형태와 일정지역에서의 외국인 단독기업 형태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北韓法の體系的考察(Ⅲ)」, 前掲書, 226면.

140) 이는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정의 규정(제2조)과 같은 취지이다.

141)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법」은 투자금지대상을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라고 하여(제11조) 「외국인기업법」에서의 금지규정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다. 그것은 외국인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만 창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崔達坤·申榮鎬, 前掲書, 430면.

의적인 판단이 개재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외국인기업에 대한 보호규정(제4조), 북한법규의 준수 의무(제5조),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외국인기업 창설규정(제6조) 등을 두었는데, 이들 규정은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한 것을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外國人企業의 創設

외국인기업의 창설절차는 기업창설 사전교섭·기업창설신청·창설승인·기업등록 및 세무등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를 보면,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업의 규약·경제기술타산서·투자자의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한 심의기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7조, 시행규정 제12조). 여기서 창설신청서를 어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법률과 시행규정이 달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제출기관에 관하여 정무원 대외경제기관(법 제7조)과 도행정경제위원회(지대당국, 시행규정 제12조)<sup>142)</sup>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대당국이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도록 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외국인기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는 지대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143)</sup>

이후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80일내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의 결정을 하게 된다(법 제8조). 승인처리기간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에 의해 합작기업의 50일보다 길다. 외국인기업의 창설이 승인되면, 외국투자가는 30일 이내에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20일 내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제3항). 여기서 기업창설일은 기업등록일이 된다(동조제2항).

142) 지대당국의 개념에 관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은 도행정위원회를 지대당국으로 규정한 데(제12조제1문) 비해, 합영법시행규정은 시행정경제위원회를 지대당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이 경우 지대당국이 도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시행정경제위원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또는 후에 제정된 합영법시행규정에 의거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가 나진시와 선봉군의 일부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정경제위원회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161면.

143)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161면. 아울러 이 중 자금신용확인서는 사전발급을 요하는 것으로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신청 전에 북한당국에 대한 사전교섭이 요청되는데 그 발급기관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Ⅲ)」, 前掲書, 228면.

외국인기업법상 특징은 기업창설승인 후 투자이행여부에 관한 사후감독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즉, 외국투자가는 승인받은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정한 기간 내에 투자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12조). 한편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13조). 그밖에 외국인기업이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아래 북한 또는 타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북한 또는 타국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자회사설립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 (3) 經營活動

외국인기업은 제한된 지역이기는 하나 북한 내에서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의해 기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은 이에 대한 감독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 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며(법 제14조, 시행규정 제36조), 기업을 등록한 도경제행정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이 규정의 취지는 불명확하지만 외국인기업에 대한 감독기관이 분산되어 경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제품은 수출하거나 북한에서 판매할 수 있다(법 제16조). 여기서 북한의 원료·자재·설비를 구입하거나 제품 북한내 판매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sup>144)</sup> 또한 외국인기업의 외환관리에 관해서는 북한무역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환관리기관의 합의 아래 북한의 다른 은행이나 외국은행에도 구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아울러 외국인기업이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외환관리법규에 따라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법 제22조).

그리고 외국인기업의 회계 및 결산은 북한측 당사자가 없으므로 경영성과에 따른 이윤분배와는 관련이 없으나 조세부과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144) 여기서 북한의 외환사정이나 구매능력에 비추어 내수판매에는 난관이 예상되며, 원자재등의 구입에도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계획경제구조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崔達坤·申榮鎬, 前掲書, 432면.

관하여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소재지 내에 부기장부를 두고 경영계산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산부기계산규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법 제19조). 한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상황을 검열·감독할 수 있다(법 제27조).<sup>145)</sup>

외국인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해서는 먼저 노동력채용에 관하여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의 노동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북한주민으로 채용 또는 해고 하며, 외국의 기술자·기능공을 채용할 때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0조).<sup>146)</sup> 다음 외국기업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관하여 직업동맹조직의 결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직업동맹조직에 대하여는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노동조건 보장에 관한 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외국인기업에 대하여는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법 제21조).

#### (4) 解散과 紛爭解決

외국인기업은 해산과 파산에 의해 소멸하며(법 제30조), 해산사유는 승인받은 존속기간의 만료(법 제28조제1항), 외국투자자와 외국인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해산명령(법 제29조)에 의한다. 외국투자자가 존속기간 만료전에 기업을 해산하려 하거나 또는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28조제2항).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이 해산·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산·파산된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법 제30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31조), 이는 합작법상 해당규정과 동일하다.

145) 외국인기업에 대한 조세부과는 내국세의 경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의거하고(법 제24조), 관세의 경우 외국인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5조).

146) 기업운영에는 기술·자본 등 물적 요소와 노동력의 인적 요소가 결합되어야 하는데, 외국인기업은 물적 요소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 아래 조달·활용되지만 인적 요소의 조달에는 북한당국의 간섭을 받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둔 것은 경영활동상 중대한 제약으로 받아들여진다.

## V. 外國投資銀行法

### 1. 概 觀

북한에서 금융분야에 대한 외국자본의 협조 및 투자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로 제5장 32개조문으로 구성된 「외국투자은행법」이 채택되고,<sup>147)</sup> 1994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48호로 그 시행규정이 승인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북한이 국제경제·금융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지대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sup>148)</sup> 이 법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에서 금융부문의 은행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법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북한에는 '조선합영은행'(1989년 설립), '조선락원금융회사'(1987년), '조선통일발전은행'(1991년) 등의 은행들이 합영회사의 형태로 북한의 합영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합영회사의 대내외 결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합영법」의 규율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은행법은 합영은행 이외에도 외국인 100% 출자한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북한에 투자한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일반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

### 2. 主要內容

#### (1) 基本原則

이 법의 목적은 세계 여러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며(법 제1조), 그 시행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 및 해산과 관련한 절차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시행규정 제2조). 여기서 외국투자은행이라 함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인투자 자본으로 이루어진 은행으로 합영은행<sup>149)</sup>·외국은행<sup>150)</sup> 및 외국은행지점<sup>151)</sup>을 말한다(법 제2조제2문, 시행규

147) 이는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으로 승인되었다.

148) 이 법은 중국의 「中華人民共和國經濟特區內外資銀行·中外合資銀行設置條例」(1985. 4)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173면.

149) 합영은행은 "공화국의 은행(기타 금융기관 포함)과 외국인투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몹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시행규정 제3조제3문)으로서 은행업을 하는 합영기업이다.

정 제3조제2문). 외국투자은행을 투자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합병은행은 합병기업에 해당하고 외국은행은 외국인기업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법」은 투자부문에 금융부문을 포함시켜(시행규정 제8조) 「외국투자은행법」이 아니라도 합병은행의 설립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한 것은 은행업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어 외국투자은행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배경에 따른 것이다. 한편 외국은행지점은 합병·합작·외국인기업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투자형태를 띠는 것으로 은행업무의 특성상 합병은행·외국은행과 함께 「외국투자은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52)</sup>

또한 합병은행은 그 설립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외국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이 가능하다(법 제2조제3문, 시행규정 제3조제4·5문). 외국투자은행은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당연히 그 취득재산을 점유·이용·처분(판매·양도·상속)을 할 수 있다(법 제3조, 시행규정 제6조). 이를 위해 북한영역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법 제4조, 시행규정 제7조).

## (2) 外國投資銀行의 法的 地位

전술하였듯이 합병은행은 합병기업에 속하고 외국은행은 외국기업에 해당되므로 「외국투자은행법」은 「합병법」과 「외국인기업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은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합병은행과 외국은행은 각각 합병법과 외국인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외국투자에 관한 일반법인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sup>153)</sup>

한편 외국투자은행은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법 제6조, 시행규정 제9조). 중앙은행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업종을 심의승인하며 필요한 업무규범을 만들며 그 집행을 감독·통제한다. 그리고 외화관리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를 승인하며 그 집행을 감독·통

150) 외국은행은 “외국투자가가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운영하는 은행”(시행규정 제3조제4문)으로서 외국인기업에 해당한다.

151)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 운영하는 지점”(시행규정 제3조제5문)이다.

152)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174면.

153) 북한법체계에 있어서 일반법과 특별법관계의 구분 및 적용원칙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률체계는 법체계의 전체적인 고려사항 보다 필요에 따른 입법이 행해지는 북한의 법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제한다(시행규정 제9조).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지대에서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승인과 운영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지점이 하며, 등록된 외국투자은행의 등록은 지대당국이 하게 된다. 그리고 외국투자은행중에서 합병은행과 외국은행은 북한의 법인이나(법 제14조, 합병법 제6조,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제21조제4문), 외국은행지점은 북한의 법인이 아니다.

### (3) 外國投資銀行의 設立

북한 영역 내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주체는 외국투자자이다(법 제2조, 시행규정 제3조). 여기서 북한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주체에 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합병은행과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서첨부분문건으로 영업허가증사본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서 합병은행과 외국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는 은행이거나 적어도 금융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기업의 명칭, 기업등록, 등록자본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보다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시행규정 제11조, 제12조).<sup>154)</sup> 외국투자은행법상 외국투자자에 개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외국투자은행의 등록자본금이 상당히 고액이어서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외국투자자에 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북한영역 밖의 조선동포도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데(법 제7조, 시행규정 제4조), 기업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155)</sup>

또한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은 설립신청 및 승인, 설립등록 및 영업허가, 세무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북한영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면, 투자자는 은행명칭·책임자의 이름과 약력·등록자본금·불입자본금·운영자금·출자비율·업무내용 등을 밝힌 은행설립신청서를 북한의 중앙은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중앙은행지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조, 시행규정 제10조).<sup>156)</sup> 여기서 합병은행·외국은행·외국은행지점은 그 설립신청절차에 있어서 신청인과 첨부문건에 차이가 있다.(법 제9조~제11조). 먼저 설립신청인에 관해서는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당사자(북한측당사자와 외국측당사자)가 하고, 외국은행은 외국투자

154) 이는 「합영법」과 「외국인기업법」이 외국투자자에 분명히 개인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과 다르다(합영법 제2조, 외국인기업법 제1조).

155)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177면.

156) 합병은행,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서의 구체적 기재사항은 시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제11조~제13조).

가이며, 외국은행지점은 본점(외국은행의 본사)이 된다. 다음 첨부문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규약·경제타산서·은행관리성원명단·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투자자의 영업허가증사본(외국은행지점의 경우 본점의 영업허가증사본) 등이 요구된다. 이밖에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계약서를 요구하고, 외국은행의 경우 투자자의 재정상태표를 요구하며, 외국은행지점의 경우는 본점의 재정상태표·연차보고서·손익계산서·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한 책임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sup>157)</sup>

이러한 설립신청서가 제출되면, 중앙은행은 신청서접수일로부터 50일안에 은행설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시에는 은행설립승인서를 발급한다(법 제12조). 은행설립의 승인이 있으면 신청인은 승인일로부터 30일내에 은행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는 지대당국)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13조, 시행규정 제23조제1문). 이 때 외국투자은행은 등록자본금의 50%이상(외국은행지점의 경우는 운영자금 전액)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법 제19조). 그리고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시행규정 제26조).

한편 외국투자은행이 기본규약의 개정, 은행의 통합 또는 분리,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의 증가 또는 감소, 영업장소의 이전, 업종의 확대 또는 축소, 은행의 책임자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중앙은행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정 제27조).

#### (4) 外國投資銀行의 資本金과 積立金

외국투자은행이 그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자본금<sup>158)</sup>은 등록자본금·운영자금·자기자본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7) 외국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본점과 관련된 문건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일정금액의 예비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은행지점은 운영자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예비기금적립의무도 없기 때문에(법 제18조, 제20조) 본점의 신용과 지불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158) 자본금은 은행업무에 있어서 예금 등의 지불을 위한 최후의 담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합병은행과 외국은행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양자는 모두 중앙은행에 예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불준비금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北韓法の體系的考察(Ⅲ)」, 前掲書, 271면.

첫째, 등록자본금은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이 보유하여야 할 법정자본금으로서 조선원 3,0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여야 한다.<sup>159)</sup>

둘째, 운영자금은 외국은행지점이 보유하여야 할 자금으로서 조선원 8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외화이어야 한다(법 제18조, 시행규정 제36조).

셋째, 자기자본금(불입자본금, 예비기금, 기타 잉여금 등)은 채무보증액 또는 자기채무액(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았거나 보험에 의하여 담보를 받은 채무는 제외)의 5%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시행규정 제39조). 자기자본금의 부족이 생기는 경우 그 보충대책을 세워야 하며 부족현상이 3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산처분을 받을 수 있다(시행규정 제39조).<sup>160)</sup>

아울러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매년 세금을 공제한 연간 결산이익금에서 5%를 떼어 예비기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보상하거나 자본금을 늘이는데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법 제21조, 시행규정 제40조), 외국은행지점은 예비기금의 적립의무가 없다.<sup>161)</sup>

#### (5) 外國投資銀行의 業務

외국투자은행의 업무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외국인의 외화예금, 외화대부·시좌<sup>162)</sup>돈자리 잔고초과지불업무·외화수형(어음)할인, 외국환업무, 외화투자,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이행에 대한 보증, 외화송금, 수출입물자대금결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신탁업무, 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보관, 기타 업무로 되어 있으며 특정 외국투자은행은 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3조). 이를 보면, 그 업무범위가 국제금융업무의

159) 등록자본금은 일괄불입 뿐만 아니라 분할불입도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 1차불입금은 등록자본금의 50%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8조, 시행규정 제37조).

160) 이와 관련하여 불입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은 영업허가를 얻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치된 것으로 영업허가를 얻은 후에는 인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에서 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액의 20배의 범위내에서만 수신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불입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영업확장을 위해서는 나머지 등록자본금까지 추가로 예치하게 될 것이다. 申雄湜·安成祚, 前揭書, 184면.

161) 이밖에 외국투자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이익금에서 세금과 예비기금을 공제한 후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등의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2조, 시행규정 제41조).

162) 북한의 '시좌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찾을 수 있는 보통예금을 말한다.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타업무라고 하여 위의 규정은 예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외국투자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sup>163)</sup>

다만 외국투자은행의 여신업무에 대한 제한으로 특정기업에 은행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24조). 아울러 자기자본금의 35%를 초과하여 외화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정 제46조).<sup>164)</sup> 그 밖에도 외국인투자은행법은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sup>165)</sup>

#### (6) 決算 및 優待措置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업무의 결산은 다음 해 2월 안으로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결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 결산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안에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분기 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는 다음 분기 첫날 15일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7조). 그리고 외국투자은행은 기업소득세 면제 및 감면, 거래세면제,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 등의 우대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28조, 시행규정 제59조).

#### (7) 解散과 制裁 및 紛爭解決

외국투자은행의 해산사유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다른 명칭의 은행통합, 지불능력의 부족·합영쌍방의 계약업무불이행·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의 해산판결 등을 들 수 있다(시행규정 제60조). 이 중 재판소의 해산판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30일전에 중앙은행에 해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산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청산위원회(청산인)가 해당절차를 밟아 청산을 하여야 한다. 청산후 등록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시행규정 제61조). 한편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벌금부과 및 영업중지와 은행설립승인의 취소를 규정하고(법 제29조, 시행규정 제64조), 시행규정에서는 법규정의 위반에 대한 재산몰수와 형사적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정 제65조).

163)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Ⅲ)」, 前掲書, 273면.

164)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65) 이에 관해서는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184~186면.

그리고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협의의 방법에 의한 의견상이의 해결, 이 방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법 제32조, 시행규정 제68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제3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분쟁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정 제68조).

## II. 外國人投資法制 關聯細部規定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수적 또는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에 그 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한다.

### 1. 外國人投資企業 名稱制定 및 登錄規定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명칭제정규정」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두 규정은 1996년 2월 14일 정무원결정에 의해 승인되었다. 먼저 명칭제정규정은 북한영역 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정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다음 등록규정은 북한영역 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절서를 세우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규정들은 합영·합작·외국인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물적 설비 및 형식적인 절차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지사·상주대표사무소 등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166)</sup>

### 2. 外國人投資企業 勞動規定

북한은 여러 법규에서 노동관련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가 1993년 12월 30일 정무원결정 제80호에 의해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노동규정은 외국인투자법규에 규정된 노동관련조항을 구체화시키고 북한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주의노동법」 등에 대한 특칙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 법규이다. 이 노동규정의 제정이유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자체 공급하고 사회주의체제하의 노동관계를 자본주의적 경영

166)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190~198면.

방식과의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채용된 북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4년 「합영법」을 보면, 합영기업 종업원은 북한의 노동력으로 충원하되 계약에 정하여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아래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있다(제26조)고 하고, 합영기업은 북한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이용하여야 한다(제27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이란 바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다른 투자관련법규에 산재된 노동조항이나 「사회주의 노동법」에 앞서 외국투자기업의 노동문제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관련조항끼리 서로 상충될 경우에도 이 노동규정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북한의 노동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3. 外國人投資企業 簿記計算 및 簿記檢證規定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 및 부기검증규정은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등에 의해 규정된 경영계산<sup>167)</sup>의 재정부기규범의 후속규범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화폐자금의 조성·분배·이용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절차와 방법에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4일 정무원결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이 제정된 데 이어 부기계산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과 결산문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이 제정되었다.<sup>168)</sup>

여기서 부기계산은 경영활동과정에 재정상태의 변동과 경영활동의 결과를 화폐적으로 계산하고 기록하며 정리하는 경영계산을 말하며(부기계산규정 제2조), 부기검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과 결산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확정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부기계산·결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의논하는 상담봉사와 그것을 살피고 의견을 주는 검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부기검증규정 제2조).

167) 예컨대 합영법 제30조 및 동 시행규정 제125조~제127조, 외국인기업법 제19조 및 동 시행규정 제42조에 의하면, 합영기업과 외국인기업의 경영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규범에 따라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168) 이에 관한 상론은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202~213면.

## 4.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 (1) 概說

북한의 1972년 헌법은 “넓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제33조)라고 규정하여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의 합영회사 소득세법과 그 시행세칙 그리고 외국인소득세법을 제정하고 합영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72년헌법에서 규정한 ‘세금제도의 완전폐지’조항(제33조)을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2년 10월에는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의 제정과 관련한 세제정비를 위하여 1993년 1월 31일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을 제정하고, 이어 1994년 2월 21일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sup>169)</sup> 다음에 이·세금법제의 종래 세금법제와 다른 점을 살펴본다.<sup>170)</sup>

첫째, 합영회사소득세와 외국인소득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외에 외국인의 사유재산소유 등 시장경제요소의 인정을 전제로 하여 재산세·상속세·거래세·지방세 등을 신설하는 등 세목을 다양화하였다. 이는 종래 개별법률에서 합영회사소득세와 외국인소득세만을 인정한 것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북한의 세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이 북한영역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것에 비해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인이 북한영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립을 계기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세제상 특혜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조세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거래세의 경우 세율의 범위만이 규정되어 세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금감면도 재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세금납부 방법은 신고 및 공제납부로 이원화하여 간접세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169) 「세금법」의 목적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제1조)하는 것이며, 그 시행규정은 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목적하에 제정되었다(제1조).

170) 이에 관해서는 申雄湜·安成祚, 前掲書, 213~214면.

여섯째,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인상하고 세율을 하향조정하여 세제의 현실화를 도모하였다.

### (2) 稅金法の 一般規定

다음에 이 법의 일반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적용대상에 관하여 “공화국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법 제 1조)고 하고, “공화국령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령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시행규정 제1조제2문)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sup>171)</sup>

둘째, 외국투자기업은 소재지의 재정기관<sup>172)</sup>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하며(시행규정 제4조제1·3문), 북한의 세무관련규범에 따라 재정부기계산을 하여야 한다(법 제3조).

셋째, 조세방법에 관하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시행규정 제8조·제9조). 한편 세금부과와 징수, 세금납부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는 재정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시행규정 제3조제1문).

넷째, 북한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의 체결을 고려하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본 국정부와 북한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세금법 및 세금규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 시행규정 제12조제1문).

### (3) 稅金의 種類

북한의 세금법에 의하면 다음의 세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기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는 외국투자기업이고, 그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이 북한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sup>173)</sup>과 기타 소득<sup>174)</sup>이다(법 제8

171) 여기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영역 밖의 경제거래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의 실효성 내지 합법성에 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上揭書, 215면.

172) 세무등록기관에 대하여 세금법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정은 ‘해당 재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상 일치하고 있지 않으나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73) 여기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판매소득, 건설·탐사·개발부문의 소득, 상업(무역포함)부



조제1문, 시행규정 제13조).

둘째, 개인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북한영역 내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sup>175)</sup>과 북한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북한 영역 밖에서 소득을 얻은 자이다. 그 과세대상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개인기업소득 등이다(법 제18조, 시행규정 제37조).

셋째, 재산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북한영역 안에 건물·선박·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다(법 제25조제1문, 시행규정 제43조제1문).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임대중이거나 저당의 목적물일지라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과세대상에는 외국인이 북한영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선박·항공기이며, 건물에는 살림집·별장·부속건물이 포함되고, 선박·비행기에는 자가용배·자가용비행기 등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43조).

넷째, 상속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북한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과 북한영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북한영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법 제31조, 시행규정 제53조제1·2문). 상속재산에는 동산·부동산·화폐재산·유가증권·예금·저금 및 보험금·공업소유권·저작권·토지이용권·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53조제3문).

다섯째, 거래세로서 납세의무자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며(법 제37조), 과세대상은 생산부문에서 생산물과 수입물자를 북한영역 안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상업(무역)부문에서 상품판매액, 교통운수·금융·관광·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대부이자와 예금이자와의 차액, 요금과 같은 봉사수입금이다(법 제38조, 시행규정 제59조).

여섯째,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며(법 제43조제1문, 시행규정 제65조제1문), 지방세의 종류로는 도시경영세·등록면허세·자동차이용세가 있다. 이 중 도시경영세는 공원과 도로·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

---

문의 상품판매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소득, 교통운수·채신·금융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소득 등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13조제3문).

174) 여기에는 이자소득, 이익배당소득, 재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기술고문·상담·기능공양성과 같은 경영봉사를 하여 얻은 소득, 폐설물 및 부산물처리에 의한 소득, 그 밖의 소득 등을 포함한다(법 제8조제1문, 시행규정 제13조제4문).

175) 북한영역 내에 180일 이상의 체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시행규정 제36조제1문).

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목적세처럼 규정하고 있다(법 제43조제2문, 시행규정 제65조제2문).

(4) 制裁 및 申訴·請願

재정기관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정한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미납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며(법 제53조, 시행규정 제74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4조, 시행규정 제75조). 또한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벌금 이외에 형사책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55조, 시행규정 제77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재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신고·청원할 수 있으며(법 제57조, 시행규정 제78조), 신고·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7조제2문, 시행규정 제79조).

### 第3節 自由經濟貿易地帶法制

#### I. 自由經濟貿易地帶法：自由經濟貿易地帶에 관한 基本法

##### 1. 概觀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정무원 결정 제74호) 이래 이 지대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등 이 지역의 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북한은 이 지대를 개발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 대외경제협력총국, 나진-선봉 지도국, 조선설비총회사 등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왔다.<sup>176)</sup>

그리고 나진-선봉무역지대의 창설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일정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176)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해서는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 투자환경」(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7~187면.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3년 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유형, 세제, 토지임대, 임금, 출입국, 외화관리 등에서 다른 북한지역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우대조치를 둬으로써 외국인의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체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그 관련법제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계속 제도적 보완을 도모하고 있다.

## 2. 主要內容

### (1) 基本原則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법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에 의하여 지정된 나진·선봉지역을 말한다.<sup>177)</sup>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법적 지위 내지 여기에 적용되는 법규에 관하여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도 북한의 주권이 적용되나 국가가 별도로 수립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동조제2항, 제3항), 그 구체적 내용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북한의 법과 규정<sup>178)</sup>에 따르되,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북한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은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관장한다(법 제3조). 이 법의 적용대상은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이며, 북한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포함된다(법 제7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는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며(법 제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는다(법 제5조).

177) 이 결정에서는 라진시의 14개 洞, 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km<sup>2</sup>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으나, 그 후 확대되어 현재 총면적은 746km<sup>2</sup>에 이르고 있다.

178) 여기서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이라 함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제반 내용과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화관리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상의 관련 조항들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만 효력을 지니는 각종 법규를 의미한다.

(2) 管理機關의 權限과 任務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은 대외경제위원회과 지대당국이다. 전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동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sup>179)</sup> 후자는 현지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법 제8조).<sup>180)</sup> 투자승인권한은 투자규모 및 업종에 따라 대외경제위원회과 지대당국에 분담시키고 있는데 모든 투자승인신청은 지대당국에서 접수하며, 그 중 대외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은 대외경제위원회가 해당투자의 대상업종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재정부·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 주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그리고 대외경제위원회과 지대당국은 투자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 내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3조제1항).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낙후된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제2항).<sup>181)</sup> 또한 투자승인에 대한 사후감독규정으로서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이 투자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북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경우에는 투자승인을 한 대외경제

179) 대외경제위원회의 권한사항은 1) 국가정책에 기초한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경제관리운동과 관련한 집행 대책의 수립,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운영사업의 정상적 장악·지도, 3) 하부구조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 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에 대한 심의·승인 등이다(법 제9조).

180)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조직·집행하며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법 제11조). 그 권한사항으로는 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 2) 사회질서 유지 및 인신과 재산의 보호, 3) 지대개발계획의 작성·선전·집행, 4) 모든 투자신청의 접수, 총투자액이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2천만원까지의 대상과 그 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에 대한 심의·승인, 5) 기업등록·영업허가, 6) 투자자의 노력채용 방조, 7) 임대 기타 형식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 8) 건물·구축물·작업장의 건설·재건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봉사의 제공, 9) 기타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운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법 제12조). 그밖에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기금을 설치하고 양성기관을 운영한다(법 제15조).

181) 이는 「외국인투자법」에서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한 것(제11조)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다.

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이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14조).<sup>182)</sup>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구는 북한의 국가기관개편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經濟活動條件의 保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경제활동의 중점은 외국투자의 유치 및 기업운영에 달려있다. 외국투자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여기서 기업이란 외국인단독투자기업은 물론 합작기업·합영기업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도 외국투자자와 합영·합작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북한측의 단독투자기업도 허용되고 있다. 다만 북한측의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고, 임대기관의 승인 아래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노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고, 자유경제무역지대 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북한의 기술자·초급 기능공을 지대노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과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 아래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법 제21조). 이는 이미 외국인투자법 등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다.<sup>183)</sup> 또한 지대 내의 외국투자기업은 원료·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외에 있는 북한의 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고, 지대 외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 내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제24조). 이는 요건을 충족하여 지대 외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에 대하여서도 관세·기업소득세 등 이 법에 규정된 제반 우대조치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sup>184)</sup> 그밖에 외국투자기업과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를 설치하고 경제무역활동<sup>185)</sup>을 할 수 있

182)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기업법은 외국투자자와 외국인기업이 동법을 위반한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제29조)과 관련지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83)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 외의 북한 주민도 채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이는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정된 나진·선봉지구의 인구분포 등 인력수급사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184)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지대 외에 위치한 북한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법 제19조).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상품의 가공 및 증개무역기지의 역할을 위해 상품의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자유로운 출입, 저장·보관·가공·조립·분해·선별·포장·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제1항).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상품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일부 대중 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2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가격결정원리를 배제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는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3조).<sup>186)</sup>

#### (4) 關稅

북한에서 관세는 나라의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의되고 있다.<sup>187)</sup> 그러나 북한에서 무역은 국가독점과 계획통제 아래 무역상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밀수 방지 등을 위하여 여행자 소지품·국제소포 등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다. 관세의 종류로는 부과대상에 따라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관관세가 있고,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채택·적용하는데 최저세율은 협정세율로서 호혜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말하며(세관법 제37조), 최고세율은 일반세율로서 최저세율의 2 내지 4배가 보통이다. 관세부과 방법으로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부과한다.

관세부과의 기준가격은 수입물자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 수출물자인 경우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수출입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매가격으로 한다(동법 제32조제1항). 관세율은 정무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제2항). 여기서 관세관련기관으로는 관세관리총국<sup>188)</sup>·세관<sup>189)</sup>·세관검사국<sup>190)</sup> 등이 있다.

185) 여기서 경제무역활동이란 무역업무 외에 일반적인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6) 이에 관하여는 「무역항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187) 「민사법사전」, 前掲 辭典, 134면.

188) 관세관리총국은 무역부 산하기구로서 관세 제기관을 직접 통할하며 관세 제기관의 조직화·관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관세정책의 입안 또는 관세기준에 관한 문제의 해결·관세 통계의 조직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89) 세관은 관세관리총국의 지도 아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적법성을 검사하고 관세금액의 산정과 징수, 불법 수출입화물 단속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관세에 관하여 5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특혜관세제도<sup>191)</sup>의 실시(제25조)와 관세면제 대상과 부과대상을 열거하고 기업의 서류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 내에 들어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등이다(제26조). 다만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어오는 경우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해 내가는 경우에는 제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27조). 한편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내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

#### (5) 通貨·金融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통화·금융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외화관리법의 규정과 중복된다. 먼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유통화폐는 북한 원화로 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북한 원화 또는 전환성(태환성) 외화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30조), 북한원화와 외화의 환산비율, 즉 환율은 북한 무역은행의 공표환율에 따르며,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아래 북한과 타국의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둘 수 있게 한다(제31조). 또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북한과 타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32조제1항) 북한은행의 대출능력에 의문이 있다. 또한 대부분은 북한원화와 외화로 산(외화와 교환한) 북한 원화는 북한은행에 예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아래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33조), 이 규정은 「외화관리법」(제19조)과 중복된다. 물론 당해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는 면제된다(「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제24조제1항제1조). 여기서 비거주자라 함은 북한주민이 아닌 외국인을 의미한다. 그밖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정해진 장소에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조).

190) 세관검사국은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징수를 전담한다.

191) 여기서 특혜관세제도란 자유경제무역지대 외의 지역에 비교하여 관세부과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6) 特惠誘引制度

송금보장에 관하여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이자·배당금·임대료·봉사료·재산판매 수익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 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5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법」 제20조, 「외국인기업법」 제22조 및 「외화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외국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노임 등 송금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에 비하여 특징이다.

세제상의 특혜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기업소득세율을 결산이윤의 14%로 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25%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제36조).

둘째, 경영기간이 10년이상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인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셋째, 외국투자가가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0조).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법」 제9조제2호와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내용을 반복 규정한 것으로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하부구조건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다음의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입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8조).

둘째, 북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법 제39조). 여기서 장려부문이란 외국인투자법 제7조, 합작법 제4조에 규정된 투자업종을 의미하나 자금대부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규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41조).



(7) 紛爭·解決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면서(제42조), 제43조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3국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II. 自由經濟貿易地帶에 대한 關聯規定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경제개방의 실험지대로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여타 지역과 다른 특수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이어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대 내의 기업소 및 국내투자기업관련규정, 외국투자기업의 설비 및 경영관련규정, 외국투자기업의 대상관련규정, 기업거래행위 관련규정,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규제관련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192)</sup> 다음에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관련한 규정들에 관하여 개관하여 본다.

1.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人出入規定

북한은 1993년 11월 29일 정무원 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이하에서는 '출입규정'이라고 함)을 제정하였다. 출입규정의 목적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 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한다(제1조). 이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과 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는데(제2조),<sup>193)</sup> 여기서 출입은 '외국-자유경제무역지대 사이의 왕래'와 '북한의 타지역-자유경제무역지대 사이의 왕래'를 의미한다.

192) 이 규정들의 全文은 「황금의 삼각주 : 라진-선봉 법규집」, Vol. 1~7(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193) 이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도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가는 경우를 크게 외국에서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들어가는 경우와 북한의 타지역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어 규율하고, 관광객에 대해서는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제41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한 의미의 무사증제도가 아니라 사증에 갈음하는 이른바 '초청장'을 요구하고 있다(제6조제1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서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자동차통행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1조). 또한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가려는 외국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제7조). 다만, 북한의 관광증<sup>194)</sup>을 휴대한 외국인관광객의 경우에는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갈 수 있다(제10조제1문).

다음 자유경제무역지대로부터 나오는 경우에도 북한의 다른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와 직접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지대에서 직접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증없이 출국할 수 있으며(제12조),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아야 하며(제14조), 관광목적인 경우에는 관광봉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제10조제3문). 아울러 사증없이 지대에 들어왔다가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3조).

## 2.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企業常駐代表部事務所規定

북한은 1994년 2월 21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여기서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에 의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치되어 본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 필요한 범위내에서 외국기업이 위임한 대리업무활동을 하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을 말한다.

194) 관광증은 북한의 해당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제10조제2문) 사실상 사증과 다름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自由經濟貿易地帶 自由貿易港規定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정무원결정(제20호)으로 「자유무역항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4장 28개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중계무역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활동을 원만히 보장하여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제1조). 북한은 자유무역항으로 나진항·선봉항·청진항을 선정하고 있다.<sup>195)</sup> 여기서 청진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속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법규범은 청진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sup>196)</sup>

### 4.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人滯留 및 居住規定

북한은 1994년 6월 14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의국인체류및거주규정」(이하에서는 '체류·거주규정'이라고 함)을 승인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지대에서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제1조). 외국인의 지대내에서의 체류는 기간에 따라 90일까지의 단기체류와 90일이상의 장기체류로 구분되며(제3조제2문), 1년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에 거주할 수 있다(제3조제3문). 지대안에서 외국인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을 휴대하여야 하며, 증명문건에는 체류증·거주등록증·여행증·관광증·출입증 등이 있다(제16조). 지대 안에 들어온 외국인은 체류등록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에 관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sup>197)</sup>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 5. 自由經濟貿易地帶 稅關規定

북한은 1995년 6월 28일 중앙인민위원회 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세관규정」(이하에서는 '세관규정'이라고 함)을 채택하였다. 이 세관규정은 북한의 관세법제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맞는 세관통과질서와 특혜관세제도를 철저히 세

195) 「민사법사전」, 前掲 辭典, 461면.

196) 申雄湜·安成祥, 前掲書, 372면.

197) 그 주요업무는 자동차통행증·다회출입증·사증·여행증의 발급, 여행증·출입증·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등을 들 수 있다.

위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치된 세관통로를 통하여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운송수단·국제우편물을 관리하거나 지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관·기업소·단체, 합영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 상주대표기관과 지대에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공민·외국인·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제2조). 여기서 지대세관은 국경역과 자유무역항을 비롯한 지대경계선의 통로와 지대 안의 비행장과 지대 안의 중요지점에 설치된다(제3조).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세관질서는 북한의 세관법규정과 지대관계법 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 6. 自由經濟貿易地帶 中繼‘집임자’代理業務規定

북한은 1995년 7월 13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중계집임자대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집임자 대리업무제도를 창설하였다. 이 규정은 외국의 짐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경유하여 외국에 수송하려는 집임자의 편의를 보장하며, 외국의 중계수송을 원만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외국집임자 대리기관은 외국의 화물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거쳐 외국에 중계수송하려는 화주의 편의를 보장하고, 중계화물이 수송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화주의 위탁에 따라 중계하는 화물의 접수·발송·작업 및 보관수속·세관수속·검사 및 검역수속·비용청산·소송조직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북한의 기관을 말한다.

#### 7. 自由經濟貿易地帶 建物讓渡 및 抵當規定

북한은 1995년 8월 30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건물양도및저당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건물의 양도 및 저당질서를 확립하여 지대 안의 기업활동조건과 외국인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토지임대법」의 제정 전에도 외국투자관련법률중에 토지의 출자·임대 등을 규율하는 법규를 두고 있었으나, 건물에 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었다. 이로써 비록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 규정을 통해 북한의 건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sup>198)</sup>

198)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上揭書, 425~436면.

### 8.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人投資企業 公印彫刻 및 登錄規定

북한은 1996년 3월 28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투자기업공인조각및등록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에 다른 북한체제의 유지 및 수호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부분적인 자본주의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리나 위임을 통한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외국인의 북한에 대한 투자에 대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창설되는 합영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을 포함하여 외국기업의 지사·대표부·외국인투자기업의 공인조각·등록 및 이용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 9. 自由經濟貿易地帶 加工貿易規定

북한은 1996년 2월 정무원결정(제8호)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가공무역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종래의 무역형태가 사회주의권국가와의 물물교환 내지 구상무역을 위주로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무역형태가 와해된 현실에서 국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거래형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은 대외무역에서의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원료를 적게 쓰거나 전혀 쓰지 않으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가공무역을 통한 대외시장의 진출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무역법」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입각하여 가공무역을 장려하고 세관은 위탁가공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등 가공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범으로서 이 규정을 마련하였다.

### 10. 自由經濟貿易地帶 廣告規定

북한은 1996년 4월 30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광고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광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광고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고 광고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북한이 광고규정을 마련한 것은 광고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대표적인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자본주의경제제도의 도입이라는 현실을 잘 나타내 주는 사례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 11. 自由經濟貿易地帶 工業地區開發 및 經營規定

북한은 1996년 4월 30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공업지구개발및경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공업지구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경영하는 규범 및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상업구역, 상업용주택구역, 관광 및 봉사구역, 비행장·항만·고속도로의 건설 및 경영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참고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10개의 공업지구개발을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99)</sup>

### 12. 自由經濟貿易地帶 國境檢疫規定

북한은 1996년 6월 18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국경검역규정」(이하에서는 '국경검역규정'이라고 함)을 마련하였다. 이 국경검역규정은 북한의 헌법 및 인민보건법의 예방의학적 관점에서의 검역에 관한 것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00)</sup> 따라서 국경검역규정의 목적은 외국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전염병과 해충, 잡풀, 독성물질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장소적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기준으로 외국에서 지대로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나가려는 여행자(사람)와 짐(화물), 운송수단에 대한 국경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2조).

검역대상이 여행자인 경우에는 국경출입지점에 도착한 즉시 국경검역을 실시하며, 검역대상물에 따라 보건위생과 관련하는 국경위생검역대상과 국경수의검역대상 및 국경식물검역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국경검역은 국경출입지점에 있는 국경검역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경검역기관에는 국경위생검역기관, 국경수의검역기관, 국경식물검역기관이 포함되며, 각 국경출입지점에 검역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제3조, 제11조).

199) 이를 보면, 신흥·후창·창편·백학·관곡·홍의·웅상·사회·우암·원정공업구 등이다.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환경: 투자·무역·봉사·특혜제도」, 前掲書, 32~34면.

200)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제를 보면, 인민보건법(1980. 4. 3 최고인민회의 채택), 의료법(1998년 1월 채택) 등이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의 사회적 제조조건에 관한 인식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 13. 自由經濟貿易地帶 請負建設規定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청부건설규정」을 제정하였다. 북한에서 국토건설의 종합적인 계획은 「토지법」(1977. 4. 30)으로 규율하고, 건설부문에 있어서 건설총계획은 「건설법」(1993. 12. 10)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청부건설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대상지역으로 지대내의 정부건설에 관한 제도와 질서를 규율함으로써 건설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 14. 自由經濟貿易地帶 觀光規定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관광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나마 자유로운 관광여행 등을 허용함으로써 관광투자를 유인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뿐만 아니라 북한의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남한의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업은 북한의 계획에 의하면, 백두산·묘향산·칠보산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sup>201)</sup>

### 15.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投資家代理人規定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투자가대리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 투자와 관련한 절차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규정은 북한민법상 대리제도(제31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사회주의체제의 범위내에서의 개방과 투자유치의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규정상 '본인'의 개념에는 북한영역밖의 조선동포를 포함하여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가에 한한다. 이 규정은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활동과 관련한 기관·기업소에 적용되며, 여기서 규율되지 않는 사항은 북한의 「민법」,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의 준용을 받게 된다.

201)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 前揭書, 16면.

## 16. 自由經濟貿易地帶 貨幣流通規定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화폐유통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5장의 지대내의 통화와 금융에 관한 기본원칙 하에 지대안에서의 화폐유통체계와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원리가 결합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대안에서 화폐유통을 원활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 17. 自由經濟貿易地帶 中繼貿易規定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중계무역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국제중계무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중계무역에 관한 질서를 세우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여기서 중계무역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차익을 남기고 수요국에 전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국과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국가를 경유하여 대금결제 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출입국간에 중개·알선하는 간접무역인 중개무역과 차이가 있다.

## 18. 自由經濟貿易地帶 境界通行檢査規定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경계통행검사규정」(이하에서는 '통행검사규정'이라고 함)을 승인하였다. 통행검사규정은 외국인출입규정, 국경검역규정, 지대 세관규정 등과 함께 지대출입에 관한 규정의 하나이다. 이 통행검사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계통행검사질서를 확립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장소적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며, 인적으로는 '지대경계통행자'<sup>202)</sup>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한다는 것은 외국과 자유무역지대 사이의 왕래와 북한의 다른 지역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사이의 왕래를 포함하며, 상용목적의 출입국가

202) 통행검사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가거나 지대에서 나가려는 공화국의 공민과 외국인,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뿐만 아니라 외교관·관광객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육로·해로·항로 등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계를 통과하는 열차·자동차·비행기·배와 지대경계통행자는 지대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제9조).

### 19. 自由經濟貿易地帶 自動車登錄規定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자동차등록규정」을 승인하여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무역지대의 자동차관련 등록 및 기술검사 등에 관하여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를 예방하고 그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자동차이용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자동차에 대한 과세와도 관련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0. 自由經濟貿易地帶 價格規定

북한은 1996년 9월 1일 정무원결정(제46호)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가격규정」을 승인하여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개인·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 및 봉사거래와 관련한 가격제정과 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로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격의 제정과 적용을 위한 법규범으로서 1997년 2월에 「가격법」을 제정하였다.<sup>203)</sup>

### 21. 自由經濟貿易地帶 企業所管理運營規定

북한은 1996년 11월 23일 정무원 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기업소관리운영규정」(이하에서는 '기업소규정'이라고 함)을 승인하였다. 이 기업소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특성에 맞게 기업소의 관리운영체계와 방법을 개선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제1조). 여기서 기업소는 중앙 및 지방소속의 북한 기업소·협동단체를 포함한다(제2조).

203) 「민주조선」, 1997년 3월 1일, 2면.

## 22. 自由經濟貿易地帶 統計規定

북한은 1997년 4월 12일 정무원결정(제19호)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통계규정」을 승인하여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사회경제실태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장악하고 통계자료의 관리 및 이용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통계는 사회경제실태와 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양적으로 반영하며 사회경제적 현상을 인식하고 실천활동을 목적지향성 있게 하는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 23. 自由經濟貿易地帶 家內便宜 奉仕業規定

북한은 1997년 4월 12일 정무원결정(제20호)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가내편의업봉사규정」을 승인하여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특성에 맞게 가내편의 봉사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일반적인 가내편의봉사업은 「사회주의상업법」에 규율되고 있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가내편의봉사업은 이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내편의봉사에는 위생편의·가공편의·수리편의·이용편의 등의 부문을 지칭하지만, 이 규정에서의 가내편의봉사에는 급양봉사, 가공 및 수리수선봉사, 판매 및 수매봉사, 위생편의봉사, 여인숙봉사 등을 포함하며, 간단한 노동도구를 가지고 손노동으로 물건을 만드는 가내수공업, 개인들의 부업생산 등도 편의봉사업규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4. 自由經濟貿易地帶 朝鮮'원'貸付規定

북한은 1997년 4월 12일 정무원결정(제21호)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조선원대부규정」을 승인하여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조선원에 대한 대부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대부는 은행기관이 기관·기업소·단체에 돈을 꾸어주고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들이는 자금유통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규정에서 대부는 일정한기간에 자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수요자에게 조선원을 꾸어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대부사업은 중앙은행의 통일적인 지도밑에서 지대중앙은행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25. 自由經濟貿易地帶 國內投資企業 創設 및 運營規定

북한은 1997년 5월 17일 정무원결정(제23호)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국내투자기업창설및운영규정」을 승인하여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거나 지사·대리점·출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는 지대에 투자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거나 지사·대리점·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 第4節 對外經濟開放法制的特色

### I. 法制整備의 展開

전술하였듯이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하의 민족자립경제원칙에 입각한 북한경제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의 여파로 침체국면에 빠지고 되었으며, 경제난타개는 정권안정과도 직결될 만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이른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제74호)으로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선봉·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여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난타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제들은 1992년 헌법의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보장과 외국과의 합영·합작의 장려를 위한 규정(제16조, 제37조)에 근거하여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위한 기본법으로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외국인기업법」·「합작법」을 제정(1992. 10. 5)한데 이어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1992. 10. 16)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1993년에 들어와서는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정비를 가속화하였다.<sup>204)</sup> 즉,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의 제정(1993. 1. 31), 지하자원법(1993. 4. 8) 및 토지임대법의 제정(1993. 10. 27), 외국인투자은행법(1993. 11. 24),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1993. 11. 29),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1993. 12. 30) 등을 제정하였다.

204) 北韓의 外國人投資關係法에 관한 分析은 權五乘, “北韓의 外國人投資關係法”, 「北韓研究」, 제4권 4호(大陸研究所, 1993 겨울), 99~120면; 李啓滿, “최근의 북한 外國人投資關係法”, 「北韓研究」, 제5권 3호(大陸研究所, 1994 가을), 175~199면.

또한 1994년에는 합병법 전문 개정(1994. 1. 20), 자유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규정·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등의 제정(1994. 2. 21),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1994. 4. 28) 및 자유무역항규정의 제정(1994. 5. 25) 등을 통해 여러 대외경제개방 및 외자유치법률을 마련하였다.<sup>205)</sup> 아울러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후속조치로써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정(1994. 6. 27)을 마련하고, 이어 외화관리법 시행규정(1994. 9. 7)과 토지임대법 시행규정(1994. 12. 28)을 제정하였다.<sup>206)</sup> 이런 가운데 1993년 12월에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확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에서는 ‘나진·선봉시’를 직할시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207)</sup>

이러한 법제정비는 전술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개방법제의 기본법률을 기초로 하여 그 후속법규가 마련됨으로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정비는 1998년 헌법개정에 의해 개정된 경제조항<sup>208)</sup>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 기반도 보다 확대되어 나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II. 對外經濟開放 立法의 特徵

다음에 북한의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개방관련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는 헌법적 근거하에 기본법률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위법의 근거하에 하위법이 이루어지는 법의 단계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92년 헌법은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제16조)하고,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과의 기업합영 및 합작을 장려(제37조)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법제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의 대외경제개

205) 이러한 北韓의 對外開放關聯法律들의 全文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집」(통일원, 1994. 9), 3~220면.

206) 이들 規定에 대한 分析과 全文은 「주간 북한동향」, 제198호(통일원 정보분석실, 1994. 10. 9~15), 43~109면.

207) 이에 관해서는 崔壽永,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統一研究論叢」, 제3권 1호(民族統一研究院, 1994), 63~88면; 「월간 북한동향」, 통권 제158호, 1994년 8월호(통일원, 1994. 9), 25면.

208) 북한의 1998년 헌법개정으로 변화된 경제조항에 관해서는 張明奉, “北韓 社會主義憲法 改正(98. 9. 5)의 背景·內容·評價”, 前掲 論文, 24~44면.

방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는 북한법제의 체계화라는 발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는 경제난타개의 방편으로 대외경제개방의 현실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마련된만큼 북한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실 이 법제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북한이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부분적이거나 인정한 것은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외국인투자법제의 체계를 보면,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운영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 「외국인투자법」을 기본으로 합영·합작기업과 외국기업의 창설·운영방식을 규정한 「합작법」·「합영법」과 「외국기업법」 등을 하위법으로 정하고, 이 법들의 시행세칙(합영법 시행세칙, 외국기업법 시행규정)을 규정하여 구체적 시행조치를 마련하고 있다.<sup>209)</sup>

「외국인투자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법제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외국인 투자를 규율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에 관한 「외국투자은행법」, 외화의 거래 및 반출입에 관한 원칙과 질서를 규정한 「외화관리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의 토지임대 및 이용에 관한 「토지임대법」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사용을 보장하고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등도 외국투자기업의 활동에 관한 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법제에 공히 적용되는 시행세칙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는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형태에 관한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나 남한의 투자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법」이 제5조에서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한 것<sup>210)</sup>과 개정합영법이 제7조에서 투자선을 외국 이외에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고 한 규정(구합영법 제5조)을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고 변경하고 이 경우 세금감면 및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개선과 같은 우대 조치를 둔 것<sup>211)</sup>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체적

209) 이들 北韓의 對外經濟法에 관해서는 鄭東潤, “北韓對外經濟法の 回顧와 展望”, 「北韓法律行政論叢」, 제10집, 前掲書, 275~298면.

210) 이 조항은 합작법 제5조, 외국기업법 제6조, 외화관리법 제10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7조 등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211) 改正 合營法에 관해서는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31호(1994. 1. 1~31)(통일원

으로 마련한 것으로써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진출대상을 확대하여 남한의 기업과 투자자들의 북한투자의 길을 열고 있다.

다섯째, 대외경제개방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대외개방관련법의 하나로서 「대외경제계약법」의 제정(1995. 2. 22)이다. 이 법에 의해 북한에서 대외무역·투자 및 서비스관련 제반 상업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법제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는 북한의 대외경제계약은 외국인투자관계법과 북한민법 등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계약체결의 절차와 방법,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sup>212)</sup>

여섯째,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개방 관련법을 통틀어 보면,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관계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 입법내용에서 국제조약과 국제관례를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대외경제거래에 있어서 상호 평등과 호혜 및 신용의 원칙(「대외경제계약법」 제4조·제5조 등)의 표명은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외경제개방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우선 당사자간의 협의를 중시하고,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재제도를 인정하여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기관중재방법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13)</sup>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에 일반적인 규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일곱째, 북한은 대외경제개방법제를 대외에 바로 공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과거 북한법이 대외에 공표되지 않음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과 사정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관련법제에 관한 일본<sup>214)</sup>과 서방<sup>215)</sup>에서의 소개 내지 연구성과가

---

교류협력국), 15~21면.

212) 신용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前掲文, 20면: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前掲書, 135~136면.

213) 이러한 仲裁制度는 외국인투자법 제22조, 합병법 제98조·제102조, 외국인기업법 제31조 등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대외경제계약법 제42조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北韓의 仲裁制度에 관한 詳論은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上掲書, 134~158면.

214) 예컨대 鄭鐵原,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外國投資法規概說」(東京: 明石書店, 1997); 西尾 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外國人投資關聯法制」(東京: 啓文社, 1997) 등의 단행본과 朴三石, “在日朝鮮人による合併事業の現状と課題(上)”, 「月刊朝鮮資料」, 제30권 5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대외경제개방법제의 본질이 북한에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활로를 열어나간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입장변화는 바로 북한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

(東京：朝鮮問題研究所, 1990)；陳吉相, “改正合營法および同施行細則ついて”, 「月刊朝鮮資料」, 1994년 11월호(東京：朝鮮問題研究所, 1994)；西村峯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改正合營法の研究-中國法との比較-”, 「産大法學」, 第27卷 第4號, 第28卷 第2號(京都産業大學法學會, 1994. 1·7), 各 607~633면, 207~240면；木棚照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對外民事關係法に關する若干の考察”, 「立命館法學」, 第249號(東京：立命館大學法學會, 1996), 1229~1251면 등을 들 수 있다.

- 215) 예컨대 Brendon A. Carr, “Ending the Hermit Kingdom’s Belligent Mendicancy : New Openness, 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Ending North Korea’s Belligent Mendicancy*, Vol. 1, No. 1, pp.1~26 ;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 An Assessment of Recent Laws and Regulation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8(1988), pp.221~241 ; John Merrill, “North Korea’s Halting Efforts Economic Reform,” Lee Chong-Sik and Yoo Se-Hee, ed., *North Korea in Transition*(Institute of East Asi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1) ; Timothy J. Min,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Law : the Foundation for Foreign Economic Relations,”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1호(서울국제법연구원, 1997), pp.53~114 ; Greyson Bryan/Scott Horton/Robin Radin,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1(1997), pp.1677~1718 등을 들 수 있다.





## 第 4 章 北韓의 商事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 第 1 節 社會主義商業法上 用語의 概念

#### ○ 사회주의상업법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9장 96개조문으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북한의 사회주의상업과 관련한 사회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여기서 북한은 상업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남한의 상법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북한주민의 물질적·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자주적·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행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남한의 상법상 상인 또는 상행위에 대한 규율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1조</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법장에서 상품류통사업을 조직하고 상품을 팔고루 공급하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사회주의상업과 관련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 우리 나라 사회주의상업법은 상업경영활동을 강화하여 인민들에 대한 상업의 봉사성을 개선하며 상업부문에서 질서와 규율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p>

#### ○ 사회주의상업

북한은 사회주의상업에 관하여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자본주의 상업의 목적이 소수 착취계급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기만하는 것에 비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상품을 공급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소비상품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상업의 기본형태는 인민들에 대한 소비품의 공급에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사회주의상업법 제1조)이라고 하고, "국가는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상품유통사업을 조직하고 상품을 골고루 공급하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한다"(동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사회주의상업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상품유통사업을 조직하고 상품을 골고루 공급하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사회주의상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업 다시 말하여 인민들이 수요에 맞게 공급해주는 사업이라는데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이 있으며 우월성이 있다. 상업적 형태 : 사회주의사회에서 국영기업소들 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이 서로 팔고 사는 형식을 취하며 상품유통의 형태로 실현되는 것.</p>

### ○ 상품공급제도(주문제)

북한에서 상품공급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주문제는 인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며, 상품의 계획적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상품공급방법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주문제에 의한 상품공급을 위해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기관·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가계획기관은 상품주문서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분배·공급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상품생산·기업소·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상품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사회주의상업법 제3조                  국가는 사회주의상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비품을 계획적으로 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인민적인 상품공급제도인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들의 상품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며 생산된 상품을 확보하여 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p> <p>사회주의상업법 제11조                  상품공급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계획기관은 상품주문서에 따라 상품생산과 분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내려 보내며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사회주의상업에서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상품공급제도를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적 요구에 맞게 잘 세워야 공업과 농업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신속정확히 근로자들에게 계획적으로 골고루 분배할 수 있으며 생산의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다.</p>

○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

북한은 상업의 지도관리체계의 확립과 관련하여서도 이른바 '대안의 사업체계'의 원칙을 그 관리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상업관리가 이루어져야 균중노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옹기 구현하여 상업관리에서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적 요구를 가장 훌륭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상업법은 사회주의상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하여 규정하여(제 9장)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사회주의상업법 제6조                  국가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여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사회주의사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상업검열사업체계 :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국가의 상업정책집행정형과 상업경영활동정형,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상품생산정형을 검열하고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사업체계.</p>

○ 상품공급사업

북한에서 상품공급사업은 공급사업을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사업의 본질적인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된다. 그래서 상품공급사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게 상품을 확보하고 공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상품공급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의 지도하에 도·소매상업기관과 기업소가 담당한다.

관계법조항	사회주의사업법 제9조 상품공급사업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게 상품을 확보하고 공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이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분배공급하여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골고루 제육이 차례지도록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상품공급제 :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으로서의 사회주의사업의 본질에 맞는 상품공급제는 주문제에 기초한 상품공급제이다.

○ 중앙상업지도기관

북한의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품유통과 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주의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북한에서 중앙상업지도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인민봉사위원회 상업부'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자연피해와 특수하게 제기되는 대상에 필요한 상품예비를 조성하고 해당 상업기관·기업소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사회주의사업법 제9조 상품공급사업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게 상품을 확보하고 공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이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분배공급하여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골고루 제육이 차례지도록 한다.
-------	---

<p>관계법조</p>	<p>사회주의상업법 제10조 중상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상품공급에서 도매, 소매 상업기관, 기업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도매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에 맞물리고 상품의 확보와 지역간 교류, 소매상업 기관, 기업소의 상품공급을 담당수행하여야 하며 소매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정확히 인수하여 인민들에게 직접공급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상품류통과 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주의상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기관. 우리나라에서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인민봉사위원회 상업부이다.</p>

○ 도매상업기관

북한에서 도매상업기관 내지 도매상업기업소는 생산으로부터 소매상업에로의 상품운동을 조직하는 상업기업소를 의미하며 도매소 또는 도매기관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도매상업기업소(도매소)의 기본기능은 생산기업소에서 생산된 상품을 확보하여 소매상업기업소에 계약에 따라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매상업기관의 기본은 주문제를 철저하게 실현하는 것이며, 소매상업기관으로부터의 상품주문을 종합정리하여 생산기관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상품을 인수확보하여 소매상업기관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p>관계법조</p>	<p>사회주의상업법 제10조 중상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상품공급에서 도매, 소매 상업기관, 기업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도매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에 맞물리고 상품의 확보와 지역간 교류, 소매상업 기관, 기업소의 상품공급을 담당수행하여야 하며 소매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정확히 인수하여 인민들에게 직접공급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도매상업기업소 - 생산으로부터 소매상업에로의 상품운동을 조직하는 상업기업소. 도매소 또는 도매기관이라고 한다. 도매상업기업소(도매소)의 기본기능은 생산기업소에서 생산된 상품을 확보하여 소매상업기업소에 계약에 따라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p>

○ 소매상업기관

북한에서 소매상업기관은 상품유통단계에서 마지막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직접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기관으로서 예컨대 각종 백화점, 직매점, 상점, 국영간이매점 또는 협동단체 상업기관들과 농민시장을 비롯하여 직접 소비자들과 사고팔기행위를 하는 기관들을 지칭한다. 북한은 소매상업기관들이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10조</p> <p>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상품공급에서 도매, 소매 상업기관, 기업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도매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에 맞물리고 상품의 확보와 지역간 교류, 소매상업 기관, 기업소의 상품공급을 담당수행하여야 하며 소매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정확히 인수하여 인민들에게 직접공급하여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상품유통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한 기관. 직접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상업기관으로서 여기에는 각종 백화점, 직매점, 상점, 국영간이매점 또는 협동단체 상업기관들과 농민시장을 비롯하여 직접 소비자들과 팔고사기행위를 하는 기관들이 속한다.</p>

○ 상품주문서

상품주문서는 상품생산을 계획하고 생산된 상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기초문건이 되며, 주문제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상품주문서는 소매상업기관이 도매상업기관에, 도매상업기관이 생산기관에 제기하는 상품의 구체적인 요구서의 의미를 가지며, 주민들의 수요가 전면적으로 반영된 상품계획서와 같은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다. 즉, 상품주문서는 상품공급계약상 상품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이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주문제원칙을 보장하는 기초자료로서 강조되고 있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11조</p> <p>상품공급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계획기관은 상품주문서에 따라 상품생산과 분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내려 보내며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상품주문서는 상품생산을 조직하고 생산된 상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데서 리용되는 기초문건이며 주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p>

○ 일원화상품공급체계

북한에서 상품의 공급은 일원화상품공급체계에 따라 진행된다. 이 체계에 의해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상품총량을 넘겨받아 상품을 도별로 분배하고 도행정경제기관은 그것을 시·군별로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및 상품생산 기관·기업소·단체는 국가의 상품공급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12조</p> <p>일원화상품공급체계에 따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상품총량을 넘겨받아 상품을 도별로 분배하여야 하며 도행정경제지도기관은 그것을 시(구역), 군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본위로 상품분배단위를 내올 수 없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상품공급제 :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중앙분배상품을, 도행정경제지도기관은 도분배상품을 유일적으로 넘겨받아 공급,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해당상업기관, 기업소는 주민공급용 수산물을 풀고루 공급하며 국가가 정하여 준 소비상품을 생산보장하여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p>

○ 상품공급계약(체결)

상품공급계약은 그 체결과 이행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북한민법상 상품공급계약에 관한 규정(제102조~제108조)에 따른다. 이에 의하면,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공장·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민법상 상품공급계약과 사회주의상업법상 일원화상품

공급체계와의 관계에서 그 한계와 기준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사회주의상업법상 일원화상품공급체계에 의해 중앙에서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계획하고 배정하게 되면, 상품공급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법조항	사회주의상업법 제13조 상업 및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상품공급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상품공급계약체결과 그 리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02~108조에 따른다. 사회주의상업법 제14조 생산된 상품에 대한 인수 및 출하는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해당 도매상업 기관, 기업소가 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소비상품을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상품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값을 물 의무를 지는 계약. 국가의 상품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계획적 계약의 한 형태이다.

○ 신용보증제

북한은 신용보증제에 관하여 판매하는 일용상품 및 수리해주는 가정문화용품이 정한 기간안에 기술적 작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물건을 고쳐주거나 교환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상업부문에서 상업 및 상품생산 기관·기업소·단체가 전기용품·전자제품 등의 일용상품에 대한 신용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편의봉사부문에서는 가정문화용품을 수리봉사하였을 경우에도 신용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신용보증제를 실시하여야 할 품종과 기간은 정무원(내각)이 정하며, 수리봉사에 대한 신용보증제의 실시에 관해서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사회주의상업법 제24조 상업 및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용품, 전자제품 같은 일부 일용상품에 대한 신용보증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하여야 할 상품품종과 기간은 정무원이 정해주어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판매하는 일용상품이나 수리하여 주는 주요 가정문화용품이 제정된 기간안에 기술적 작용이 잘되지 않을 때에 그 물건을 고쳐주거나 바꾸어준다는 것을 담보해주는 제도. 상업법에서는 일부 상업봉사 및 편의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예견하고 있다.



○ 수 매

북한에서 수매는 사회주의국가가 협동단체나 주민들로부터 그들이 생산물 또는 유희물자를 사들이는 상업형태를 말한다. 수매는 국가를 구매자로 하고 협동단체나 근로자들을 판매자로 하여 양자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교환이며, 도시와 농촌, 농업생산과 도시의 소비를 연결시킴으로써 도시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한 형태라고 설명된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30조</p> <p>수매는 도시와 농촌, 농업생산과 도시의 소비를 연결시켜 주민들의 식료품수요를 충족시켜며 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 국가는 수매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 진행하여 농업생산물과 공업원료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사회주의국가가 협동단체나 주민들로부터 그들이 생산물 또는 유희물자를 사들이는 상업형태. 수매는 국가를 구매자로 하고 협동단체나 근로자들을 판매자로 하여 양자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교환이며 도시와 농촌, 농업생산과 도시의 소비를 연결시킴으로써 도시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한 형태이다.</p>

○ 자원성의 원칙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수매기관과 기업소는 수매사업에서 국가와 수매시키는 당사자의 이익을 옹계 결합시키고 자원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여기서 자원성의 원칙은 수매품의 생산자와 구매자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수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수매를 강제하지 않고 수매계약에서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북한민법상 농수산물수매계약의 경우 계획에 기초한 계약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면에서 사회주의상업법상 자원성의 원칙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第4章 北韓의 商事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관계법조항	사회주의상업법 제31조 수매 기관, 기업소는 수매사업에서 국가와 수매시키는 자의 리익을 옹계 결합시키고 자원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자원성 -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바라고 원한데 기초하는 것 또는 그런 특성.

○ 수매의 형식

수매의 형식에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가 있다. 북한에서는 계획수매에 관하여 국가수매계획이 수매기관들뿐 아니라 수매품의 생산자들에게도 시달리며 그 집행에서 의무성을 띤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계획수매에서는 수매계획이 생산계획과 서로 맞물려 해당 수매자들과 생산자들에게 직접 시달리며 수매가격도 국가적으로 제정 시달된다고 한다. 계획수매의 대상에는 알곡, 공예작물, 고기, 과일, 남새(부식물로 먹기 위하여 심어 가꾸는 발작물 예컨대 배추·무우·오이·가지·고추·호박·마늘·파 같은 것을 이르는 말)와 농업부산물들인 벼짚, 강냉이짚, 김승가죽 및 털류 등이 속한다. 더욱이 계획수매는 도시와 농촌사이, 공업과 농업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보장하여 국가가 중요농산물을 계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식료품과 공업원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계획수매와 자유수매의 차이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 수매되는 농산물이나 또는 국가수매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는 농부산물, 축산물을 수매대상을 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관계법조항	사회주의상업법 제32조 수매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로 한다. 수매 기관, 기업소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중앙경제지도기관이 내려보낸 지표별 수매 계획에 따라 농업생산물을 수매하며 주민들로부터 농부산물, 축산물, 약초, 고자재 같은 것을 자유수매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수매형태. 계획수매는 국가수매계획이 수매기관들뿐 아니라 수매품의 생산자들에게도 시달리며 그 집행에서 의무성을 띤다. 계획수매에서는 수매계획이 생산계획과 서로 맞물려 해당 수매자들과 생산자들에게 직접 시달되며 수매가격도 국가적으로 제정시달된다.

○ 자유수매

북한에서 자유수매는 계획수매와 함께 수매의 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자유수매는 협동농장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부수입을 늘이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 대상은 계획수매품종인 양곡, 공예작물, 유지작물, 과실류(사과, 배), 큰 집짐승(소, 돼지) 및 짚제품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부산물과 축산물, 약초, 고자재 등이 해당된다. 자유수매는 시(구역)·군 식료품 수매상점, 시(구역)·군 일반용품수매상점과 같은 전문적인 수매기업소들과 식료품상점, 사회급양망 등 수매기관에 의하여 수매시키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자유수매가 계획수매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계획이 수매기업소에만 미친다는 점, 수매품종에 제한이 없다는 점, 수매가격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 지역적 제한이 없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관계법조항	사회주의상업법 제32조 수매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로 한다. 수매기관, 기업소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중앙경제지도기관이 내려보낸 지표별 수매 계획에 따라 농업생산물을 수매하며 주민들로부터 농부산물, 축산물, 약초, 고자재 같은 것을 자유수매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수매계획을 생산자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진행하는 수매. 공업을 다방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수출품의 품질을 더욱 높이는 데서 자유수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수매계약

북한은 수매계약에 관하여 농축산물과 농토산물,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수매기관이 상대방과 맺는 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수매사업을 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주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 수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북한민법상 농업생산물수매계약(제109조~제116조)에 규정한 내용에 따르면 하고 있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국가수매계약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로서 이 계약에 따라 생산자는 계약대상이 되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수매기관은 그것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지게된다. 다만, 민법상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양곡 등의 농산물만을 수매

第4章 北韓의 商事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대상으로 하지만, 사회주의상업법상 수매대상은 식료품, 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 등으로 농산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36조</p> <p>국영 및 협동농장 공동경리에서 생산한 남새, 조미료, 과일, 축산물 같은 것은 전문식료품수매 기관, 기업소가 수매계획에 따라 해당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통일적으로 수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수매 계약체결과 그 리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09~116조에 따른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농축산물과 농토산물,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수매기관이 상대방과 맺는 계약. 팔고사기계약의 일종으로서 상점과 공민들 사이에 맺어지는 소매계약과 차이가 있다.</p>

○ 사회급양사업

북한은 사회급양사업에 관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확립되고 생산과 상업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사회의 상업적봉사의 한 형태로서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여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는데 복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설명은 「사회주의상업법」에도 그대로 규정되고 있다(제1조, 제4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음식물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사회급양기관은 사회주의상업기관의 하나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음식물에 대한 근로자들이 수요충족과 여성의 가정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봉사하는 기관이 된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41조</p> <p>사회급양사업은 근로자들이 식생활을 개선하며 여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사회급양사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기호와 위생영양학적 요구에 맞는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사회급양사업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확립되고 생산과 상업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사회의 상업적 봉사의 한 형태로서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여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는데 복무한다. 사회급양사업은 생산적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사회급양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음식물들은 그 자리에서 구매자들에 의하여 직접 소비된다.</p>

○ 편의봉사사업

북한은 편의봉사사업에 관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편의봉사망을 잘 꾸리고 봉사업종을 바로 정하는 것은 편의봉사사업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인민들이 편의봉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사회주의상업법 제50조 편의봉사사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편의봉사사업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인민들의 편의 봉사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편의봉사는 인민생활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근로자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물질문화생활전반을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게 꾸려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 편의봉사기관

북한의 편의봉사기관은 근로자들의 문화후생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주의상업기관의 하나이다. 북한은 편의봉사기관을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확립되고 생산과 상업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상업적 봉사의 한 기관이라고 설명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위생편의·가공편의·수리편의·이용편의 등의 편의봉사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주요 가정문화용품 등을 수리봉사하는 데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사회주의상업법 제52조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의 질을 높이며 주요가정문화용품 같은 것의 수리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하여야 할 품종과 기간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정해주어야 한다.
-------	---

第 4 章 北韓의 商事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53조</p> <p>편의봉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시설을 인민들이 편리하게 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며 봉사사업에서 문화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근로자들의 문화후생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주의상업기관. 편의봉사기관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확립되고 생산과 상업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중진시키기 위한 상업적 봉사의 한 기관이다.</p>

○ 상품보관관리사업

북한에서 상품보관관리사업은 상품을 질적·양적으로 검수선별하여 보관하며 상품의 손실을 없애고 품종의 구색을 갖추므로써 주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된다.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상업법」은 국가, 해당 상업기관·기업소·단체, 공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57조</p> <p>상품보관관리사업은 상품을 질량적으로 검수 선별하고 정확히 보관하며 상품의 손실을 없애고 품종구색을 갖추어 인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상업기관, 기업소에서 상품보관 관리에 필요한 창고를 기준대로 갖추고 상품의 특성에 맞게 보관관리를 잘하도록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상품 - 사람들의 노동이 가해짐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물건들자체나 인간의 노동이 들었다고 해도 자기가 직접 소비하기 위하여 생산한 물건들은 상품으로 되지 않는다.</p>

○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

북한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상업의 기본임무는 공급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상업활동의 전과정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야만 원만히

수행될 수 있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상업법」은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는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본성적 요구라고 하고, 국가에게 봉사조직과 방법을 개선하고 상업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보다 문화적이고 편리한 봉사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5조                  국가는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려 상업의 조직과 기술, 봉사방법을 개선하고 상업시설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 나간다.                  사회주의상업법 제65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봉사조직과 방법을 개선하고 봉사성을 높여 상업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보다 문화적이고 편리한 봉사조건을 보장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문화성 : 문화적 요구에 맞는 것 또는 그러한 특성                  봉사성 : 봉사의 성격 또는 봉사하는 성질</p>

○ 봉사구역담당제

북한에서 봉사구역담당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철저히 책임지고 돌보는 입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사회주의상업의 기본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품공급제도의 하나라고 설명된다. 따라서 봉사구역담당제는 공급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상품공급제도인 것이다. 이는 상업봉사망일군들이 직접 주민세대를 맡아서 상업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공급제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제도로서 마련된 것이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68조                  상업기관, 기업소는 봉사구역담당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며 상점매대에 상품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어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상업봉사망일군들이 일정한 봉사구역을 담당하여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상업봉사제도. 봉사구역담당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철저히 책임지고 돌보는 입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사회주의상업의 기본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품공급제도의 하나이다.</p>

○ 上業시설의 現代化, 上業經營의 科學化·합理化

上業시설을 現代化하고 上業經營을 科學化·합理化하는 것은 나라의 上業을 인민대중을 위한 가장 우월한 社會주의上業으로 強化발전시키는 기본요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社會주의上業법」상 商品의 판매로부터 보관·운송·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비와 비품·도구들을 現代化적인 것으로 갖추고 世界적인 上業발전 추체에 맞게 經營활동을 科學적 토대위에서 進行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社會주의上業법은 이를 위해 國家계획기관, 建設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 中央上業지도기관과 上業기관·기업소·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社會주의上業법 제73조 上業시설을 現代化하고 上業經營을 科學化, 합理化하는 것은 나라의 上業을 인민대중을 위한 가장 우월한 社會주의上業으로 強化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國家는  봉사망 건물과 설비, 비품, 도구를 現代化하기 위한 上業을  전망성있게 추진시켜며  上業經營활동을 科學化, 합理化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수단을 보장한다.
북한용례	朝鮮말대전(社會과학출판사, 1992) 上業經營학: 上業관리운영의  구체적인 형태와 방법을 연구하는 經營학의 한 분과

○ 農民市場

북한은 農民市場에 관하여 그 존재의 經濟적 기초가 協동적 소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協동農民들의 個人부업經營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農民市場은 社會주의社會에 있는 上業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資本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上業형태라고 한다. 또한 社會주의社會에서 農民市場은 農民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며 國營上業을 보충하여 商品공급품종을 넓히며 노동자, 事務員들에게 食料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農産물을 공급함으로써 住民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農民市場은 北韓의 經濟난 타개와 關聯하여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北韓의 經濟活動의 현실변화와 關聯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93조</p> <p>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사회주의상업의 보충적 형태인 농민시장을 옹계 관리운영하도록 지도하며 국가검열감독기관은 그 관리운영에 대한 검열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농민시장은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형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은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며 국영상업을 보충하여 상품공급품종을 넓히며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식료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이 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p>

○ 국가가격제정기관

「사회주의상업법」상 국가가격제정기관은 상품, 음식물, 수매품의 값과 편의봉사요금 등을 정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국가검열감독기관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이 국가가 정한 상품값과 요금체계를 준수하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가격법」을 제정하는 등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법조항	<p>사회주의상업법 제92조</p> <p>국가가격제정기관은 상품, 음식물, 수매품의 값과 편의봉사요금 같은 것을 정확히 정하여야 하며 국가검열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가 정한 상품값과 요금 규률을 지키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국가가격 : 국가가 정한 상품가치의 화폐적 표현. 상품생산에 들인 사회적 필요로동의 크기는 상품의 가치로 되며 이러한 상품의 가치를 일반적 등가물인 화폐로 표현한 것이 가격으로 된다. 국가가격은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고 경제활동이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밑에 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의 필수적 요구이다.</p>

○ 상업검열사업체계

북한에서 정무원(내각)은 상업검열사업체계를 세우고 상업부문에 대한 검열사업

을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업검열기관은 상업기관·기업소·단체에서의 국가의 상업정책집행상태와 상업경영활동의 상태, 상품생산기관·기업소·단체의 상품공급상태를 검열하여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계법조항	사회주의상업법 제94조 정무원은 상업검열사업체계를 세우고 상업부문에 대한 검열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검열기관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국가의 상업정책 집행정형과 상업경영활동정형,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상품생산공급정형을 검열하고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국가의 상업정책집행정형과 상업경영활동정형,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상품생산공급정형을 검열하고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사업체계

○ 국가검열감독기관

사회주의상업법상 국가검열감독기관은 상업기관·기업소·단체의 상업활동상태를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상업기관·기업소·단체의 상업활동상태를 감독 통제하며 상품생산 기관·기업소·단체에서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바꿈질 내지 직매처리하였을 때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지 않고 그 금액을 환수하여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사회주의상업법 제95조 국가검열감독기관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업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며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거나 바꿈질, 직매처리하였을 때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여주지 말며 그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검열 - 사업정형을 알아보고 지도통제하는 곳.

## 第2節 保險法上 用語의 概念

### ○ 보험법

북한은 1995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을 제정하였다. 보험법은 5장 47개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북한영역 안에서 보험관계와 보험활동에 관한 통일적 집행과 지도통제를 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다. 북한의 보험법은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보험에 관하여 “자연피해나 불상사고로 인한 손실을 미리 막거나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형성하고 이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국가에 의하여 장악되고 불의의 재난에이한 피해를 빨리 보상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보험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자연재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및 인적 손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과 관련하여 맺어지는 경제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규범의 총체. 보험법은 국가의 보험정책과 보험관계, 보험활동을 법적으로 고착시킨 것으로서 보험기관들사이, 보험기관과 피보험자사이에서 서로 법률행위를 수행하는데서 준칙을 주는 표준으로 된다.

### ○ 국가보험기관

보험계약에 있어 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된다. 북한에서 보험은 국가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보험기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북한에서 국내보험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국제보험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담당한다.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와 북한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 그리고 외국보험기업의 대표부, 지사 및 대리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第 4 章 北韓의 商事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북한은 국가보험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도하며 대외관계에서 국가보험을 대표하는 비상설적인 기관으로 1988년 5월에 이른바 「국가보험위원회」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국가보험위원회는 대외관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의 국가보험기관을 대표하며 국제보험기구를 비롯한 외국 보험기관들과 대외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보험법 제3조</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와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다른나라 보험 기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보험기관을 국가가 직접 조직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그것은 국가보험기관으로 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그것은 주식보험회사로 된다.</p> <p>국가보험위원회 : 우리나라에서 국가보험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며 대외관계에서 국가보험을 대표하는 비상설적인 기관. 1988년 5월에 조직되었다. 국가보험위원회는 전문보험기관과 보험사업과 관련된 정무원위원회, 부의 책임일군들로 구성되었다. 현재 이 위원회에는 재정부, 중앙은행,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철도부, 건설부, 해운부, 육운총국을 비롯한 중앙기관들이 망라되어 있다.</p>

○ 인체보험

북한에서 인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공민이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어린이보험·여객보험·재해보험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보험법 제2조</p> <p>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재해보험 같은 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보험 같은 것이 속한다. 국가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보험의 종류를 늘이며 보험사업이 자원성과 의무성의 원칙에서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보험에 든 사람이 뜻하지 않는 사고나 자연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등이 있다. 인체보험중에서 생명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은 자원보험이며 여객보험은 의무보험이다.</p>

○ 재산보험

재산보험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로서 임의의 재산보험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보험기관과 개별적인 공민이 된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재산보험은 인체보험과의 차이점을 미확정의 보험보상금과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보상금의 영수인이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재산보험의 사명과 역할은 사회주의제도의 성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재산보험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며 주로 협동단체의 재산과 주민들의 개인재산을 보호하며 발생한 손해를 빨리 보상함으로써 생산의 발전과 인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보험법 제2조                  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재해보험 같은 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보험 같은 것이 속한다. 국가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보험의 종류를 늘이며 보험사업이 자원성과 의무성의 원칙에서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자연재해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미리막으며 발생할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맺는 보험. 재산보험이 인체보험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험보상금이 미리 확정될 수 없으며 보험가입자가 일반적으로 보험보상금의 영수자로 된다는데 있다.</p>

○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이다. 북한에서 보험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보험기관이 된다. 이에 국내보험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국제보험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담당하게 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만은 그 예외가 인정되어 외국투자자와 북한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 외국보험기업의 대표부, 지사 및 대리점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투자보험기업이 되고, 피보험자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외국기관·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이 된다.

第4章 北韓의 商事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관계법조항	<p>보험법 제8조</p> <p>보험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이다. 보험자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투자보험 기업이 속하며 피보험자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속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을 한편 당사자로 하고 개별적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상대편 당사자로 하여 맺어진다. 우리 나라에서 보험에 드는 자에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속한다.</p>

○ 보험자

북한에서 보험자는 보험업무를 담당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험기간이 다 된 경우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투자보험기업, 즉 합병·합작·외국인보험기업과 다른 나라 보험기업의 대표부·지사·대리점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북한은 보험자에 관하여 민법의 측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자는 모두 보험자로 될 수 있지만, 보험법의 측면에서는 행위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자금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보험자로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지불의무·보험료반환의무·보험증권교부의무·이익금배당의무 등의 의무를 지게된다.

관계법조항	<p>보험법 제8조</p> <p>보험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이다. 보험자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투자보험 기업이 속하며 피보험자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속한다.</p> <p>보험법 제9조</p> <p>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또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금을 내출 의무를 지며 피보험자는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보험법 제11조</p> <p>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를 만들어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않은 보험계약 표준조건이나 보험료율은 적용할 수 없다.</p> <p>보험법 제12조</p> <p>보험자는 년간업무결산이 끝나면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만들어 국가보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p>
-------	---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보험업무를 담당수행하는 자.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험기간이 다된 경우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닌 자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투자보험기업(합영, 합작, 외국인보험기업과 다른 나라 보험기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이 속한다.</p>
------	---

○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보험이익의 당사자가 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기간이 만료한 경우 보험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지칭한다. 재산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이익의 담당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보상금을 받은 자이다. 북한에서는 국가기관·기업소·협동단체들은 피보험자이며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예컨대 무역회사는 무역화물보험의 피보험자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된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에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 보험손해를 예방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기관에 통지해야 할 의무, 손해보험에 대한 감정사업을 조직하고 손해보상청구서를 보험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b>보험법 제8조</b></p> <p>보험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이다. 보험자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투자보험 기업이 속하며 피보험자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 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속한다.</p> <p><b>보험법 제14조</b></p> <p>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는 경우 보험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p> <p><b>보험법 제15조</b></p> <p>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대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자도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p> <p><b>보험법 제16조</b></p> <p>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대상에 대한 중요자료들을 보험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피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의 피해와 손해를 막기 위한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재산보험사고가 생기면 곧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	---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보험에 드는 자 : 보험기관을 상대로 보험법률관계를 맺는 자. 피보험자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보험에 드는 자에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속한다. 보험에 드는 자는 보험계약에서 약정된대로 정해진 기간에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물 의무를 지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	---

○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사업의 첫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가 보험자가 제시하는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을 검토하고 보험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도 법에 의거하여 직접 보험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의무보험을 제외한 자원적 보험(임의보험)은 국가보험기관과 보험에 가입할 사람과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게 된다. 한편 북한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 북한영역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관, 외국인은 북한 영역에 있는 국가보험기관 또는 외국투자보험기관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 등에 의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북한의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관계법조항	<p>보험법 제17조</p> <p>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사이에 맺는다.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p> <p>보험법 제21조</p> <p>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자에게서 보험료나 보험료지불담보를 받는때부터 생긴다.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생명보험, 어린이보험계약을 맺은자가 정해진 기간에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며 보험료를 다시 물면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진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보험에서 보험자와 보험에 드는 자(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인)들 사이에 맺는 계약.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에 들려고 하는 자가 보험자가 제시하는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을 검토하고 보험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p> <p>보험계약은 법적 자격을 가진자들사이에 맺어졌을 때, 그 내용이 법적 요구에 부합될 때, 법적으로 규정한 형식을 갖추었을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p>



○ 보험보상금

보험보상금은 재산보험에 관해서만 사용하는 용어이며 피해보상금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보상금은 보험대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사고가 보험기관이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할 때에 지불하게 된다. 북한에서 보험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보험대상재산이 자연재해사고 및 화재사고,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포함한다. 아울러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재산의 손실을 덜기 위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재산을 불가피하게 처리한데 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보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관계법조항	보험법 제29조 보험보상은 인체보험에서는 보험금으로, 재산보험에서는 보험보상금으로 보험자가 한다. 보험자는 보험보상을 계약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재산보험에 든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의 재산이 보험사고로 손실을 당하였을 경우에 보험기관이 내주는 돈. 재산보험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며 피해보상금이라고도 한다. 보험기관이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는 돈을 보험보상금이라고 한다.

○ 보험가격

보험가격은 재산보험에서 보험대상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으로서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가격화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가격은 보험에 들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이며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가입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한도를 의미한다. 보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순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와 그와 관련되는 여러 비용을 포함시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기관·기업소·단체와 개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보험가격은 순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보험법 제37조 재산보험가격의 일부를 보험에 든 경우 보험보상금은 보험가격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재산보험에서 보험대상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으로서 보험가입자의 리익을 가격화한 금액. 보험가격은 보험에 들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이며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가입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이다.
------	--

○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대상이 손해를 입을 때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보상금 또는 보험금의 최고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료 계산의 기초로 되는 금액이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가 책임지는 보험금액을 미리 규정하며 그에 기초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계산하여 받게 된다.

관계법조항	보험법 제30조 보험금액은 보험보상금의 최고한계이며 보험료계산의 기초이다. 보험금액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보험보상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금액. 보험금액은 보험대상이 손해를 입을 때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보상금 또는 보험금의 최고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료 계산의 기초로 되는 금액이다.

○ 손해보상청구

북한은 손해보상청구에 관하여 재산적 또는 인신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그 손실에 해당하는 돈을 물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손해보상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와 행위자의 허물외에 손해가 있어야 하며 또한 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북한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재산적인 보상만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보험제도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손해감정문건과 보험증서

를 첨부한 손해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하며, 보험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보험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	보험법 제35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손해감정문건과 보험증서를 첨부한 손해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보험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복합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손해보상청구 - 재산적 또는 인신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그 손실에 해당하는 돈을 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손해보상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와 행위자의 허물외에 손해가 있어야 하며 또한 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재산적인 보상만을 넘두에 두고 있다.

○ 보험보상의 예외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제때에 물지않아 보험효력이 소멸되어 있는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재산관리를 법규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한 데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내주지 않는다. 또한 보험에 든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제때에 보험기관에 알리지 않았거나 그리고 제3자가 일으킨 사고결과를 고착시키지 않았을 때에도 보험보상금을 적게 주거나 전혀주지 않도록 하여 보험보상의 예외를 두고 있다.

관계법조	보험법 제41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을 경우 그로부터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건을 받아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문건을 받지 못한 보험자는 손해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보험법 제42조 전쟁 또는 그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피해나 손해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법 제43조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보험보상을 받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피해나 손해, 자연감모, 부패변질, 녹, 마모 같은 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보험에 든자가 보험료를 제때에 물지않아 보험효력이 소멸되어있는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재산관리를 법규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한데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에 든자나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내주지 않는다. 또한 보험에 든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제때에 보험기관에 알리지 않았거나 그리고 제3자가 일으킨 사고결과를 고착시키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보상금을 적게주거나 전혀 주지 않는다.</p>
------	--

### 第3節 對外民事關係法上 用語의 概念

#### ○ 대외민사관계법

북한은 1995년 9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대외민사관계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북한 최초의 국제사법으로서 이제까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였던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해 체계적인 준거규정을 마련한 대외민사관계의 준거법이다. 이는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입법의 하나이며, 이로써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길을 열게 되었다. 또한 그간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외국과의 경제교류에 의한 인적·물적 교류에 따른 사법상 섭외적 법률관계의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관계법조항	<p>대외민사관계법 제1조</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공고발전 시키는데 이바지한다.</p> <p>대외민사관계법 제2조</p> <p>이 법은 우리 나라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 법인, 공민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규제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우리 나라 법인과 공민, 다른 나라 법인, 공민사이의 재산, 가족관계에 적용할 준거법과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제한 법.</p> <p>대외민사관계법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발전하며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대외민사관계에서는 당사자의 자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평등, 호혜의 원칙을 구현한다.</p>

○ 대외민사관계의 규율의 일반원칙

「대외민사관계법」에 의하면,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자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외민사관계에서의 규율의 일반원칙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대외민사관계법 제5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13조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의 법 또는 국제관례를 적용하여 설정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우리나라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법률제도(법체계) - 법규범들의 부문별연계와 법부문의 전반적인 통일성에 기초한 법의 총체적인 내부구조. 법은 각 분야의 생활을 규제하는 법규범들이 내적인 긴밀한 연계와 통일속에 있으며 자체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p>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섭외적 사법관계에 있어서 섭외적 요소를 수반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나라의 법관계에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준거법이다. 일반적으로 준거법에는 법정지법·본국법·주소지법·소재지법·행위지법·불법행위지법 등이 있다. 여기서 준거법은 각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개별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컨대 특정개인이 행위능력을 가지는가의 여부는 그 개인의 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어느 기준에 의해 본국법을 결정하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또한 거주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거주지가 틀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거주지를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북한 「대외민사관계법」은 제6조~제15조에 규정하고 있다.

第 4 章 北韓의 商事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관계법조	<p>대외민사관계법 제7조</p> <p>둘이상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 가운데서 하나가 우리 나라 국적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li> <li>2.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이 다른 나라의 국적인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들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li> <li>3.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들에 다 거주하고 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li> </ol>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제기된 외국적 요소를 가진 민사법률관계가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정하는 행위. 외국적요소를 가진 민사법률관계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규제할 준거법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p>

○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는 북한의 법인·공민과 외국의 법인·공민이 된다. 따라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 등 북한의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그 준거법결정의 원칙을 보면,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본국법을 적용하며, 개인의 행위능력을 판별하는 준거법과 행위무능력자·부분적 행위능력자의 인증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또한 소재불명자, 사망자 인증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계법조	<p>대외민사관계법 제16조</p> <p>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로는 대외민사관계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의 법인, 공민이 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로는 대외민사관계외 참가하는 공화국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의 법인, 공민이 된다.</p>

○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에 의하면,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준거법은 법인인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북한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17조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서는 법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용하고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본국법을 적용하며 행위능력자, 부분적 행위능력자 인증조건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한 준거법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에 의하면,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국법에 따라 미성인으로 되는 다른 나라 공민이 북한법에 의하여 성인으로 되는 경우 북한영역에서 그가 한 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가족 및 상속 관계와 외국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18조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본국법을 적용한다. 본국법에 따라 미성인으로 되는 다른 나라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성인으로 되는 경우 우리 나라 영역에서 그가 한 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가족, 상속 관계와 다른 나라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용하고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본국법을 적용하며 행위능력자, 부분적 행위능력자 인증조건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점유권·소유권 같은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과 수송중에 있는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해당 수송수단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또는 수송수단이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22조 점유권, 소유권 같은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박,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과 수송중에 있는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해당 수송수단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또는 수송수단이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재산관계와 관련한 준거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점유권, 리용권과 같은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저작권·발명권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북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규정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23조 저작권, 발명권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법에 규정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에 따른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저작권, 발명권과 같은 지적재산과 관련한 권리는 공화국법에 따른다.

○ 재산거래행위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매매·수송·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거래행위에 대한



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나라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거래행위를 한 나라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24조 매매, 수송, 보험 계약을 맺는 것 같은 재산거래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거래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매매, 수송, 보험계약을 맺는 것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나라 법을 적용하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거래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재산관계에 대한 준거법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등 재산관계와 관련한 준거법은 북한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인투자관련 법제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재산관계에서 준거법이 된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27조 우리 나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설립같은 재산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우리나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설립같은 재산관계에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

○ 해난구조계약에 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해난구조계약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면, 영해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 공해에서는 해난구조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 그리고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여러 선박이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받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대외민사관계법 제28조</p> <p>해난구조계약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령해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li> <li>2. 공해에서는 해난구조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li> <li>3.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여러 선박이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받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li> </ol>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해난구조계약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때 령해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을, 공해에서는 해난구조와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 법을,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여러 선박이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받은 선박에 표시한 국기소속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p>

### ○ 해상 공동손해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해상 공동손해에 대한 준거법으로 먼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 법으로 하고, 그 합의한 바가 없으면 해당 항차(航次: 배에서 짐을 부리운 때로부터 다음의 실은 짐을 부리울 때까지의 작업공정)가 끝나는 항구 또는 선박이 처음 도착한 항구가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부담의 당사자가 동일 국적인 경우 해당국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대외민사관계법 제29조</p> <p>해상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법이 없을 경우 해당 항차가 끝나는 항구 또는 선박이 처음 도착한 항구가 속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들이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공동손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법이 없으면 해당 항차가 끝나는 항구 또는 선박이 처음 도착한 항구가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p>

○ 공해상 동일국적선박의 위법행위로 인한 충돌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공해상에서 국적이 같은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이 다른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충돌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32조 공해상에서 국적이 같은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적이 다른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충돌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공해상에서 국적이 같은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에 게양한 국기의 소속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 채권양도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에 의하면, 채권양도에 대한 준거법은 양도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33조 채권양도에 대하여서는 양도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서는 양도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결혼조건 및 방법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결혼조건에 대한 준거법은 결혼당사자 각자의 본국법으로

第 4 章 北韓의 商事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결혼조건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북한법에 의하여 현재 존속되고 있는 결혼관계나 당사자들 사이의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등 결혼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는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35조 결혼조건에 대하여서는 결혼당사자 각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결혼조건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현재 존속되고 있는 결혼관계나 당사자들 사이의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것 같은 결혼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결혼조건에 대하여서는 결혼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 결혼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결혼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부부의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며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36조 결혼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부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며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결혼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부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며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이혼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에 의하면, 이혼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의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혼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이혼당사자들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이혼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다만, 이혼당사자 가운데 한편 당사자가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의 공민인 경우에는 이에 관계없이 북한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37조 이혼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이혼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이혼당사자들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이혼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이혼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이혼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 친부모·친자녀관계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친부모·친자녀관계의 확정에 대한 섭외적 관계에서는 부모의 결혼관계에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 당시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39조 친부모, 친자녀 관계의 확정에 대하여서는 부모의 결혼관계에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 당시 본국법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친부모, 친자녀 관계의 확정에서는 부모의 결혼에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당시 본국법을 적용한다.

○ 입양과 파양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입양과 파양에 대하여서는 양부모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부모가 국적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또한 입양과 관련하여 양자녀로 될 자의 본국법에서 양자녀로 될 자 또는 제3자의 동의나 국가기관의 승인을 입양의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과 파양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입양과 파양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40조 립양과 파양에 대하여서는 양부모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양부모가 국적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립양과 관련하여 양자녀로 될 자의 본국법에서 양자녀로 될 자 또는 제3자의 동의나 국가기관의 승인을 립양의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립양과 파양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립양과 파양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립양과 파양에 대하여서는 양부모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자녀의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한편 당사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공민인 경우에는 북한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41조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자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부모와 자녀가운데서 한편 당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공민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자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 후견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후견에 대하여서는 후견을 받을 자의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후견의 방식은 당사자가 후견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북한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외국 공민에게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북한법에 따라 후견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대외민사관계법 제42조 후견에 대하여서는 후견을 받을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후견의 방식은 당사자가 후견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대외민사관계법 제43조 우리 나라에 거주,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 공민에게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공민에게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법에 따라 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

○ 부양관계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부양관계에 대하여서는 부양을 받을 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양을 받을 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부양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본국법 또는 북한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대외민사관계법 제44조 부양관계에 대하여서는 부양을 받을 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부양을 받을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부양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본국법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부양관계에 대하여서는 부양을 받을 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상속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상속에 관하여 부동산과 동산상속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부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 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공민의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북한 공민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이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대외민사관계법 제45조 부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 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민의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공민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넘겨받는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부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동산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 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공민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넘겨받는다.

○ 유언에 대한 준거법

「대외민사관계법」은 유언과 유언취소에 대하여서는 유언자의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유언과 유언취소의 방식은 북한법, 유언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유언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대외민사관계법 제46조 유언과 유언취소에 대하여서는 유언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유언과 유언취소의 방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 유언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유언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유언과 유언취소에 대하여서는 유언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 대외민사관계에 대한 분쟁해결

북한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은 「대외민사관계법」에서 따로 정한 것이 없을 경우 북한의 해당법규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은 분쟁해결에 관한 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제로 국제적 민사재판, 중재관할, 국제민사소송의 경합, 사법공조, 외국판결·재결의 인정과 집행 등 이른바 국제민사소송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48조 대외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은 이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법에 따른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대외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은 이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법에 따른다.

○ 대외민사관계에 대한 재판 또는 중재의 거부·중지

「대외민사관계법」은 당사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재판의 재판 또는 중재의 거부 내지 중지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첫째로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둘째로 외국에서 동일한 내용의 분쟁에 대하여 재판 또는 중재를 먼저 시작한 경우, 셋째로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중지하는데 합의한 경우, 넷째로 북한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재판 또는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민사관계법 제5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재판 또는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지한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2.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내용의 분쟁에 대하여 재판 또는 중재를 먼저 시작한 경우 3.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중지할데 대하여 합의한 경우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재산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재판 또는 중재관할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外國의 해당기관의 판결·재결의 불인정

대외민사관계에서 북한은 외국 of 해당기관의 판결은 그것을 서로 인정한데 대한 국가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관련한 외국 of 해당기관의 판결집행의 당사자로 되는 북한공민이 그 집행을 요구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내린 판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재결의 내용이 북한 법률체도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판결·재결이 북한 of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경우, 판결·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판결·재결과 관련이 있을 경우, 판결·재결이 북한에서 이미 인정한 제3국의 판결·재결과 동일한 내용인 경우, 판결·재결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사자를 참가시키지 않고 내려진 경우, 북한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 of 해당기관이 내린 판결·재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p>	<p>대외민사관계법 제60조</p> <p>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결, 재결의 내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체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우</li> <li>2.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경우</li> <li>3.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판결, 재결과 관련이 있을 경우</li> <li>4. 판결, 재결이 우리 나라에서 이미 인정한 제3국의 판결, 재결과 동일한 내용인 경우</li> <li>5. 판결, 재결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사자를 참가시키지 않고 내려진 경우</li> <li>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li> </ol>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다른 나라의 해당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집행에 대하여 우리 나라 영역에 있는 당사자가 리해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판결, 재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법이 정한 기간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p>

## 第 4 節 對外經濟契約法上 用語의 概念

### ○ 대외경제계약법

북한은 1995년 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대외경제계약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북한에서 대외무역·투자 및 서비스관련 제반 상업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법제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는 북한의 대외경제계약은 외국인투자관계법과 북한민법 등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계약체결의 절차와 방법,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은 북한기업과 외국기업간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규율하며 계약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북한과 외국과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두었다(제1조).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은 그 지역적 범위에 있어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대외경제거래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규범이다.

관계법조	<p>대외경제계약법 제1조</p> <p>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p> <p>대외경제계약법 제8조</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이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법규에 따른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절차를 전일적으로 규제한 법.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거래가 자본주의시장을 기본대상으로 진행되게 되고 무역거래뿐 아니라 투자 및 자본거래를 통한 다른 나라들과의 상품적 및 생산적 련계가 지난날에 비할바 없이 복잡해진 현실은 대외경제계약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p>

○ 大외경제계약

북한에서는 대외경제계약에 관하여 “대외경제계약을 하도록 승인받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개인과 체결하는 무역·투자·봉사와 관련한 계약” 내지 “서로 다른 나라들에 있거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이에 맺는 경제거래와 관련한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 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투자·봉사와 관련한 계약이 해당된다. 대외경제계약의 내용은 계약종류에 따라 각이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경제계약법 제2조 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계약이 속한다. 제4조 국가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서로 다른 나라들에 있거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이에 맺는 경제거래와 관련한 계약.

○ 大외경제계약 당사자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로는 해당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대외경제계약의 북한측 당사자로는 대외경제거래를 하도록 승인받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은 개인자격으로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인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대외경제거래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업종·지표·수량의 범위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대외경제계약의 외국측 당사자에는 그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법인 또는 외국인은 북한측 당사자와 대외경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경제계약법 제3조 대외경제계약당사자로는 대외경제거래를 하도록 승인받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	---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대외경제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담당한다.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로 되려면 해당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여 대외경제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자격과 재산상독자성, 조직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이 당사자로 나서는 경우에는 조직적 기구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p>
------	--

### ○ 대외경제계약의 감독·통제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정무원(내각) 대외경제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대상에 따라 해당기관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경제계약법은 그 감독·통제의 대상과 해당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관계법조항	<p>대외경제계약법 제7조</p> <p>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한다. 계약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도 감독통제할 수 있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계약대상과 그 값, 계약의 리행, 계약의 양도와 변경 및 취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그 면제, 분쟁해결에서 당사자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와 의무가 규제된다.</p>

### ○ 표준계약서

대외경제계약은 기본적으로 정무원(내각)의 대외경제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표준계약서가 없거나, 계약 당사자들이 표준계약서상 일부내용을 달리 합의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표준계약서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대외경제계약법 제10조</p> <p>계약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른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일부내용을 달리 정하려하거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p>
-------	--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대외경제계약은 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맺어야 한다. 그러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와 표준계약서의 일부내용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p>
------	---

○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대외경제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양측 계약당사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함께 참석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참가하지 않고도 계약의 체결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은 위임 또는 위탁의 방법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다. 또한 대외경제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대외경제계약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데, 인쇄전신 또는 모사전신에 의해 체결한 계약은 서면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대외경제계약법 제12조</p> <p>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들이 참가하여야 한다.</p> <p>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참가없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편 계약당사자가 제기하고 상대방 계약당사자는 승낙하는 방법으로 맺는다.</p> <p>대외경제계약법 제13조</p> <p>계약체결은 서면으로 한다. 인쇄전신 아닌 모사전신으로 맺은 계약도 서면계약으로 인정한다.</p> <p>대외경제계약법 제14조</p> <p>계약은 다음과 같은 때에 효력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한 때</li> <li>2. 계약서에 지정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이루어진 때</li> <li>3.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해당기관이 승인한 때</li> </ol>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나라 또는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사이에 경제거래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를 서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고착하는 행위. 체결된 대외경제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p>

○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서상 정한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가능하다. 일방계약당사자는 타방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일방계약당사자는 타방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그 이해에 대한 거절 또는 계약조건에 맞는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편 자신의 의무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p>대외경제계약법 제19조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계약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상대편 계약당사자는 동의없이 계약내용을 변경시켜 리행할 수 있다.</p> <p>대외경제계약법 제20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리행하는 경우 그 리행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리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시의 계약상 의무리행을 보류할 수 있다.</p> <p>대외경제계약법 제21조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발생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계약의무리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찌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과 내용, 범위를 곧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대외경제계약당사자들이 자기의 계약상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집행하는 행위. 대외경제계약의 체결목적은 그 리행을 통하여 달성된다. 때문에 당사자들은 계약을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리행하여야 한다.</p>

○ 대외경제계약의 양도

이는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의 양도 시에는 그 기간은 계약이행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계약

第4章 北韓의 商事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의 양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양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경제계약법 제26조 계약당사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가 자기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 계약상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 대외경제계약의 변경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내용도 계약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언제든지 그 일부만을 변경, 즉 계약의 수정·삭제·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대외경제계약법 제27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계약내용의 편견에는 수정, 삭제, 보충이 속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체결된 대외경제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 계약내용의 변경은 일부 내용만 할 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수정, 삭제, 보충이 속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내용변경승인도 받아야 한다.

○ 대외경제계약의 취소

「대외경제계약법」은 계약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대외경제계약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소는 기실 남한민법상 해지 또는 해제에 해



당하는 사유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대외경제계약의 취소는 계약위반이나 계약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외경제계약이 취소되어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손해보상, 청산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계약조항은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계약의 취소 또한 계약승인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대외경제계약법 제28조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1. 정한 기일에 계약을 리행할 수 없거나 그 리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당사자가 리유없이 계약의 무리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한 경우 3.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4.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이 리행하지 못한 경우 5.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계약리행기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6. 이밖에 계약에서 정한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p> <p>대외경제계약법 제29조 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어겼거나 리행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p>대외경제계약법 제30조 계약을 승인한 기관은 해당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월 이상 리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대외경제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의사표시권. 취소권의 행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외경제계약의 취소권자에는 해당 계약체결의 당사자와 그것을 승인한 기관이 속한다.</p>

○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대외경제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계약위반에 의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며, 이에 대해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 발생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에는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있다. 더욱이 대외경제계약이 외국측 당사자가 속한 국가와 체결한 조약에서 책임면제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도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관 계 법 조 항	대외경제계약법 제33조 계약을 어긴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손해를 입힌 계약당사자는 보상의무를 진다. 대외경제계약법 제34조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을 화폐 현물, 재산권으로 하거나 가격조절 또는 자체 비용으로 허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하여 당사자들에게 지우는 책임. 계약상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데 따라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화폐·현물·재산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 대금조정 또는 계약위반으로 치유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책임의 형태인 재산의 반환, 원상복구, 손해배상, 위약금이나 연체료 등의 제재금의 지불,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에 비해 특칙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외경제계약상 손해보상청구권은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기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일 대외경제계약에서 손해배상청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경제계약 외국측 당사자의 본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한 조약에 따르며, 해당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북한민법상 민사시효기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북한민법상 민사시효기간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관 또는 공민들 사이에는 1년이며(제260조),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의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위약금·연체료 청구기간은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제261조).

관 계 법 조 항	<p>대외경제계약법 제33조                      계약을 어긴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손해를 입힌 계약당사자는 보상의무를 진다.</p> <p>대외경제계약법 제34조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을 화폐, 현물, 재산권으로 하거나 가격조절 또는 자체비용으로 허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대외경제계약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가 손해를 입힌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손해보상청구권은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안에 행사하여야 한다.</p>

○ 손해보상청구서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보상청구서는 대외경제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가 손해를 입힌 계약당사자에게 해당 손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청구서에는 계약번호와 계약대상, 손해형태의 범위, 보상청구근거, 요구조건같은 것을 밝히고 해당 검증기관의 확인 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손해보상청구서는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관 계 법 조 항	<p>대외경제계약법 제37조                      손해보상을 받으려는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상대방 계약자에게 내야한다.                      손해보상청구서에는 계약서번호와 계약대상, 손해의 형태와 범위, 보상청구근거, 요구조건을 밝히고 해당검사기관의 확인문건 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대외경제계약법 제38조                      손해보상 청구서를 받은 계약당사자는 정한기간내에 손해보상을 청구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 보상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 거절은 보상청구기간 또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났거나 보상청구근거가 명백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허물있는 계약대상을 자의대로 처리한 것 같은 경우에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대외경제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가 손해를 입힌 계약당사자에게 해당 손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 이 손해보상청구서에는 계약번호와 계약대상, 손해형태의 범위, 보상청구근거, 요구조건 같은 것을 밝히고 해당 검증기관의 확인 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p>



##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 第 1 節 外國人投資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 I. 外國人投資法上 用語의 概念

##### ○ 外國人투자법

북한은 1992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에서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하였는데, 이 법은 22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이 평등과 호혜의 원칙하에 외국투자자들이 북한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율로서 국제경제협조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관계법조	<p>외국인투자법 제1조</p> <p>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 관한 정책이다.</p> <p>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 법.</p> <p>외국인투자법은 우선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며 국가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p>

##### ○ 外國人투자기업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하여 어느 한 나라의 령역안에 설립되고 그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투자자의 투자재산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등이 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부문 및 대상에 대한 장려 및 우대제도를 두고 있다.

관계법조항	외국인투자법 제2조 이 법은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하는 일반 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공화국령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어느 한 나라의 령역안에 설립되고 그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투자자의 투자재산으로 이루어진 기업.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있다.

○ 외국인투자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외국투자기관 북한영역 안에 투자하는 외국의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외국투자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북한은 종래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과 '재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구 합영법 제1조·제5조, 동 시행규칙 제2조·제9조)라고 하였었는데,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제5조)고 하여 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를 외국투자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외국투자당사자의 범위를 확대·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법조항	외국인투자법 제2조 외국인투자기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법 제3조 외국인투자자는 공화국령역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 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한나라 령역안에 자본을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우리나라에서는 공화국 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외국투자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합작기업

북한에서 말하는 합작기업이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지분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합작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한 종류이며 북한법인으로 되며, 유한회사형태의 기업으로서 당사자들이 낸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서 증가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p>관계법조항</p>	<p>외국인투자법 제2조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법 제14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합작법 제2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작법시행규정 제8조 합작기업은 당사자들이 투자한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 늘어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법인이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어느 한 나라(본국)의 투자자와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본국측이 생산과 경영을 맡아하며 계약에 외국투자가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 합작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한 종류이며 우리 공화국 법인으로 된다.</p>

○ 합영기업

북한이 말하는 합영기업이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를 좀더 보면, 북한의 합영기업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외 외국의 법인·개인·북한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북한영역 내에 창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유한책임의 법인이라 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형태의 기업이며, 여타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차이점은 기업운영을 공동으로 한다는 면에서 찾을 수 있다.

<p>관계법조항</p>	<p>외국인투자법 제2조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비에 따라 리운을 배분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법 제14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합영법 시행세칙 제8조                      합영은 과학기술부문과 전자, 자동화, 기계제작, 금속, 채취, 동력, 건재, 제약, 화학공업 부문, 건설, 운수, 금융, 관광, 봉사 부문을 비롯한 여러부문에 조직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어느 한 나라(본국)의 투자자와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출자비에 따라 리운을 분배하고 손실을 부담하는 기업. 합영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한 종류이다.</p>

○ 외국인기업

북한에서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기업 또는 외자기업, 외국단독기업이라고도 한다. 북한에서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기업의 한 종류로서 유한회사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이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만 청설·운영된다.

<p>관계법조항</p>	<p>외국인투자법 제2조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법 제14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외국인기업법 제2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가가 자본(재산)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투자기업 또는 외자기업, 외국단독기업이라고도 한다.</p>



○ 자유경제무역지대(‘지대’)

북한에서는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제74호)과 1993년 9월 2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제3115호)에 의해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북한의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하여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으며 상품의 생산 및 가공, 무역, 금융, 봉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사증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이 자유로이 체류·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추세에 따른 북한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북한이 일정한 영역으로서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며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이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인투자법 제3조 외국투자자는 공화국령역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제 이바지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조 외국투자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국가주권이 행사되며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이 진행되는 일정한 지역.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관리,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며 세금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가 적용된다.</p>

○ 합법적 권익보장

북한은 외국투자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 정부에서 비준한 협정에 따라 투자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데, 예를 들면 합영기업에서 기업경영결정권, 자재의 구입과 물자·상품의 판매권, 정부승인하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상주하거나 상업활동에 종사할 권리 등 경제무역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둘째, 투자가의 재산소유권을 승인하고 침해하지 않으며 이윤의 국외송금과 경영비밀에 대한 비공개를 보장한다.

셋째로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나면 제한업이 국외로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외국투자가의 합법적 권익보장을 위해 북한헌법과 세부 법률은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북한헌법도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합법적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외국인투자법 제4조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외국투자은행법 제4조 국가는 공화국영역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가는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과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나라 밖으로 내가거나 우리 나라 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

북한의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투자가의 범위에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남한의 기업 또는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즉,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상 남한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북한이 말하는 '공화국영역'의 범위

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 해석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 남한의 기업과 개인이 포함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이는 남북경협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 등을 통해 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투자를 장려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 계 외 조 항	<p><b>외국인투자법 제5조</b>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p> <p><b>합영법 제7조</b>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p> <p><b>합작법 제5조</b>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할 수 있다.</p> <p><b>외국인기업법 제6조</b>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p> <p><b>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조</b>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p> <p><b>토지임대법 제2조</b>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받아 리용할 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아 리용할 수 있다.</p> <p><b>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6조</b> 이 법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p> <p><b>외화관리법 제10조</b> 이 법은 외화를 리용하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자, 외국인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p>
--------------	--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p>관계 외 조 항</p>	<p>외국투자은행법 제7조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 제4조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도 이 규정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2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공화국투자가로는 우리 나라의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 수 있으며 외국투자가로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우리나라 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가 될 수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동포 : 하나배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라는 뜻으로 &lt;한 나라, 한 민족에 속하는 사람&gt;을 이르는 말.</p>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대상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이 규정은 투자부문에 관한 규정이지만 이 법 이외에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관련법제에서 개별적으로 투자형태 및 투자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p>관계 법 조 항</p>	<p>외국인투자법 제6조 외국투자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자는 과학기술부문과 전자, 자동차, 기계제작, 금속, 채취, 동력, 건재, 제약, 화학공업부문, 건설, 운수, 금융, 관광, 봉사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할 수 있다.</p>

○ 외국인투자의 장려부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특혜

북한은 외국인투자의 대상에서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는 장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정과 관련하여 이 지대의 조속한 투자환경을 위해 도로, 통신, 호텔, 항, 관광지 등 하부구조대상개발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장려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투자장려부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과 은행대부의 우선제공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특혜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물자에 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세의 부과에 관해서도 추가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인투자법 제8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p> <p>외국인투자법 제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을 보장받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li> <li>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 리윤의 14%로 한다.</li> </ol>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7조 경영기간이 10년이상되는 생산부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되는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여 그 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일정한 부문 또는 대상에 대한 외국투자를 국가적으로 장려 및 우대하는 제도.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창설된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이 해당 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을 비롯하여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p>

○ 외국인투자의 금지 또는 제한대상

북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투자대상에서의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러한 제한 대상으로는 북한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거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대상, 경쟁력이 낮아 수출하기 어려운 대상, 생산능력이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대상, 기술 제공없이 국내외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 가공하지 않은 원자재수출, 지대환경기준을 초과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상 등을 지목하고 있다.

관계법조	외국인투자법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과 운영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대상. 합영법규범을 비롯한 외국인투자관계법에 규제되어있다.

○ 외국인투자의 목적물

외국인투자의 투자목적물은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이들 투자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그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관계법조	외국인투자법 제12조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사이에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 '새끼회사'(子會社)의 설립 및 기업연합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 또는 외국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새끼회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지위를 검토해보면, 북한영역 안에 설립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북한의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대표부·출장소는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 또는 외국회사들과 기업연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각자의 경영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생산·가공·판매 등에서 협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외국인투자법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연합할 수도 있다.</p> <p>외국인기업법 제10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3조 외국인기업은 지대 또는 다른 나라에 자기의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두거나 새끼회사를 내올 수 있으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p> <p>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 것을 내오거나 기업을 연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새끼회사 - 대독점자본가의 주식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작은 주식회사인 딸회사와 손자회사를 통털어 이르는 말</p> <p>기업연합 - 카르텔</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카르텔 -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연합체. 카르텔은 시장독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트레스트와 같다. 그러나 카르텔에서는 트레스트에서와는 달리 그를 구성한 기업들이 경영상 독립성을 가진다.</p>

○ 북한내 법인으로의 편입 및 배제

북한은 법인에 관하여 기관·기업소·단체들의 경우에 경제거래를 하려면 민사법률관계의 독자적인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을 가진 기관·기업소·단체를 법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으로 인정되는 요건으로 법이나 규약에 기초한 조직기구를 갖추어야 하고, 재산상의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외국인투자법 제14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법인의 국적 - 국가에 대한 법인의 소속.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의미의 국적은 가지지 않는다. 법인의 국적은 그의 구성원들의 국적과 같지 않다.

○ '로력'채용 및 해고

북한에서 외국투자기업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정무원(내각)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북한주민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주민의 채용과 해고, 즉 노무관리는 해당 노력알선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채용한 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을 통해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에 우선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된다.

관계법조항	외국인투자법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노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한다.
-------	--



<p>관 계 법 조 항</p>	<p>합영법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법 제20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 관련한 로력을 기업소재지의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로력을 해고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다른 나라 기술자, 기능공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받아들이는 제도. 자본주의시장경제와는 달리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에서는 모든 로력이 계획적으로 리용된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외국투자기업이 필요한 로력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공화국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p>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 등 국세와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 등의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북한은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및 그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인투자법 제17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법에 따라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합영법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합작법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외국인기업법 제24조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p>
------------------	---

<p>관계법조항</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46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세금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만 적용하는 특수한 형태의 세금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세금-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얻기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들로부터 그들의 소득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돈</p>

○ 재투자

북한에서 외국인투자가는 이윤이나 배당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영역 안에 재투자를 할 수 있으며, 재투자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투자에 대한 장려조치는 북한에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소득세환급 등 조세지원 정책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확대는 외화의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p>관계법조항</p>	<p>외국인투자법 제18조 외국투자가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합영법 제41조 다른 나라의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투자한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이 리윤, 배당금 등의 소득을 다른 나라로 가져 가지 않고 공화국령역 안에 다시 투자하는 것. 우리 공화국에서는 외국인들의 재투자를 장려한다.</p>

○ ‘국유화’의 배제

북한이 외국인의 북한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하나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한 재산에 대한 국유화 내지 몰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국유화 또는 몰수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정의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으며, 해당하는 보상의 정도 또는 범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관계법조항	외국인투자법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국유화 - 국가의 소유로 만드는 것

○ 국외송금(외화송금)

북한에서 외화를 송금하는 방법에는 송금환자와 시좌돈자리에 의한 지출의 두 가지가 있다. 또한 송금에는 보통송금·전신송금·보통시좌돈자리불입·전신시좌돈자리불입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송금환자는 영수인(채권자)이 ‘송금행표’(수표) 또는 ‘전보송달지구지불은행’(북한에서는 ‘피기발은행’이라고도 함)에 제시하여 지불받는 것을 말하며, 시좌돈자리불입은 지불받은 것이 아니라 영수인의 예금돈자리(구좌)에 입금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외국인투자법 제20조 외국투자자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합영법 제4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 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합영법 시행세칙 제79조 합영기업의 수출입물자에는 관세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관세를 적용한다.
-------	---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p>관 계 법 조 항</p>	<p>합영법 시행세칙 제80조 합영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과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p> <p>합영법 시행세칙 제81조 합영기업은 출자 몫으로 들어오는 현물재산을 대외상품검사기관(기술을 과학기술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영기업은 현물재산 또는 기술을 검사 및 확인하는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p> <p>합작법 제15조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 기타 소득은 공화국의 외환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p> <p>외국인기업법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공화국의 외환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4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정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 소득 및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의 외환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p> <p>외화관리법 제16조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우리 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p> <p>외화관리법 제27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p> <p>외화관리법 제28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지불인(채무자)이 외화를 멀리 떨어져 있는 명수인(채권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내는 행위.</p>

○ 경영비밀의 법적 보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의없는 공개는 금지된다.

관계법조항	외국인투자법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경영 -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 분쟁해결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를 보면,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해결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제3국의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3국의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투자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합영법」의 경우는 제3국의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을 인정하고 있지만,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계법조항	외국인투자법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합영법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합작법 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외국인기업법 제31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	---

第5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p>관계법조</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9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합작법 시행규정 제132조 합작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분쟁 -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크리진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것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분쟁사건 - 국가계획수행과정이나 또는 민사상 권익과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사이의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여 제기된 사건. 우리나라에서 분쟁사건에는 민사상 권익과 관련하여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법적 확인을 요구하여 제기되는 확인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들과 중재사건들이 포함된다.</p>

II. 合營法上 用語의 概念

○ 合營법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외국인투자법제를 처음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합영법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현실과 괴리됨으로써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2년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합영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1984년 「합영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어 1995년 7월 13일 정무원결정으로 합영법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1994년 합영법은 5개장 74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이 법이 북한과 세계 여러 나라들간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합영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합영법 시행규정 제1조 이 규정은 &l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gt;에 따라 합영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령역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질서를 규제한 법. 공화국 합영법을 채택하는 목적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데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합영법 - 자기나라의 법인과 다른 나라 법인 또는 자연인 사이에 공동으로 회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한 법</p>

○ 합영기업의 창설 및 운영원칙

합영기업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의 법인·개인·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북한영역 내에 창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유한책임의 기업으로 정의된다. 북한은 합영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북한과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의 확대발전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합영기업의 보호 및 활동에 있어서 북한의 법규범과 규정의 준수, 합영당사자의 재산과 기업운영에서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합영회사는 합영법제와 함께 당사자간의 계약, 회사규약, 이사회결정에 따라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합영법 제2조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령역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합영법 시행규정 제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는 공화국령역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p>
------------------	--

<p>관 계 법 조 항</p>	<p>합영법 시행규정 제5조 합영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대의경제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시행정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합영기업과 관련한 사업을 장악지도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화국령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합영기업 - 합영하여 운영하는 기업</p>

○ 합영부문

북한에서의 합영대상은 「합영법」에서는 과학기술·공업·건설·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이라고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시행규정에서는 전자·자동화기계제작·건설·화학공업·경공업·금속 및 채취공업·농업·수산업·건설·운수·관광업 등의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합영법에서는 합영대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된다는 외국인투자법의 일반규정(제1조)에 해당되며, 또한 북한의 환경오염, 사람과 동식물·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의 창설은 제한된다.

<p>관 계 법 조 항</p>	<p>합영법 제3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과학기술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합영법 시행규정 제3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며 기업채무에 대하여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을 진다.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범위안에서만 책임을 진다.</p>
------------------	--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을 도입한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대상 등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	---

○ 합영당사자

합영의 북한측 당사자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이며, 외국측 당사자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다. 이에 의하면,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만 합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공민 즉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은 합영의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합영의 외국측 당사자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관계법조항	합영법 제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안에서만 책임진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영당사자들은 자기가 출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기업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합영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활동

북한에서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의 기업으로서 당사자들이 낸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서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하며 자기 재산의 소유범위 안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합영당사자들은 자기가 출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기업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관계법조항	합영법 제5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합영법 시행규정 제6조 합영기업의 모든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형태의 기업으로서 당사자들이 낸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서 증가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며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안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소유권 -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직접 자기의사에 기초하여 물건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p>
------	---

### ○ 합영기업의 창설절차

합영기업을 창설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의 수용(합영계약서 초안작성), 합영계약의 체결(대외경제계약법의 적용), 합영기업의 창설신청(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시행정경제위원회에 제출), 심사승인(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 합영기업의 등록(기업소 소재지의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에 기업·세무·세관등록)의 순서에 의해 합영기업을 창설하게 된다.

관계법조항	<p>합영법 제9조</p> <p>합영을 하려는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p> <p>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합영하려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p>

### ○ 합영기업에 대한 출자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 즉 출자지분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출자지분은 회사의 경영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출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외국인의

출자지분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와 이사회 결정,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은 다음 제3자에게 양도(판매·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한편 출자의 목적물에 관하여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재산권(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등), 기술비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에 비해 토지이용권을 추가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합영법 제1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것의 값은 해당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p> <p>합영법 제12조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상속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p> <p>합영법 제14조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합영법 시행규정 제39조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출자하는 재산의 값은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불당일에 무역은행이 발표한 환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출자하는 당시 출자재산의 가격이 합영계약 또는 기본규약에 정한 출자의무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자자가 그 차액만큼 더 부충하여 출자하여야 한다.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비결의 출자총액은 총 출자액의 2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합영법 시행규정 제41조 합영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출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정한 출자기간을 끝나기 1개월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출자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출자금액, 출자기간, 연장기간, 연장근거를 밝히고 상대방합영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기간은 여러번 연장할 수 있으나 총 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이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p>

○ ‘리사회’

합영기업에는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 기관이며,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2명을 둔다. 부이사장과 이사의 수는 합영 당사자들이 기본규약으로 정하게 된다. 북한의 합영회사의 이사회는 남한의 상법상 이사회의 성격과 다르다. 남한에서 이사회는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지만, 북한의 합영법상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결국 합영법상 이사회는 그 권한면에서 보면 남한 상법상 주주총회의 기능과 유사한 면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사회를 사원총회라고도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합영법 제16조 합영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p> <p>합영법 제17조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기본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p> <p>합영법 시행규정 제43조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p> <p>합영법 시행규정 제44조 합영기업은 출자자들이 출자를 끝냈을 경우 리사회에서 평가한 다음 출자확인문건을 무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며 출자자에게 출자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출자증서에는 출자자의 이름, 출자몫, 출자금액, 존속기간, 기업등록 날짜와 번호를 밝혀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 동사회 또는 사원총회라고도 한다. 리사회는 기본규약의 수정보충, 기업의 발전대책, 결산과 분배, 기업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검열원, 재정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 등록자본의 증가 등 기업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를 토의결정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리사회 - 리사들을 성원으로 하는 최고결의 기관</p>

○ 합영회사의 경영관리기구 및 운영

합영기업에는 경영관리기구를 두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부기요원, 필요한 관리요원에 의해 구성된다. 규모가 큰 합영기업은 기업의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같은 성원들로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영기업의 경영대표권은 기업책임자가 행사하며, 기업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이상 공석일 경우에는 대리위임을 받은 부책임자가 행사하게 된다. 경영대표권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합영기업의 대표자는 기본규약, 이사회에 결정에 의거하여 기업을 관리 운영하며 경영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관계법조항	<p>합영법 제18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합영법 제20조 합영기업은 기본 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책임자는 자기 사업에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합영기업은 기본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p>

○ 합영기업의 재정검열원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는데, 재정검열원에 관한 사항은 합영계약서, 합영기업의 기본규약, 합영기업등록신청서 등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는 점에서 임의기관의 성격을 지니며 이사회에 의해 재정검열원의 배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합영기업의 경영규모에 따라 규모가 작은 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두고, 규모가 큰 기업에는 재정검열원으로 구성되는 재정검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합영법 제19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p>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재정검열 -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화폐자금리용정형을 검열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검열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경영규모가 작은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경영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 영업허가증서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가 있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합영기업창설증인서에 밝힌 조업예정날자 안에 발급받아야 하며, 이 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무원(내각)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는 준공검사합격, 시제품생산(생산기업인 경우), 설비 및 시설구비·물자구입등 영업준비완료(봉사부문),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완료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관계법조항	합영법 제22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영기업은 해당 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 ○ 합영기업의 경영활동

합영기업은 「합영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고, 기본규약·이사회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합영기업은 허가받은 업종의 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며, 기업의 업종은 합영기업창설 심사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p>관계법조항</p>	<p>합영법 제2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영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영안에서 팔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 판매 계획을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p> <p>합영법 제2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물자에 대하여서는 반출입승인만을 받는다.</p> <p>합영법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영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팔수 있으며 그것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p>

○ ‘로동법’

북한은 1978년 4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서의 토의를 거쳐 같은 달 18일에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사회주의로동법」을 채택하였다. 이 노동법은 8개장 79개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1960년 이후 북한의 노동관계법령들을 종합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 노동법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그에 기초하여 마련된 사회주의적 노동관계와 노동질서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합영법 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로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로동규정에 따라 로력을 관리 하며 리용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로동법 -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규제하는 법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근로자들의 사회적 로동과정에서 맺어지는 사회관계(로동관계)를 규제하는 법부문. 공화국로동법은 포로레타리아독재실현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공화국의 유일적인 사회주의법체계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룬다.</p>

○ 外國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

합영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노력(종업원)을 북한의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노동법규범에 따라 채용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외에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채용 및 이용과 관련한 노동법규범으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합영법 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 하며 리용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기업과 종업원들이 준수집행하여야 할 노동시간과 휴식제도, 공화국의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 합영기업의 재정부기계산

합영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의거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부기계산규범이란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 및 그 세칙을 지칭한다. 합영기업은 부기종합계산장부, 부기분석계산장부, 필요한 보조장부,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와 같은 재정부기문건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경영계산은 조선원 또는 외화로도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합영법 제30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영기업의 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우리 공화국의 재산부기계산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직업동맹조직(단체)

북한에서 직업동맹조직은 1945년 북조선직업총동맹을 모체로 한 근로자단체이다. 직업동맹조직은 그 조직과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임금표를 작성하여 단축된 노동일이 적용되어야 할 직종들을 확정하며 안전시설과 노동감독대책을 강구하고 사회보험제 실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들을 작성하는 등의 권한과 임무를 띠고 있다. 더욱이 노동자·사무원들의 집단을 대표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하며 제기된 노동문제들을 심의 해결하는 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p>합영법 제31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p> <p>외국인기업법 제21조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을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로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로동조건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실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8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은 직업동맹조직안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9조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로동규률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li> <li>2.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과 과학지식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li> <li>3. 외국인기업과 로동조직, 로동보수, 로동보호와 관련한 단체계약을 맺고 그 실행을 감독한다.</li> <li>4. 외국인기업과 종업원들사이에 발생하는 로동분쟁을 조정한다.</li> <li>5. 종업원들의 권리, 이익과 관련한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조언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 한다.</li> </ol>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60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직업동맹대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61조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사업조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p>
------------------	---

<p>관계법조항</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62조                  외국인기업은 월마다 직업동맹조직에 다음과 같은 기준의 활동자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1. 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의 2%에 해당하는 자금                  2. 종업원 500명이상부터 10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의 1.5%에 해당하는 자금                  3. 종업원 1000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로임의 1%에 해당하는 자금</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업동맹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직업동맹 - 노동계급에 대중적인 정치조직</p>

○ 합영기업의 결산

합영기업의 결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이다. 연간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연료 및 동력비·노력비·감가상각금·물자구입경비·기업관리비·보험료·판매비 등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제하고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합영법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간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합영법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비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결산 - 일정한 기간의 경리활동정형을 총화하는 것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영기업의 결산내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가와 그밖의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p>

○ 합영기업의 예비기금

합영기업은 매년 결산이익의 5%를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예비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기금의 용도는 제한되어 있으며,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 데에만 쓰이도록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합영법 제35조</p> <p>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이익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p>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 수 있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47조</p> <p>외국인기업은 결산이익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과 종업원들을 위한 상급기금 및 문화후생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놓아야 한다.</p> <p>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익의 5%씩 적립한다. 적립된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데만 쓸 수 있다.</p> <p>예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는 외국인기업이 자체로 정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합영기업은 해마다 결산이익가운데서 정해진 기금만큼 예비기금을 정립하여야 하며 그것을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써야 한다.</p>

○ 합영기업의 기타 기금

합영기업은 예비기금 이외에 결산이익의 10%까지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는 데, 그 기금의 종류에는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급(상여)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등이 있으며,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합영법 제36조</p> <p>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급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p> <p>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 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p>
-----------	--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관 계 법 조 항	<p>합영법 시행규정 제87조 합영기업은 기관, 기업소에 원료, 자재, 부문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가공계약을 맺어야 한다.</p> <p>합영법 시행규정 제88조 합영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의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노동법규범에 따라 채용하거나 리용하여야 한다.</p> <p>합영법 시행규정 제90조 합영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기금 - 일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쓰기 위한 기초로 되는 자금</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영기업은 해마다 결산리운가운데서 정해진 기금만큼 예비기금을 정립하여야 하며 그것을 결산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써야 한다. 이밖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한다.</p>

○ 합영기업의 해산 및 존속기간

합영기업은 재판소가 기업파산선고, 기업의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의무의 불이행 내지 지불능력의 부재로 인한 기업존속의 불가능,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업활동불능, 이사회에 의한 기업해산결정, 기업창설승인 또는 기업등록취소의 경우에 해산된다.

여기서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해산은 존속기간의 경고에 의한 당연해산사유이므로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중요하다.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해지고 그 기산일은 합영기업등록일이 된다.

관 계 법 조 항	<p>합영법 제4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 해산한다.</p> <p>합영법 제44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리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에 기업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p>
-----------	---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병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에서 나서는 합병기업의 해산, 존속기간의 연장절차와 분쟁사건에 대한 심의해결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기본규약의 수정보충, 출자분의 양도, 업종 및 등록자본의 변동, 존속기간의 연장, 기업해산에 대한 문제는 참가한 리사들의 전원찬성으로 결정하며 그밖의 문제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p>
-------------	---

○ 합병기업의 로력

합병기업의 노력은 북한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 따라 관리·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병기업의 종업원은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합병계약에 따라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합병기업의 노력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합영법 시행규정 제90조                  합병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다.</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의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수를 자체로 정하고 지대당국의 로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병기업의 종업원은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p>

○ 청산인(청산위원회)

청산위원회는 기업해산의 승인후 15일 안에 조직되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합병기업의 책임자, 채권자대표, 부기검증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대표가 포함되어 그 성원을 이루게 된다. 합병기업이 정해진 기간안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재판소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재판소가 파산선고를 하거나 기업창설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되었을 경

우에는 재판소 또는 기업창설기관이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으로는 채권자회 소집 및 대표선출, 청산기업의 재산관할, 채권채무관계확정 및 재산목록작성, 기업재산평가 및 청산안 작성, 거래은행·세무기관·기업등록기관에 대한 해산통지, 미해결된 해당업무 처리, 청산관련업무처리 등을 들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p><b>합영법 제44조</b>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리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에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p> <p><b>합작법 시행규정 제115조</b> 합작당사자들은 합작기업의 해산이 승인된 다음날부터 15일안에 공동협의회를 열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성원에는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 부기검증원, 합작당사자 또는 재정검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p> <p><b>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0조</b> 청산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기업의 책임자 2. 채권자의 대표 3. 심사승인기관의 대표 4. 부기검증원 5. 변호사</p> <p><b>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1조</b>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한다. 2.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할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5. 청산안을 작성한다. 6. 세금을 바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다. 7.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p> <p><b>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4조</b>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체로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심사승인기관에 낸다음 지대당국에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바치고 기업 및 세무취소등록수속을 하며 해당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p>
--------------	---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10일안에 채권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하며 기업해산을 공시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청구서를 청산위원회에 내며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서를 받은 순서대로 채권을 등록하며 청산안을 작성한 다음 해산리윤에 따라 리사회 혹은 재판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청산한다.</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p> <p>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10일안에 채권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하며 기업해산을 공시하여야 한다.</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청산인 - 법인이거나 그밖의 단체가 해산될 때 재산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맡아 수행하는 자. 청산인은 법인(회사 또는 외국인기업)을 대표한다. 청산인은 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청산사업을 공평하게 처리할 의무를 진다.</p>
-------------	---

○ 합병기업의 신소청원

합병기업은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의 직원에 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직원이 소속된 상급기관에 신소·청원할 수 있으며,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에 해당사안을 심의·처리해야할 의무를 진다.

<p>관계법조항</p>	<p>합영법 제46조</p> <p>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일군의 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p> <p>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80조</p> <p>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당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신소 -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시켜줄데 대하여 당 및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에 제기하는 인민들의 요구</p> <p>청원 - 원조하여 주기를 청하는 것</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 합영기업의 분쟁해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의 방법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의 절차와 방법은 합영법을 비롯한 외국인투자법제에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p>관계법 조항</p>	<p>합영법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합영법 시행규정 제98조 합영기업의 출자증서, 연간결산보고문건, 청산보고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합영법 시행규정 제99조 합영기업의 재정부기문건은 보존년한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분쟁사건 - 국가계획수행과정이나 또는 민사상 권익과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사이의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여 제기된 사건. 계획 및 계약규률위반과 관련하여 경제기관과 기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사건은 중재절차로 취급되며 민사상 권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사건은 민사소송절차로 취급된다.</p>

○ 경영관리기구(합영주관기관)(합영공업총국)

북한의 합영기업에는 경영관리기구를 두되, 이 기구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필요한 부서가 포함된다. 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기업책임자, 부책임자, 재정책임자 등의 성원들로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기구의 운영은 기업책임자가 경영대표권을 행사하며 기업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이상 자리



를 비웠을 경우에는 대리위임을 받은 부책임자가 행사한다. 경영대표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합병기업의 책임자는 기업의 기본규약, 이사회결정에 따라 기업을 관리운영하며 경영활동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을 진다. 또한 책임자는 이사회성원이 아닌 자도 될 수 있으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는 제약이 따른다.

관계법조항	합병법 시행규정 제58조 합병기업에는 경영관리기구를 둔다. 경영관리기구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 필요한 관리성원이 포함된다.
북한용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경영관리기구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필요한 부서가 포괄된다.

○ 합병계약서

합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해서는 합병법 시행규정(제15조)에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합병계약서에는 기업의 명칭·소재지, 계약당사자들의 이름·소재지, 기업의 조직목적과 업종·경영범위와 규모·존속기간, 총투자액·등록자본·출자몫과 출자액·출자명세·출자기간·출자몫의 양도, 이사회조직과 운영, 경영관리기구의 정원과 직능·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로력관리, 직업동맹조직, 생산물의 처리·설비·원료·자재의 구입·기술이전, 재정부기 및 외화이용, 결산과 이윤분배·기금의 조성 및 이용, 해산과 청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분쟁해결, 계약내용의 수정·보충 및 취소·보험·불가항력적인 사유·준거법, 계약의 효력, 이밖에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합병법 시행규정 제13조 합병기업은 창설하려는 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병계약서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	--

관계법조항	<p>합영법 시행규정 제15조</p> <p>합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명칭, 소재지</li> <li>2.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li> <li>3. 기업의 조직목적과 업종, 경영범위와 규모, 존속기간</li> <li>4.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액과 출자액, 출자명세, 출자기간, 출자액의 양도</li> <li>5. 리사회의 조직과 운영</li> <li>6. 경영관리기구의 정원과 직능,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로력관리</li> <li>7. 직업동맹조직</li> <li>8. 생산물의 처리, 설비, 원료, 자재의 구입, 기술이전</li> <li>9. 재정부기 및 외화리용</li> <li>10. 결산과 리윤분배, 기금의 조성 및 리용</li> <li>11. 해산과 청산</li> <li>12.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 분쟁해결</li> <li>13.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및 취소, 보험, 불가항력적인 사유, 준거법</li> <li>14. 계약의 효력</li> <li>15. 이밖에 필요한 내용</li> </ol>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합영기업의 창설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규정한 계약서. 우리 나라에서 합영계약의 당사자로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및 개인, 공화국령력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가 될 수 있다.</p>

### ○ 회사의 기본규약

합영기업의 규약은 기업의 목표, 조직기구, 경영관리방법과 기본제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규약제정은 공화국의 관계법과 규정, 합영기업의 계약에 근거하여 그리고 합영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약의 내용에 관하여 합영법 시행규정(제16조)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합영법 시행규정 제14조</p> <p>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합영기업의 기본규약과 경제기술 타산서를 만들어야 한다.</p>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의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p> <p>합영기업의 기본규약은 기업의 목표, 조직기구, 경영관리방법과 기본제도를 규정한다.</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회사의 기본규약(정관)과 회사에 관한 관습과 규범도 회사법의 개념에 속한다.</p>

○ 합영기업창설신청서

북한에서는 합영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시행정경제위원회(기업창설 심의승인기관)에 합영기업창설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창설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투자대상과 규모에 따라 구분하면 될 것이다. 창설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합영법 시행규정(제19조)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합영법 시행규정 제19조                  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합영기업창설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합영기업창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합영기업의 기본규약, 합영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 합영당사자의 거래은행신용확인자료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명칭, 소재지</li> <li>2. 합영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li> <li>3. 창설목적 및 유익성</li> <li>4. 출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 및 투자의 단계와 기간</li> <li>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li> <li>6. 업종, 경영범위</li> <li>7. 생산능력과 생산제품의 수출비율</li> <li>8. 부지면적과 위치</li> <li>9. 연간 예정 리윤과 분배</li> <li>10. 관리기구정원 및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li> <li>11. 이밖에 필요한 내용</li> </ol>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영하려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회사설립등록은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으로 진행된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록을 함으로써 설립된다.</p>

○ 영업허가증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합영기업창설승인서에 밝힌 조업예정날짜 안에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부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허가증이 발급요건은 합영법 시행규정(제66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합영법 시행규정 제21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서의 내용을 밝힌 합의의뢰서를 관계기관에 보내어 합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기관과는 총투자액과 현물투자, 생산 및 생산물처리, 소요조건, 단계별수익성 타산자료 2. 재정기관과는 총투자액, 현물 및 현금투자액, 자금원천, 단계별 수익성 타산자료 3. 과학기술행정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 투자의 기술분석자료 4. 건설감독기관 및 국토관리기관과는 건설 및 토지와 관련한 자료 5. 환경보호기관과는 환경보호와 관련한 자료 합영법 시행규정 제2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영업-상인의 기업활동 또는 기업조직체. 브르쵸야상법상 용어이다. 영업을 활동상 면에서 보면 상인들이 리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종류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하는 것이며 조직상 면에서 보면 재산적 리익을 얻기 위하여 형성된 조직체를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영업허가-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허가를 하여주는 것</p>

### ○ 기업등록증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창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기업소 소재지의 도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신청설 작성하여야 하며, 기업을 등록한 다음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자가 합영기업의 창설일로써 이날부터 합영기업은 북한이 법인이 된다.

관계법조항	합영법 시행규정 제26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을 등록한 다음 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자가 합영기업의 창설일로 되며 이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북한용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지대당국의 해당부서는 기업등록신청서에 기초하여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한다.

○ 세무등록증

북한은 세무등록증에 관하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세무등록을 인정하는 증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무등록증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총투자액, 등록자본, 등록번호, 등록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같은 것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세무등록증은 세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합영법 시행규정 제28조 세무기관은 세무등록을 한 다음 세무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세무등록을 인정하는 증서. 세무등록증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총투자액, 등록자본, 등록번호, 등록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같은 것을 밝힌다.

○ 무역은행

북한에서 무역은행은 외국과 진행되는 회계거래를 맡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무역은행의 사명은 나라에 수입되는 외화를 관리하며 대외무역과 대외사업에 필요한 외화를 국가계획과 제정된 절차에 따라 공급하고 그 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국제금융활동을 통하여 나라의 외화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된다. 북한은 무역은행이 국내무역기관들의 수출입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그 이용을 통제하여 일상적으로 외화수입과 지출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44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조선원돈자리와 외국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외화 거래와 결제는 거래은행에 있는 자기돈자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었을 경우에는 분기마다 수불정형과 거래은행의 계시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외화관리법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맡아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다른 나라와 진행되는 회폐거래를 맡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 사회주의사회에서 무역은행의 사명은 나라에 수입되는 외화를 관리하며 대외무역과 대외사업에 필요한 외화를 국가계획과 제정된 절차에 따라 공급하고 그 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국제금융활동을 통하여 나라의 외화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있다.</p>

○ 현물출자

합영기업에 출자되는 토지를 제외한 현물재산은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이고 불가분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북한영역 안에 없거나 북한영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질적·양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출자하는 현물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아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의 외국측 당사자가 현물재산을 출자하여 북한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현물재산에 대해서는 대외상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및 확인을 받고 해당 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합영법 시행규정 제33조                  현물재산(토지는 제외)의 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이고 불가분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공화국령역안에서 생산하더라도 질적 및 양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                  출자하는 현물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돈이 아니라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회사에 내는 행위. 금전출자에 대치되는 용어이다. 출자되는 현물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라야 한다.</p>

○ 재정검열원·재정검열위원회

경영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재정검열원을 두고, 경영규모가 큰 경우에는 재정검열원으로 구성되는 재정검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 또는 재정검열위원회는 합병기업의 경영활동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제출하는 재정부기문건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검열원은 이사회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자기업무를 태만하여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합병법 시행규정 제61조 경영규모가 작은 합병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두며 경영규모가 큰 합병기업에는 재정검열원들로 구성되는 재정검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의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경리활동을 자체로 검열하고 통제하는 비상설기관. 재정검열위원회는 종업원 10명이상 되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조직한다.

○ 합병기업의 경영활동

합병기업은 합병법에 정한 바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고, 기본규약·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합병기업은 허가받은 업종의 범위내에서만 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그 업종은 합병기업창설의 심사승인을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관계법조항	합병법 시행규정 제71조 합병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업종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종변경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업종변경 내용과 근거를 밝히고 경제기술 타산서와 이사회에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법 시행규정 제73조 합병기업은 업종변경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기업등록기관에 업종변경승인통지서를 내어 업종변경등록을 하고 기업등록증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허가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영기업은 리사회와 경영관리기구, 직장 및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합영기업은 상품의 생산과 수출입권, 국내판매구매권, 위탁가공권을 가지고 자체로 채산을 맞추면서 경영활동을 한다.
------	---

○ 공업소유권

북한에서 공업소유권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지적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정의된다. 공업소유권에는 발명권, 특허권, 발견권, 창의고안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원산지명권(특정한 생산물의 원산지를 독점할 권리)과 같은 권리들이 해당된다. 북한도 인류문명의 발달에 따른 인간두뇌의 활동에 의한 정신적 창조물에 대해 재산으로서 점유·이용·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공업소유권은 다른 소유권과 달리 대상별로 일정한 법적 수속을 거쳐 국가의 공업소유권담당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심의를 받고 등록하여야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합영법 시행규정 제7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와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을 공화국령역안에서 사쓰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기술,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에 팔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지적창조물에 대한 소유권. 여기에는 발명권, 특허권, 발견권, 창의고안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원산지명권(특정한 생산물의 원산지를 독점할 권리)과 같은 권리들이 속한다.

○ 저작권(저작소유권)

북한은 저작권(저작소유권)을 과학, 문화, 예술의 창작품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권의 담당자, 즉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작품을 직접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번역하였거나 독



창적인 배열방식으로 편찬한 사람도 저작권자로 된다고 한다. 여기서 저작권은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격적 권리에는 이름에 대한 권리·작품의 불가침성에 대한 권리·작품의 발표권 등이 포함되며, 재산적 권리에는 작품을 여러부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는 권리·작품의 이용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자에게 전속하며, 사망한 경우 일정한 기간 그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관계법조항	합영법 시행규정 제7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와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을 공화국령역안에서 사쓰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기술,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에 팔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저작권 - 과학, 문화, 예술의 창작품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권의 담당자 즉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작품을 직접 창작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번역하였거나 독창적인 배열방식으로 편찬한 사람도 저작권자로 된다.

○ 기술비결

북한은 기술비결에 관하여 비밀에 부치고 있는 새롭고 가치있는 공업기술적 지식과 경험 및 독특한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know-how'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이 기술비결은 경제 및 기술거래대상에 해당한다.

관계법조항	합영법 시행규정 제7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와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을 공화국령역안에서 사쓰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기술,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에 팔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비밀에 부치고 있는 새롭고 가치있는 공업기술적 지식과 경험 및 독특한 기능. 기술비결은 경제 및 기술거래대상에 속한다.

### Ⅲ. 合作法上 用語의 概念

#### ○ 合作법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合作법」을 채택하였으며, 1995년 12월 4일 그 시행규정을 정무원결정으로 제정하였다. 북한은 「合作법」을 제정하여 외국측 당사자가 북한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자본주의식 기업논리가 북한에 침투하여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북한이 직접투자에 따른 부담을 제거하고 외채누적으로 인한 추가적 차관의 도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체제수호와 제한적 개방정책에 의해 고안된 북한식의 투자형태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라 할 수 있다.

<p>관계법조항</p>	<p>合作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合作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p> <p>合作법 시행규정 제1조 이 규정은 &l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合作법&gt;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공화국투자가와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 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규제한 법. 다른 나라들과 合作기업을 널리 조직운영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p>

#### ○ 合作기업의 대상

「合作법」은 合作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창설·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및 봉사부문에도 合作기업을 창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투자가가 첨단기술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설비 도입에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과학기술 및 기술개발대상,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p>관계법 조항</p>	<p>합작법 시행규정 제4조 합작기업은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창설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관광, 봉사 부문에도 합작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5조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대상에는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6조 장려하는 대상의 합작기업,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공화국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합작기업,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지역에 창설운영되는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해당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또는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7조 나라의 안전과 국가 및 사회의 리익에 지장을 주는 대상, 국가가 따로 정한 대상의 합작은 금지하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심히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 효과가 적은 대상의 합작은 제한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작기업은 유한회사형태의 기업으로서 당사자들이 낸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 증가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p>

○ 합작계약(합작기업의 설립)

합작기업의 설립절차는 합영기업의 그것과 유사하다. 합작을 하려는 북한측 당사자인 기관·기업소·단체는 해당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외국투자가의 합작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작계약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 「합작법」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 조항</p>	<p>합작법 제6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합작법 제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 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p>
-------------------	---

<p>관 계 법 조 항</p>	<p>합작법 시행규정 제17조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계약서초안, 경제기술타산서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 외국측 투자가와 함께 합작계약서, 기업의 기본규약, 경제기술타산서를 만들어야 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18조                  합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명칭, 소재지</li> <li>2.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주소</li> <li>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규모, 존속기간</li> <li>4.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몫, 투자액, 투자기간과 투자몫의 양도</li> <li>5. 투자내용(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li> <li>6.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li> <li>7. 관리기구정원,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li> <li>8. 생산규모와 자금, 설비, 자재, 연료, 동력의 소요량과 그 보장조건, 생산물처리방법</li> <li>9. 생산과 판매, 기술이전</li> <li>10. 로력, 재정부기, 외화리용</li> <li>11. 결산과 기금의 조성 및 리용</li> <li>12.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li> <li>13. 해산과 청산</li> <li>14.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 분쟁해결</li> <li>15.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취소, 계약의 효력, 보험</li> <li>16. 이밖에 필요한 내용</li> </ol>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어느 한 나라(본국)의 투자가와 다른 나라의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본국측이 생산과 경영을 맡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합작계약의 당사자는 본국투자가와 외국투자자이다.</p>

○ 경제기술타산서

북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설을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경제기술타산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타산서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들의 이름, 조직목적과 경제기술적유익성, 업종과 경영범위, 경영기간, 조업예정날자, 투자관계자료, 건설과 관련한 자료, 생산 및 생산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단계별 수익성 타산자료, 기술적분석자료, 환경보호, 노동안전, 위생과 관련한 자료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 요건에 관해서는 해당법률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합작법 시행규정 제20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비율, 투자액 및 투자방식, 현물투자의 명세</li> <li>2. 건설물의 연건평과 대상별 건평, 건설투자액, 건설기간, 건설방식, 건설위치, 린점과의 관계, 기존 건물의 및 시설물의 철거비용</li> <li>3. 지표별 년간 생산량과 수출비율, 국내외시장수요, 판매(수출)가능성, 폐설물의 리용 및 처리, 외화수지균형</li> <li>4. 로력, 작금, 자재, 원료, 연료,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li> <li>5. 단계별에 따르는 지표별 예정수입, 항목별 원가, 결산리운, 세금을 비롯한 공제액, 리운분배, 투자상환방식과 기간</li> <li>6. 기본생산기술공정과 기술경제적 지표, 새기술(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내용과 그 평가가격 및 사용가치</li> <li>7. 환경보호, 노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li> <li>8. 이밖에 필요한 내용</li> <li>9. 종합적인 분석평가내용</li> </ol>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경제기술타산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들의 이름, 조직목적과 경제기술적유익성, 업종과 경영범위, 경영기간, 조업예정날자, 투자관계자료, 건설과 관련한 자료, 생산 및 생산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단계별 수익성 타산자료, 기술적 분석자료, 환경보호, 노동안전, 위생과 관련한 자료 등이다.</p>

○ 합작기업창설신청서

합작기업에 대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절차와 방법은 합영기업의 그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p>관계법조항</p>	<p>합작법 시행규정 제22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합작기업창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합작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 합작당사자거래은행의 신용확인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명칭, 소재지</li> <li>2.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주소</li> <li>3. 기업의 창설목적과 유익성</li> <li>4.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몹과 투자액, 투자단계와 기간</li> <li>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li> </ol>
--------------	---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p>관계법조항</p>	<p>6. 업종과 경영범위 7. 생산능력과 생산물의 수출비율 8. 부지면적과 위치 9. 연간 예정리윤과 분배, 투자몹의 상환 10. 관리기구정원 및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11. 이밖에 필요한 내용</p> <p>합작법 시행규정 제26조</p> <p>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안으로 심의하고 합작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합작기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p> <p>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는 합작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당사자들의 투자몹과 투자액, 업종과 생산규모,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투자기간, 합작기간, 조업예정날자, 투자상환 또는 리윤분배방법,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합작을 하려는 공화국의 투자가(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경제기간과 합의하고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계약서, 경제기술단상서 등 필요한 문건을 첨부한 합작신청서를 낸다.</p>

○ 합작상 권리와 의무의 양도

합작기업은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p>관계법조항</p>	<p>합작법 제10조</p> <p>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투자지분상환과 이윤분배

합작기업에 투자한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제품에 의한 투자상환과 이윤분배의 경우에 외국투자자는 판매 등에 의하여 제품을 처분할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 방식은 전형적으로 임가공방식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합작법 제13조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p> <p>합작법 제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 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98조 외국측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99조 합작기업의 리윤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 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 합작기업의 투자

합작기업의 투자는 북한측과 외국측투자자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측투자자는 등록자본의 30%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을 맡게 된다. 투자의 목적물은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합작법 시행규정 제36조 합작기업에 투자하는 몫은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외국측 투자자는 등록자본의 30%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37조 합작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으로 투자할 수 있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38조 외국측 투자자가 투자하는 현물재산은 투자자의 소유이면서 합작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물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39조 현물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가격, 생산 공장 및 회사의 이름, 현물재산을 수입해오는 나라 이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힌 명세서와 대외상품검사문건, 해당한 상품알림책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40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 1. 새로운 제품 또는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현존 생산설비와 기계의 성능을 개조하고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 원료, 자재, 로력, 연료, 동력을 대폭 절약하고 공화국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동안정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지 말아야 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41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기술비결의 유효기간은 제외)같은 것을 밝힌 설명서와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42조 투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때에 인정한다. 1. 화폐재산은 해당한 금액을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한 은행의 돈자리에 넣었을 때 2. 부동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냈을 때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 이전수속을 끝냈을 때 4.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의 관할에 넘기었을 때 5. 기술비결은 계약에 정한 기술이전조건이 실현되었을 때</p>
<p>북한응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작기업은 외국투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며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p>



○ 합작기업의 등록자본

등록자본은 합작당사자들이 투자할 금액의 총액인데, 이는 증액할 수는 있으나 감액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등록자본을 증가시키려면 합작당사자들은 합의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합의를 첩부하여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등록자본증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합작법 시행규정 제51조 합작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작당사자들이 투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총투자액은 합작기업의 류동재산과 고정재산의 총액으로 하며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52조 등록자본은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려는 경우에는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한 다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등록자본증가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자본증가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 등록자본, 등록자본의 증가액과 증가방법, 증가근거를 밝히고 합작당사자들의 합의를 첩부하여야 한다.</p>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총투자액은 해당 계약 및 기본규약(정관)에서 정한 생산규모에 기초하여 기업에 투자하는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의 가치액을 말한다.</p>

○ 합작기업의 예비기금 및 필요기금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이윤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합작기업도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관 계 법 조 항	<p>합작법 시행규정 제90조 합작기업은 해마다 연간결산이윤에서 5%를 떼어 등록자본금의 25%가 될 때까지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작기업의 결산을 매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쓸 수 있다.</p>
-----------	---

第5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관계법조항	<p>합작법 시행규정 제91조</p> <p>합작기업은 결산리윤의 10%까지 확대재생산 및 기술발전 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확대재생산 및 기술발전 기금은 자체의 계획에 따라 쓰며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은 해당 재정기관과 합의필에 써야 한다.</p>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p> <p>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예비-재생산과정의 쓰이지 않고 있거나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생산요소로서 생산을 늘리는 데 동원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능력</p> <p>기금-일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쓰기 위한 기초로 되는 자금</p>

○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공동협의회)

「합작법」은 합작기업의 내부조직에 관하여 합영기업의 운영기구(이사회, 경영관리기구 등)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즉, 합영기업에서와 같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검열원과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합작당사자와 기업책임자를 포함하여 필요한 요원으로 성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협의회에서는 합작경영상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하며, 합작당사자들은 공동협의회에서 토의하고 합의한 문제를 건별로 계약하거나 합작계약서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합작법 제16조</p> <p>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p> <p>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32조</p> <p>합작기업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공동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필요한 수의 성원들로 구성하며 그 수는 합작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p> <p>공동협의회 성원에는 합작당사자와 기업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의장과 부의장은 합작당사자 일방이 다 맡아할 수 없다.</p>
-------	--

<p>관계법조항</p>	<p>합작법 시행규정 제33조 공동협의회는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소집한다. 회의 날짜와 장소, 토의안건은 기업책임자가 회의소집 30일전에 공동협의회에 참가할 성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34조 공동협의회에서는 새 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투자 및 재투자, 투자문의 양도, 등록자본의 증가, 업종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기업의 발전대책, 연간경영활동계획과 같은 합작기업의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35조 합작당사자들은 공동협의회에서 토의하고 합의한 문제를 건별로 계약하거나 합작계약서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리행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작기업에는 최고결의기관인 리사회를 두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두고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협의한다.</p>

○ 합작기업의 존속기간 및 해산

「합작법」은 합작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합작기업의 해산과 합작계약에 정한 합작기간 종료로 이유로 한 합작의 종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합작계약불이행에 의해 기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해산의 효과에 관해서는 합작기업의 해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불이행을 한 당사자에게 있다. 한편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작기업창설신청서에 정한 대로 하며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계산하게 된다. 이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p>관계법조항</p>	<p>합작법 제19조 합작당사자들 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p> <p>합작법 제20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전에 해산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p>관 계 법 조 항</p>	<p>합작법 시행규정 제106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한대로 하며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107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끝나기 6개월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내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간과 근거를 밝히고 당사자들의 합의서와 경제기술타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111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이 경우 외국측 당사자가 투자한 재산은 공화국측 당사자의 소유로 된다.</p> <p>합작법 시행규정 제112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할 수 있다. 1.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사유로 기업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2. 합작당사자들이 기업의 해산을 합의한 경우 3. 기업이 파산되었거나 합작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된 경우</p> <p>합작법 시행규정 제113조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합작당사자들이 기업해산을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기업해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해산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해산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존속 -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계속 존재하여 남아 있는 것</p>

IV. 外國人企業法上 用語의 概念

○ 外國인기업법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으로 「외국인기업법」을 채택하고, 1994년 3월 29일 정무원결정으로 그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외국인기업법」은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관하여 규율한 법을 말한다. 이 법은 4장 31개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세계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관계법조	<p>외국인기업법 제1조</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1조</p> <p>이 규정은 &l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gt;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외국인기업의 창설과 운영질서를 규정한 법. 외국인기업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법인(외국인기업)

북한은 법인을 민사법률관계의 독자적인 당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기관·기업소·단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기관·기업소·단체들은 자기의 본신업무와 과업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게 되며 여기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은 경제거래에 있다고 한다. 여기서 외국인기업은 북한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를 비롯한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하고 독자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서 북한의 법인이 된다.

관계법조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3조</p> <p>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며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p> <p>투자자와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민사법률관계의 독자적인 당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자기의 본신업무와 과업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게 되며 여기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은 경제거래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법인-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법상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기관, 기업소, 단체</p>

○ 외국인기업의 창설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여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공동투자·공동경영의 합영기업과 구별되며, 공동투자·북한측투자자의 단독경영의 합작기업과 차이가 있다. 또한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이 북한영역안이면 어느 곳이나 설립할 수 있는 데에 비해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으로 그 설립의 장소적 제한을 받는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인기업법 제3조 외국투자자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p> <p>외국인기업법 제13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투자자가 투자기간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4조 외국인기업의 창설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1.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 부문 2.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 부문 3.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 부문 4. 건설, 운수 및 봉사 부문 5. 이밖에 필요한 부문</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8조 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가운데서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창설할 수 있다. 1.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어야 한다. 2.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10조 다음과 같은 부문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없다. 1. 출판, 보도, 방송 부문 2. 체신부문 3. 이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부문</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인기업의 창설과 운영은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과 식료 및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부문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외국인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p>

○ 外國人기업 창設신청서

外國人기업을 創設하려는 投資가는 外國人기업創設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外國人기업법」은 外國人기업創設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投資가의 이름·주소·직무, 外國人기업책임자의 이름·국적·직무, 外國人기업의 명칭·업종·생산 품종 및 규모·총투자액·등록자본·거래은행·투자방식과 기간, 주요 생산·기술 공정자료, 생산제품의 실현대상시장과 실현방식, 기업의 기구·종업원수 및 로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建設부지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수, 동력 및 원자재소요량, 연도별 生産계획, 經營기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경제타산서·投資가에 대한 證明문건·투자하는 公業소유권·기술비결과 그에 대한 설명서·投資가의 자본신용확인서 이밖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관 계 법 항 조	<p>外國人기업법 제7조 外國人기업을 創設하려는 外國投資가는 外國人기업創設신청서를 政務院 對外經濟기관에  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  投資가의  資本信用확인서를  비롯하여  審의기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外國人기업법 제8조 政務院 對外經濟기관은 外國人기업創設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안에  關係기관들과의  協의를  거쳐  그  創設을   승인하거나  不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外國人기업법 제12조 外國投資가는   승인받은  外國人기업創設신청서에  지적된  期間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事정으로  정한  期間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機關의   승인을  받아  投資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p> <p>外國人기업법 시행규정 제12조 外國人기업을  創設하려는  投資가는  外國人기업創設신청서를  道廳經濟委員會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投資가의   이름,   주소,   직무,  外國人기업책임자의   이름,  國籍,   직무,  外國人기업의  名칭,  業種,  生産  品種  및  規模,  總투자액,   등록자본,   거래은행,   투자  방식과  期間,  主要  生産,  技術  公證자료,  生産제품의  實現대상시장과  實現방식,  기업의  機具,  종업원수  및  勞力채용과  關連한  資料,  建設부지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수,   동력  및  原자재소요량,  年度別  生産計劃,  經營기간  이밖에   필요한  內容을   밝히고  基本규약,  經濟타산서,  投資가에  對한  證明문건,  投資하는  公業소유권,  技術비결과  그에  對한  說明서,  投資가의  資本信用확인서  이밖에   필요한  文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外國人기업법 시행규정 제19조 지대當국은  對外經濟기관이   심사승인하는  對象의  外國人기업創設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申請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對外經濟기관에   내야  한다.</p>
-----------------------	---

관계법조항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0조 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인기업의 창설은 이법에 규정된 필요한 문건을 첨부한 기업창설신청서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법이 정한 기간안에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나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 외국인기업등록신청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방법제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가운데 기업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합영기업·합작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기업등록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각 개별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사항에는 차이가 없다.

관계법조항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지대당국에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주소, 외국인기업 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예견날자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창설일로 되며 이날부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북한용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기업을 등록하자면 기업등록신청서와 기본규약, 기업창설승인서, 사본을 지대당국의 등록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서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서에는 기업이 명칭,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 설비의 기술 및 유리성 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 주요 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종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양성계획,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이밖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15조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 설비의 기술 및 유리성 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 주요 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종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양성계획,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이밖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북한용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경제기술타산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들의 이름, 조직목적과 경제기술적유익성, 업종과 경영범위, 경영기간, 조업예정날자, 투자관계자료, 건설과 관련한 자료, 단계별수익성 타산자료, 기술적분석자료, 환경보호, 노동안전, 위생과 관련한 자료 등이다.

### ○ 관 세

북한은 관세에 관하여 “나라의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의 대상과 규모는 해당국의 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북한에서 관세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물건, 수입하지 않아도 될 물건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북한에 없거나 경제발전과 주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한다고 설명한다.

관 계 법 조 항	외국인기업법 제25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나라의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관세경계선은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계선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관세 - 해당 나라의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 ○ 등록자본

북한에서 등록자본은 기업을 창설할 때 출자자들이 각기 출자하기로 한 출자액

을 합한 것으로서 기업등록기관에 등록된 자본의 총액을 말한다. 북한은, 유한책임회사에서의 등록자본은 이 회사의 자기채무에 대한 담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등록자본은 기업등록기관의 등록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관 계 법 조	<p>외국인기업법 제26조</p> <p>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 수 있다.</p> <p>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5조</p> <p>외국인기업은 총투자액의 규모에 따라 정한 등록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p> <p>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의 총액이다.</p> <p>등록자본은 총투자액가운데서 지대당국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이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6조</p> <p>등록자본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투자액 6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이상</li> <li>2. 총투자액 600만원이상부터 2,0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45%(그 가운데서 총투자액 900만원까지는 410만원)이상</li> <li>3. 총투자액 2,000만원이상부터 6,0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그 가운데서 총투자액이 2,700만원까지는 950만원)이상</li> <li>4. 총투자액 6,000만원이상은 총투자액의 30%(그 가운데서 총투자액이 7,700만원까지는 2,600만원)이상</li> </ol>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7조</p> <p>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p> <p>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데 따라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31조</p> <p>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다음의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하여야 한다.</li> <li>2. 투자를 여러번에 나누어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년안에 하여야 한다.</li> </ol> <p>첫번째 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90일안에 등록자본의 15%이상 되게 하여야 하며 첫 번째 투자가 끝난 다음번의 투자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안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정해진 기간안으로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거나 첫 번째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와 다음번의 투자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투자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외국인기업은 지대재정기관의 세무등록취소확인서와 기업등록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기업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li> </ol>
------------------	--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p> <p>등록자본은 기업을 창설할 때 출자자들이 각기 출자하기로 한 출자액의 합으로서 기업등록기관에 등록된 자본의 총액이다. 유한책임회사에서의 등록자본은 이 회사의 자기채무에 대한 담보이다.</p>
------	--

○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재투자대상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하부구조건설대상에 대해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전액을, 그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재투자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았던 소득세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8조</p> <p>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의 가격은 투자가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9조</p> <p>투자하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가의 소유권에 속한것이어야 한다.</li> <li>2. 경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li> <li>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평가액이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li> </ol>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33조</p> <p>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부구조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전액을 그밖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p> <p>재투자한 때로부터 5년안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았던 소득세액을 다시 바쳐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65~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 세무(납부)정형

외국인기업의 조세부과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경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의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부과와 관련한 감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에 의한 투자 및 세무정형의 검열과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외국인기업법 제2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 정형을 검열감독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세금법의 적용대상 - 세금법의 적용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인이 속한다. 공화국 영역의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령영안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적용한다.

○ 외국인기업의 해산

「외국인기업법」상 외국인기업의 해산사유는 승인된 존속기간의 만료, 외국투자자와 외국인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해산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은 경영기간(존속기간)의 만기도래,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영활동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경영손실의 과다로 인한 투자자의 해산결심, 외국인기업창설 승인신청서와 기업등록증의 취소, 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해산선포 등을 외국인기업의 해산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외국인기업법 제28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자는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인기업법 제29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자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p> <p>외국인기업법 제30조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해산 또는 파산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66조 외국인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li> <li>2.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사유로 경영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li> <li>4.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을 경우</li> <li>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었을 경우</li> </ol>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인기업의 해산 또는 연장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 또는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p>

○ 경영기간(존속기간)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등록증의 발급일부터 시작한다. 외국투자자가 경영기간의 만료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심사승인기관에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사승인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기업은 경영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대당국에 경영기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63조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계산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64조 경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심사승인기관에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심사승인기관은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승인해 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p>
------------------	--

<p>관 계 법 조</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65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기간을 연장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지대당국에 경영기간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66조 외국인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사유로 경영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었을 경우</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범위안에서 조직 진행한다.</p>

○ ‘지대당국’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줄여쓰는 용어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를 보면, 지대당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행정통제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의 관련법제는 지대당국에 대한 정확한 기관에 대해 혼란을 주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기업법」은 지대당국을 도행정경제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합영법시행규정은 시행정경제위원회를 지대당국으로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또한 지대당국에는 지대개발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정경제부서들, 외국투자의 접수, 심의 및 등록과 관련한 부서들과 함께 항, 출입국사업부서, 외국투자봉사부서들이 소속되어 있어 외국투자와 관련한 사업을 일거에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18조 외국인기업창설을 위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포함된다. 대외경제기관은 총투자액 2,000만원이상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밖의 대상가운데서 총투자액 1,000만원이상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총투자액 2,000만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밖의 대상가운데서 1,000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투자규모가 적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한다.</p>
----------------	---

북한용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지대관리기관에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이 속한다.
------	---

○ 재정부기계산규범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에서의 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규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독자적인 부기기구를 설치하고 기업의 재정부기사업을 처리하며 결산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종합계산을 위한 장부, 분석계산을 위한 장부, 시초문건,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에 해당함), 손익메산서와같은 재정부기문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에서의 부기계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복식기입방법에 따른다.

재정부기계산에 있어서 기업의 부기장부와 보고서, 부기문건 등 각종 부기기록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한하여 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명백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자료는 완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42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43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계산을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재정부기계산을 외화로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시기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률로 계산된 조선원을 접쓰기로 표시하여야 한다.</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2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화국의 재정부기일군 또는 다른 나라 재정부기일군의 도움을 받아 재정부기문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된 비용은 투자가가 부담한다.</p>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외국투자기업에서의 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규정에 따라 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부기계산 - 경영재산의 운동과 경영활동의 재정적 결과를 밝히기 위하여 일정한 계산수법과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물자 재산과 그 자금원천, 경영거래를 금액적으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경제계산</p>

○ 자금대부

북한에서 대부는 하나의 자금유통형태로서 은행기관이 기관·기업소·단체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에 이자를 붙여 상환받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대부에 관하여 대부공간을 통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는 꾸어준 돈과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대부는 소유형태의 차이와 대부를 주는 목적에 따라 국영기업소대부·협동단체대부·기타 대부로 나뉘어지며, 대부기간에 따라 단기대부와 장기대부로 나뉘어진다.

관계법조항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0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은행 또는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대부 -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고 원금에 리자를 붙여서 받아들이는 자금유통형태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자금 - 국가의 경제 관리 운영과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쓰이는 돈 대부 - 은행이나 신용기관등 금융기관이 일정한 기간안에 되돌려 받는 조건 밑에서 수요자에게 자금을 꾸어주는 경제관계

○ ‘로력채용계약(서)’

북한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노력수를 자체로 정하고 지대당국의 ‘로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노동력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로력알선기관은 지대안의 노동력을 보장해주는 것을 원칙을 하면서도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기능공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노동력채용계약에 따라 로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노동력을 받아들이되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력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관련된 이른바 ‘로력채용계약서’에는 업종



별·기술별 노력수·채용기간·노력비용·노동생활보장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p>관계법조항</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3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11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노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로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로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업종별, 기능별 노력수, 채용기간, 노력비, 노동생활보장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로력알선기관은 지대안의 로력을 보장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로력으로 보장해준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로력-사회적으로 필요한 목적에 쓰는 사람의 정신적 및 육체적 활동의 힘 또는 그러한 힘을 들여 일하는 것`</p>

○ ‘로력알선기관’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로력알선기관’이 보장해주는 것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누구나 다 일할 나이가 되면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북한에는 실업자가 한사람도 없다고 설명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북한 이탈주민과 굶주린 북한주민의 생활상은 북한의 현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여하튼 북한의 지대당국의 ‘로력알선기관’은 지대안의 외국투자기업들로부터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한 노동력을 알선하는 사업을 한다. 따라서 ‘로력알선기관’의 사명은 노동력의 수요와 원천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 균형을 이루게 하여 외국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때에 제대로 보장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p>관계법조항</p>	<p>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53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p>
--------------	---

관계법조항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12조</p> <p>로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기업소재지안에 있는 로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로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 로력알선기관은 해당 기능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p>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p> <p>외국투자기업들은 지대당국 로력알선기관의 협조밑에 요구하는 노동자는 물론 기술자, 전문가들을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뿐만 아니라 공화국령역안의 로력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p>

## 第 2 節 外國人投資企業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 I. 外國投資企業勞動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과 이용관계를 규정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1993년 12월 30일 정무원결정으로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북한의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에서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된다.

관계법조항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1조</p> <p>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상 권리와 리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2조</p> <p>외국투자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의 알선과 채용, 로동보수의 지불, 료동생활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p> <p>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료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로동법규에 준한다.</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3조</p> <p>이 규정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p> <p>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p>
-------	---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과 리용관계를 규제한 규정.
------	--

○ ‘로력’ 채용원칙

북한에서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북한 사람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인 경우에는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여기서 외국인을 관리인원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도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4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인원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5조 외국투자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하지 않는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우리 나라 사람으로 채용하며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인 경우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 ‘로동보수(액)’

북한에서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 월노임기준에 따라 직종·직제별 노임기준·노임지불형태의 방법·기급금·장려금·상금기준을 자체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의 노동보수는 노임·가급금과 장려금·상금의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노임은 고정된 것이며, 보조금과 상금은 기업경영상태와 종업원의 노동결과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노임지불형태와 방법은 외국투자기업이 스스로 정하지만, 조업원들의 평균노임의 기준은 지대밖에서는

220원, 지대안에서는 160원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각종기금(예비기금은 제외)은 순이익의 5~10%의 범위에서 기업자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6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로동보수액은 그의 로동직종과 기술기능수준, 로동생산성에 따라 정한다. 로동보수에는 로임, 기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한다.</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26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 월로임기준은 22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문의 로임기준은 높이 정하여야 한다.</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27조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숙련정도와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로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기간에 해당하는 로동보수를 휴가에 들어가기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 월노임기준에 따라 직종, 직제별 노임기준, 노임지불형태의 방법, 기급금, 장려금, 상금기준을 자체로 정한다.</p>

○ '로동계약'

북한에서 노동계약에는 종업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생산량과 질 지표·노동시간과 휴식·노동보호와 노동조건·노동규률·상벌·사직조건 등 노동조직과 노동보호같은 문제들을 규정하게 된다. 이 노동계약은 종업원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며, 단체계약에서 정하게 되는 노동조건, 또는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로력채용계약'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기업측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행활동은 직업동맹의 중요한 활동사항의 하나이다. 즉, 노동계약은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조직이 외국인투자기업과 체결한다.

북한은 노동계약과 관련하여 북한의 노동계약제도는 외국투자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대한 노동생활조건을 보장하면서 외국투자기업의 권익도 보장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국가들의 노동계약(단체계약)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9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로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로동계약에는 종업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지표, 로동시간과 휴식, 로동보수와 보험후생, 로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률, 상벌, 사직 조항같은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로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로동계약문건을 기업소재지로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종업원들의 로동생활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기업과 종업원들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로동계약에서는 종업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지표, 로동시간과 휴식, 로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률, 상벌, 사직조건 등 로동조직과 로동보호같은 문제들을 규정한다.</p>

○ 종업원의 해고 및 사직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조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③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노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④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로동규률을 엄중히 어긴 경우 등이다. 그리고 노동계약기간안에 종업원을 해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업동맹조직과 해당로력알선기관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노동과정에서 발병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치료받는 경우, ② 여성종업원이 결혼하거나 임신, 산전 또는 산후 휴가, 젓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p>관계법조항</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업동맹조직,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                  1.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3.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로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4.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로동규률을 엄중히 어긴 경우</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16조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할 사정이 생긴 경우                  2.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는 경우                  2.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여성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을 해고시키거나 사직시키는 경우에 종업원이 미리 차후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본인과 로력알선기관에 1개월전에 예고하여야 한다.</p>

○ ‘로동일수’ 및 ‘로동시간’

북한에서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주 노동일수는 6일,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을 하며 시간외노동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외국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종업원에게 휴식과 휴가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간 1 내지 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23조                  종업원들의 로동일수는 주 6일, 로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할 수 있다.</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로동을 시키지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로동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고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월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	--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주 노동일수는 6일,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을 하며 시간 외노동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노동시간-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맡겨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제정된 시간</p>
------	---

○ 보충적 '노동보수'(상금, 장려금, 가급금)

북한은 보충적인 노동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상금은 생산과제와 절약과제를 수행하고 기업에 많은 이익을 준 모범적인 종업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추가적인 노동보수의 한 형태라고 한다. 상금기금은 세금을 내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적립되어야 한다.

둘째, 장려금은 어떤 일을 장려할 목적으로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추가적인 노동보수의 한 형태라고 한다. 장려금은 노임이나 상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장려할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지불되는 것이다.

셋째, 가급금은 노임기준표에 규정된 노동부류와 기능급, 직제에 의한 노임기준액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한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노동보수의 한 형태를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이러한 보충적인 노동보수에 관하여 그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29조</p> <p>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30조</p> <p>외국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외 연장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로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32조</p> <p>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리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세우고 직업동맹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p> <p>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33조</p> <p>외국투자기업은 로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자를 정하고 달마다 그날에 내주어야 한다.</p>
-------	---

북한용례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보충적인 로동보수형태들인 상급, 가급급, 장려금을 지불한다.
------	--

## II.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上 用語의 概念

### ○ 外國투자기업 및 外國인세금법

북한은 합영회사들과 외국인들에게서 세금의 한 형태로서 소득세만을 부과하다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세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5년 「합영법」에 의해 부과되던 소득세제를 폐지하고 1993년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을 채택하여 새로운 세금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의해 이 세금법은 북한영역의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투자기업과 북한영역밖의 조선동포들에게 적용된다.

관계법조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우리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세금법.

### ○ 外國투자기업

북한에서 외국투자기업에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속한다. 여기서 외국기업에는 북한에 지사 또는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와 지사 또는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북한에서 이자·배당금·임대료 또는 공업소유권·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해 소득을 얻는 외국의 회사, 상사와 그밖의 경제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조</p> <p>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p> <p>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2조</p> <p>이 규정은 공화국령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p> <p>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령역밖의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p> <p>외국인투자기업에는 &l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gt;에 따라 설립운영 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외국기업에는 공화국령역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리자, 배당금, 임대료와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p> <p>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총칭.</p>

○ 세무등록증

북한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무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세무등록증은 세무등록과 관련한 세무수속절차상 요구되는 하나의 문서이다. 세무등록증은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을 등록한 후 해당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증하는 증명으로 발급되는 것이다.

<p>관계법조항</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4조</p> <p>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p> <p>공화국령역안에 18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p> <p>기업의 소재지가 변동되었거나 통합, 분리되었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과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변경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p> <p>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기 20일전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p>
--------------	--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인증하는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p>
------	--

### ○ 기업소득세

북한에서 기업소득세는 외국투자기업이 기업활동을 하여 얻었거나 그밖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남한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기업소득세의 부과대상에는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 예를 들면 생산물판매소득, 건설 및 개발소득, 상품판매소득, 이자 및 수출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 같은 것이 해당하며, 기타소득에는 이자소득, 공업소유권 및 기술비결의 제공 및 양도소득, 기술고문, 상담같은 봉사소득, 폐설물, 부산물처리소득 등이 해당한다.

관계법조항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8조</p> <p>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 나라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밖에 지사, 출장소, 세끼회사 같은 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9조</p> <p>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무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 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칙 제13조</p> <p>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소득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p> <p>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 부문의 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소득, 금융부문의 리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체신, 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p> <p>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밖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	--

관 계 법 조 항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14조                  기업소득세의 납세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납세년도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해 해산을 선포한 날까지로 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15조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리윤에 부과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기업이 기업활동을 하여 얻었거나 그밖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p>

○ 기업소득세를

기업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덜고 남은 재산이윤 또는 소득액에 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의 소득세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경산이윤의 14%, 지대밖에서는 25%, 북한의 국적을 보유한 교포와 함께 경영하는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은 20%, 장려대상기업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한다.

관 계 법 조 항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로 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령역안에서 재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17조                  기업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14%                  2. 자유경제무역지대밖에서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25%                  3.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 개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10%                  4.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10%, 자유경제무역지대밖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20%</p>
-----------	---

관계법조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18조 기업소득세는 결산리윤 또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덜고 남은 재산이윤 또는 소득액에 법이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기업소득세의 감면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세금법규들은 기업과 투자부문, 기업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납부하는 기업소득세를 일정기간 감면하고 있다. 기업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방법에 관해서는 세금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기업소득세의 감면제도에 대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부문과 대상에 외국의 투자를 집중시켜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정부와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우리 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년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 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4.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000만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기업소득세액을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제도.

○ 個人소득세

북한에서 個人소득세는 북한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개별적인 소득 원천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個人소득세 납부자에는 북한에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과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북한영역 밖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이 해당된다. 만약 외국인이 체류 또는 거주기간 중에 임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일수를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7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個人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公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個人소득세를 바쳐야 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36조                  공화국령역안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個人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공화국령역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公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個人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40조                  個人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에 대한 個人소득세는 달마다 계산하여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안으로 공제납부한다.</li> <li>2.  수익인이 公화국령역밖에 있으면서 公화국령역안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個人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公화국령역안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個人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li> <li>3.  個人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個人소득세는 달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달 15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li> <li>4.  수익인이 公화국령역밖에 있으면서 公화국령역안에서 얻은 배당소득, 公業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個人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公화국령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li> <li>5.  공제납부자는 공제한 個人소득세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li> </ol>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인이 公화국령역안에 체류, 거주하면서 얻은 소득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p>

○ 個人소득세과세대상

북한에서 個人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에는 外國인들이 얻는 노동보수에 대한 소득, 배당소득, 公業소유권과 기술비결·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個人기업소득(個人업소득에 한함)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外國투자기업 및 外國인세금법 제18조                  個人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公業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증여소득                  8. 個人기업소득</p> <p>外國투자기업 및 外國인세금법 시행규정 제37조                  個人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에는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公業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個人기업소득(個人업소득에 한함)이 포함된다.                  個人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이 현물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할 때의 현지가격으로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개인들이 소득세를 바칠 대상.</p>

○ 個人소득세를

북한의 外國인에 대한 個人소득세율은 국가의 세금정책과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북한에서 外國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個人소득세율은 「外國투자기업및세금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듯 個人소득세율에 관하여 법적 규제를 하는 데에 대해 북한은 해당 소득세액의 정확한 계산과 납부를 보장한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9조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이 2,000원 아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대로 한다.</li> <li>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0%로 한다.</li> <li>3. 증여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이 법 부록 2에서 정한대로 한다.</li> <li>4.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5%로 한다.</li> </ol>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38조 개인소득세율을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이 2,000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1에 정한 초과누진세율로 한다.</li> <li>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0%로 한다.</li> <li>3.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이 1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2에 정한 세율로 한다.</li> <li>4.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5%로 한다</li> </ol>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개인이 얻은 소득에 따르는 개인소득세액의 비율.</p>

○ 개인소득세의 계산

북한의 개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를 보면, 첫째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즉 노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월 노동보수액이 2,000원이 넘는 보수액에 해당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둘째로 배당소득·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증여에 의한 소득·재산판매소득·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셋째로 이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섯째로 고정재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노력비·포장비·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第5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관계법조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0조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 초과루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증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3조          고정재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개인소득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p>

○ 개인소득세의 납부

개인소득세의 납부제도는 개인소득세의 신속정확한 납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이에 관하여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4조).

관계법조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4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에 의한 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한다. 공화국은행에 저축성예금을 한 돈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li> <li>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달 10일안으로,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다음달 15일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li> <li>3.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li> </ol>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개인소득세를 무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질서.</p>



○ 개인소득세의 면제

북한은 외국인의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를 보면, 첫째로 북한정부와 외국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둘째로 북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이자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셋째로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의한 이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법조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42조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우리 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리자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3.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의한 이자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개인소득세면제신청서 - 개인소득세를 물어야 할 자가 개인소득세액의 면제를 신청하여 해당 재정기관에 내는 문건.

○ 재산세

북한에서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속세·증여세·일반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직접세에 해당되며, 일반재산세는 토지·산림·살림집 등과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1993년 북한영역에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물·선박·비행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 가지고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한다.
-------	--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관 계 법 조 항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43조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건물에는 살림집, 별장, 부속건물이 포함되며 선박, 비행기에는 자가용 배, 자가용 비행기 같은 것이 포함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44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p> <p>재산을 임대하였거나 저당잡혔을 경우에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p> <p>재산소유자는 재산소재지에 없을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재산세납부의무자로 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일정한 재산의 소유와 관련하여 받아내는 세금.</p>

○ 외국인재산의 등록

북한에서 재산세의 납세자는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은 북한에서 건물·선박·비행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 재산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재산세등록 및 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소유자의 이름·단위·수량(건평, 톤수)·처음값·대보수비·내용년한·사용년한·건설 또는 제작년도·평가한 가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이는 재산세세무등록사업에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항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li> <li>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li> <li>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으로 재등록을 한다.</li> <li>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등록취소수속을 한다.</li> </ol>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선박, 비행기를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경우 재산세등록 및 재등록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p>

○ 재산세률

북한내에 재산을 보유한 외국인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은 매년 건물(살림집, 별장, 부속건물 등)의 경우 등록액의 1%, 선박과 비행기(자가용 배와 비행기)의 경우는 등록액의 2%로 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8조 재산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3에서 정한대로 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50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세금이 적용대상으로 되는 재산의 값에 따르는 재산세액의 비율.

○ 상속세

북한에서는 상속세에 관하여 자본주의제도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세금의 종류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상속세의 대상은 상속되는 재산(동산, 가옥, 토지 등)이 기본으로 되며 그밖에 상속된 생명보험금·사망퇴직금을 비롯한 금전의 취득·취득권리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북한에서 상속세는 북한영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북한영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북한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는 동산·부동산·화폐재산·유가증권·세금·저금 및 보험금·공업소유권·저작권·토지이용권·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북한은 외국인의 상속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상속세의 비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상속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31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	---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53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및 보험금, 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리용권, 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55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상속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장례비용, 재산의 보존관리에 든 비용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57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리유와 재산종류,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출판사, 1997)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또는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p>

○ 거래세

북한에서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수입과 봉사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설명되는데,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세는 생산물의 판매가격과 봉사료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당연히 거래세의 실제적인 부담자는 구매자와 봉사를 받는 자가 된다. 거래세의 납부의무자는 외국투자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이 해당되며 그 과세대상은 국내생산제품과 수입물자의 판매수입금, 봉사부문에서 상품판매수입금 및 봉사수입금이 포함된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37조 생산물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59조 외국투자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수익금에 대하여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한 물자를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li> <li>2. 상업(무역 포함)부문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상품판매액</li> <li>3. 교통운수, 금융, 관광, 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 대부리자와 예금리자와의 차액, 료금과 같은 봉사수입금</li> </ol>
------------------	---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생산물판매수입과 봉사수입에 부과하는 국가의 세금.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거래수입금을 이르던 말
------	---

○ 거래세의 계산

북한에서는 수입물자를 국내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에 대한 거래세는 해당 제품에 대한 세율을 수입금에 적용하여 계산하며,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상품을 판매했거나 봉사를 제공하여 여러가지 수입을 얻은데 대한 거래세는 해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0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생산부분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물판매액에 해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상업부분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분의 거래세는 봉사수입금에 해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60조 거래세는 생산, 상업, 봉사 부분의 수입금에 이 규정 부록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문별 세율에 따르면 전개된 항목의 세율은 재정부가 정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거래세액을 확정하는 행위.

○ 거래세의 납부 및 감면

먼저 거래세의 납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는 월중 이루어진 수입금을 종합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제품 및 부문별단위·수량·단가·금액·세율·거래세액 등을 밝힌 거래서계산서를 만들고, 그것을 세금납부서와 함께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해당은행에 내고 거래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국가적 요구에 의하여 국내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하며, 외국투자은행이 북한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1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판매자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li> <li>2.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봉사기관이 다음달 1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li> </ol>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li> <li>2.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0%로 한다.</li> </ol>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62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와 생산한 제품을 국가적요구에 의하여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63조 외국투자은행이 우리 날 은행이나 기업에 낮은 리자를(런던은행들사이에 제안한 리자보다 낮은 리자)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64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 덜어준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납부자는 월 수입금을 확정하여 다음달 10일 안에 해당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세를 납부한다.</p>

○ 지방세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지방세는 자본주의국가의 중요한 세금종류의 하나라고 하며, 이에 비해 사회주의사회에서 지방세는 국영기업소들에 의한 사회순소득과 봉사료수입이 체계적으로 늘어나며 주민들로부터 세금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세금이 폐지되는 것과 함께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

래서 북한에서는 1974년 4월 세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도 폐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세금법」의 채택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 특수한 형태의 세금으로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인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6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리용세가 포함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해당지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당국이 자기의 관할지역 안에있는 경제조직체나 개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지방세 -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밖에 지방정권기관이 자체의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서 강제로 거두어 가는 세금</p>

### ○ 도시경영세

북한에서 도시경영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 세금이 부과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의 월노임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월노임총액의 1%에 해당하는 도시경영세를 다음달 10일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80일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노동보수에 대한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 및 재산판매소득을 비롯한 월수입의 1%에 해당하는 도시경영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66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월로임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로 한다.</p>
------------------	---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관 계 법 조 항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67조</p> <p>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로임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신고납부한다.</li> <li>2. 180일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인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배당 소득, 임대소득 및 재산판매소득을 비롯한 월수입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마다 다음달 10일안으로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li> </ol>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지방의 권한있는 기관이 도시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의 외국인 또는 외국인집단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금.</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도시경영 -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주택들과 공공건물, 도로, 상하수도, 공원, 유원지, 시내의 교통시설과 같은 모든 공공시설들을 보호관리하는 것</p>

○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북한의 지방세의 일종이다. 북한에서는 세금제도의 철폐와 함께 인민들에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철폐되었으나,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이 기업이나 광업권·어업권 같은 것을 등록하는 경우와 기술자격면허증 같은 것을 받을 경우에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등록세액은 건당 500~1,000원이며, 그 변경 및 취소등록세액은 건당 40원, 광업권 등록세액은 광구당 1,200원, 그 변경취소등록세액은 10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3조</p> <p>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69조</p> <p>등록면허세는 건당 이 규정 부록 6에 정한 세액에 따라 납부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인이 기업이나 광업권, 어업권 같은 것을 등록하는 경우 또는 기술자격면허증 같은 증서를 받는 경우에 바치는 세금.</p>



○ 자동차리용세

북한에서 세금제도가 철폐된만큼 자동차이용세도 폐지된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자동차이용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북한내에서 해당재정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조 항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9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바쳐야 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70조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71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자동차리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72조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안으로 이 규정 부록 7에 정한 세액에 따라 신고납부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동차를 리용하는 경우에 무는 세금.</p>

○ 세금미납시 연체료

북한의 재정기관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해당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53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 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p>
-----------	---

관계법조항	<p>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74조</p> <p>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돈을 물 의무를 정해진 기간안에 리행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제재금.</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법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일내에 의무를 리행하지 못하였거나 반환날자를 지키지 못한 경우 본래의 의무액 또는 료금에 덧붙여 무는 돈</p>

### Ⅲ. 土地賃貸法上 用語의 概念

#### ○ 토지임대법

「토지임대법」은 북한이 1993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한 법이다. 이 법은 8개장 42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토지임대법」이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가들에게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투자와 활동을 보장하고 대외경제거래를 강화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토지임대법 제1조</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토지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한 법.</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토지-사람에 의하여 정복되고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리용되는 땅</p> <p>임대-일정한 값을 받고 빌려주거나 세를 주는 것</p>

○ 토지이용권

북한에서 토지이용권은 외국의 법인과 개인, 외국투자기업이 북한에서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이용권에는 땅속 또는 물밑에 있는 천연자원·매장되어 있거나 은닉된 문화유적유물·귀금속과 같은 가치물의 개발권이나 이용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이용권은 합영·합작기업에 출자하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에도 인정된다.

관계법조항	토지임대법 제3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토지임대법 제7조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임차한 토지를 리용할 수 있는 권리.

○ 토지임대기간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외국법인과 개인·북한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이 토지를 임대받되, 토지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이용권은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지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토지이용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조항	토지임대법 제6조 토지임대기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토지이용권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토지임대기관에 반환된다.

○ 국토관리기관(토지임대기관)

북한에서 토지는 국가소유이므로 임대하는 토지도 국가소유이다. 따라서 토지임대는 국가의 토지관리를 책임지는 국토관리기관만이 하게 되며,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토지임대자가 된다. 국토관리기관에는 중앙국토관리기관과 도·시·군 국토관리기관이 속한다. 중앙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감독 통제사업을 하며 도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임차한 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저당에 대한 승인을 한다. 그리고 시·군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와 관련한 등록사업을 한다.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토지임대는 지대당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토지임대법 제4조 토지임대는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는 지대당국이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토지임대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하는 국가기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국토관리 -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전령토에 대한 관리

○ 토지임차자

북한에서 토지임차자는 자본주의국가에서와 달리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토지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북한영역 안에 투자를 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기관·경제조직체·개인·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만이 토지임차자로 될 수 있다.

관계법조항	토지임대법 제1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토지임대법 제16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금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
-------	--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해당한 값을 물고 토지리용권을 일정한 기간 넘겨받은 자.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임차 - 값을 내고 물건을 빌어쓰는 것
------	--

○ 토지임대차제도

토지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토지 임대차제도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자유경제 무역역지대가 창설됨에 따라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여 토지임대차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토지의 임대차는 당사자간 협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자유경제무역역대에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해 토지의 임대차를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p>토지임대법 제9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역지대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토지임대법 제12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 날자,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li> <li>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li> <li>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li> <li>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li> <li>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li> <li>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 조건을 고려하여 락찰자를 결정한다.</li> <li>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통지서를 발급한다.</li> <li>8.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한 임대료를 지불한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li> <li>9.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다.</li> <li>10. 락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에는 락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li> </ol>
-------	---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관 계 법 조 항	<p>토지임대법 제13조</p> <p>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 날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li> <li>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입찰희망자를 낙찰자로 정한다.</li> <li>3. 낙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 받고 등록한다.</li> </ol>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한편 당사자는 값을 받고 일정한기간 토지의 리용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넘겨주고 상대방은 값을 물고 그것을 넘겨받아 리용하는 제도.</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입찰 - 매매. 청부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기하는 대상과 계약하겠다고 한데 대하여 거기에 응해나선 사람이 계약에 제기하고자 하는 금액과 그밖의 이러저러한 조건을 적어서 내는 쪽지 또는 그렇게 체결하는 계약형식</p> <p>경매 - 일정한 장소에 개별적인 상품들을 볼 수 있게 차려놓고 그곳에 모여온 구매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값을 부르자에게 파는 자본주의적 판매방식</p>

○ 토지이용권의 판매

북한에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그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토지이용권의 판매조건으로는 합법적 취득·토지이용권값의 완전지불·토지임대차계약상 투자와 건설의 완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권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체결·이에 관한 공증기관의 공증·토지임대기관의 승인·국토관리기관의 토지이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토지이용권의 매매제도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토지이용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토지임대법 제16조</p> <p>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몹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장할 수 있다.</p> <p>토지임대법 제17조</p> <p>토지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간다.</p>
-----------	--

<p>관계법조항</p>	<p>토지임대법 제18조                  토지이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이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권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는다.                  3.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명의등록을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팔고사는 제도.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양도 -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것</p>

○ 토지이용권의 재임대

토지의 재임대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대로 토지를 개발한 다음 재임대하도록 허용된 토지에 한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재임대가 가능한 토지는 토지이용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토지임대료를 모두 지불하고 승인된 투자와 건설을 한 것이어야 한다. 토지재임대자는 임차자와 토지재임대계약을 맺고 토지임대기관에 임대차계약서와 재임대계약서 사본·임차자의 투자능력확인문건 등을 첨부한 토지재임대신청서를 제출하며 그것을 접수한 토지임대기관은 10일 안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을 결정하여야 한다.

<p>관계법조항</p>	<p>토지임대법 제16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무를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                  토지임대법 제2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토지임차자가 빌린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p>

○ 토지이용권의 저당

북한의 토지이용권의 저당제도는 「토지임대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 법에 의해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저당잡힐 수 있다. 이 때 토지와 함께 건축물과 부착물도 함께 저당되며 저당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토지이용권을 저당잡히는 경우에 저당자는 저당권자와 토지임대차계약에 적합하게 저당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시·군 국토관리기관에 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은 토지이용권 저당을 등록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관 계 법 조 항	<p>토지임대법 제16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료를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p> <p>토지임대법 제21조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토지이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p> <p>토지임대법 제22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받는 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p> <p>토지임대법 제23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p> <p>토지임대법 제24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는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p> <p>토지임대법 제25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p> <p>토지임대법 제26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기간안에 저당받은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이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p> <p>토지임대법 제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일안으로 토지이용권저당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p>
-----------------------	--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저당잡히는 제도.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저당 - 부동산이나 동산 또는 재산권을 법적으로 확인한 문서를 담보로 삼고 빚을 얻어 쓰면서 내준 자에게 도로 찾아가기로 하고 맡기는 것
------	--

○ 토지임대료(이행보증금, 연체료)

북한에서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다른 자에게 넘겨주고 그 값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값과 토지사용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값만을 의미하는데 북한도 토지임대료의 개념을 토지이용권의 값으로 규정함으로써 좁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토지임대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토지임대법 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리용권의 값이다. 토지임대법 제31조 협상,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연속 50일간 물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토지를 빌려쓰는 값.

○ 토지임대차 계약

북한에서 토지임대차계약은 자본주의국가의 그것과 다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토지는 상품이며 토지임대차계약은 그 당사자들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는 것이데 비해, 북한의 토지임대차계약은 토지의 개발과 특혜문제에 관한 내용을 중점을 하고 있다. 「토지임대법」상 토지임대차계약의 기본내용을 보면, 토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지의 위치와 면적, 임대차의 목적과 기간, 토지의 용도·리용범위, 총투자액과 건설투자액·단계별투자액·건설기간, 임대료와 지불방법, 특혜조건, 토지이용조건 등으로 되어 있다. 토지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서면의 형식으로 맺는 것을 기본을 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경매나 입찰의 방법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p>토지임대법 제30조</p> <p>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많은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의 합의밑에 5년안에 분할하여 둘 수 있다.</p> <p>이 경우 미납금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리자를 물어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한편 당사자가 토지리용권을 일정한 기간 상대방 당사자에게 넘겨주며 상대방은 그 값을 지불할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계약.</p>

○ 토지사용료

토지사용료는 국가소유인 토지를 이용한 값으로서 북한의 국가가격제정기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사용료는 한번 제정하면 4년간 변동시킬 수 없으며, 4년 후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그 변동폭이 정해진사용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토지임차자·토지이용권을 합법적으로 양도받은 자·합작 및 합영기업·외국인기업 등이다.

관계법조항	<p>토지임대법 제33조</p> <p>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는 해마다 국가가 정한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p> <p>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줄 수 있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국가의 토지를 리용한 값으로 국가에 무는 요금.</p>

○ 토지이용권의 반환 및 박탈

토지이용권은 토지임대차계약상 토지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토지임대기관에 반환되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건축물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기간 안에 총투자액의 50%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토지임대법 제34조 토지이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토지임대법 제40조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총투자액의 50%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토지이용권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토지임대기관에 반환된다.

IV. 外貨管理法上 用語의 概念

○ 외화관리법

북한은 「외화관리법」을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하였는데, 이 법은 외화수입을 늘리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며 외국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외화관리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수입을 늘리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외화관리법 제2조 이 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	---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외화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	---

○ 외화(외화현금)

북한은 외화에 관하여 한 나라에서 본국 화폐단위밖의 다른 나라 화폐단위로 표시된 현금·무현금증권·돈자리잔고·즉시 화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귀금속같은 지불수단 및 유통수단으로서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외국에 진 빚을 상환하며 화폐형태로 차관이나 원조를 외국에 주거나 그로부터 받을 때 이용하는 국제구매기관 및 국제지불수단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화와 전환성없는 외화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 화폐와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예컨대 은행권·보조화폐·유가증권·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 및 귀금속 등)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후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외국의 돈과 바꿀 수 없는 민족화폐와 민족화폐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외화관리법 제3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국화폐, 국가채권, 전환가능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를 비롯한 외화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 같은 귀금속이 있다. 외화관리법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는 외화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원과 바꾸어야만 쓸 수 있다. 외화의 사고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외화관리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할 수 있다. 외화관리법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외화관리법 제23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 범위안에서만 공화국영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	---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자기 나라 화폐단위밖의 다른 나라 화폐단위로 표시된 현금, 무현금증권, 돈자리잔고, 즉시 화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귀금속같은 지불수단 및 유통수단.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외화 -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에서 값을 치르는 수단으로 되는 것 곧 금, 외국돈, 외국 유가증권, 외국은행에 맡기고 있는 예금같은 것을 통털어 이르는 말</p>
------	--

○ 외화유가증권

북한의 「외화관리법」은 외화유가증권에 관하여 외화로 표시된 국가채권·지방채권·회사채권(사채)·출자증권·주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외화유가증권에는 배집증권·창고증권 등의 물자재산증권, 행표(수표)·수형(어음) 등 화폐증권, 주식·사채 같은 자본증권, 행표·수형 등 지불수단이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증권이라고 하여도 차용증서·영수증서와 같이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한 증거증권, 우표·수입인지같은 법률상 돈을 대신하는 물건 내지 단순히 지불에 의한 책임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면책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계법조항	<p>외화관리법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외화관리법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외화관리법 제2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한 물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화로서의 재산적가치를 가지고 양도될 수 있는 증권.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유가증권 - 자본을 낸 자본소유자에게 리익배당금 또는 리자의 형식으로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거나 일정한 자산을 청구할 권리를 주는 증서</p>

○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

북한은 외화관리와 관련하여 외화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외화관리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과 위법행위에 의한 외화거래에서의 외화와 물건의 몰수제도를 두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외화관리법 제29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한다.</p> <p>외화관리법 제30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겨 외화적손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p> <p>외화관리법 제31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과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화관리기관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외화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는 유일적인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 호상간 또는 공화국령역안에있는 외국인들 사이의 외화거래를 승인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p>

V. 稅關法上 用語의 概念

○ 세관법

북한의 「세관법」은 1983년 10월 14일에 채택되고 1993년 11월 17일 수정보충되었다. 이 법은 5개장 51개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무역에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고 강조된다. 이 법은 북한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관리하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들, 북한에 주재하는 외국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북한국경을 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해 대외무역의 질서를 강화하여 북한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세관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 무역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p> <p>세관법 제7조 이 법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우리 나라 국경을 넘는 다른 나라 국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들과 지불수단, 운수수단들에 대한 감독과 검사, 관세징수와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 법.</p>

○ 세관수속

북한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국민은 국경통로·무역항·국제항공역에 도착하면 몸짐과 돈·유가증권·따로 붙여오는 손짐을 세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북한의 무역항을 통과하는 외국배에 실려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당해 배의 선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관이 있는 곳으로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세관법 제2조 세관수속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p> <p>세관법 제8조 세관수속은 짐과 운수수단을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짐과 운수수단을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필요한 문건을 내고 세관수속을 해야 한다.</p>

○ 세관검사

북한의 세관은 북한에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내보내는 짐과 운수수단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는 국경통로·무역항·국제항공역·국제우편국과 그밖의 지정된 곳에서 하며, 개인의 휴대품 및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 및 배안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세관은 국경역·무역항 같은 세관검사지점에서 검사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하여서는 화물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세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짐입자는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세관법 제13조 세관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짐과 운수수단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p> <p>세관법 제14조 세관검사는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과 그밖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 몸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 배안에서도 할 수 있다.</p> <p>세관법 제15조 세관은 국경역, 무역항 같은 세관검사지점에서 검사할 수 없는 짐에 대하여서는 짐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세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짐입자는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세관 - 국경을 통과하는 무역상품, 국제소포, 여행자들의 몸짐, 운수수단등 일체 짐들을 검사 및 통제하며 국가법에 기초하여 통과수속을 진행하는 국가기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세관검사는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과 그밖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p>

○ 관 세

관세는 이른바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관세경계선은 해당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설정한 경계선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국가의 국경선과 일치하지만 경우에 따라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자유경제무역지대나 자유무역항으로 설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관세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관세경계선은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관 계 법 조	세관법 제32조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수입물자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 수출물자인 경우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수출입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매가격으로 한다. 세관법 제33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나라의 관세경제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관세 - 해당 나라의 관세경제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 특혜관세

북한의 특혜관세제도는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수입 또는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다. 특혜관세에는 일방적 특혜관세와 특혜관세로 나뉘어져 있다. 전자는 어느 무역일방만이 특혜를 적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무역 쌍방이 모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관 계 법 조	세관법 제37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무역협정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 관세률을 적용한다. 관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관세률을 적용한다. 세관법 제38조 관세률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물자에는 그와 유사한 물자의 관세률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특정한 나라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특혜관세 - 특정한 나라 및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보다 특별히 낮게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 보세제도

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보세화물의 유입과 유출·보관·가공·조립·운반 등과 관련한 규칙과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보세제도가 외화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국가들의 그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의 보세제도는 외국과의 경제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외국에 봉사를 제공하며 외화수입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보세제도의 운영을 통해 외화획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세관법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p> <p>세관법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집입자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세관에 내야 한다.</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받지 않지만 보세기간이 지나면 관세를 물어야 한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도 그것을 세관이 정한다.</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보세화물의 관세징수와 통과수속, 보세지역에서 그것의 처리를 법적으로 규제한 체계와 질서의 총체.</p>

○ 세관법상 제재 및 신고청원

정한 기간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하며, 세관법규를 위반하여 북한에 출입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억류 또는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그 위반이 중한 경우에는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세관 수속과 검사 및 관세납부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세관과 협의하여 해결하고, 이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급세관에 신고·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세관법 제48조 세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물리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매일 연체료를 물린다.</p> <p>세관법 제49조 세관법규를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과 운수수단은 억류 또는 몰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p> <p>세관법 제50조 세관 수속과 검사, 관세납부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해당세관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상급세관에 신고청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p>
------------------	--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p> <p>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관세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물었거나 물지 않았을 경우에 세관은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3년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다.</p>
------	---

## VI. 外國投資銀行法上 用語의 概念

### ○ 외국투자은행법

북한은 1993년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해 「외국투자은행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5개장 32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배경에 관하여 세계경제의 지역화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북한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외국자본의 직접 또는 간접 투자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금융분야에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 법은 금융분야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세계 여러국가와의 금융분야의 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관계법조항	<p>외국투자은행법 제1조</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1조</p> <p>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2조</p> <p>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영 및 해산과 관련한 절차와 질서를 규제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금융분야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관계를 규제한 법.</p>

○ 外國투자은행

북한은 外國투자은행을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외화조달의 편리를 실현하여 보다 큰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外國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外國은행·外國은행지점이 포함된다. 外國투자자와 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는 북한영역안에 투자하여 外國투자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外國투자은행법 제2조                  外國투자자는 公화국령역안에 外國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外國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外國은행, 外國은행지점이 속한다.                  外國은행과 外國은행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                  外國투자은행법 제3조                  外國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外國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3조                  外國투자자는 公화국령역안에 外國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外國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外國은행, 外國은행지점이 포함된다.                  합영은행은 公화국의 은행(기타 금융기관 포함)과 外國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公화국령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몫에 따라 리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外國은행은 外國투자자가 公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하는 은행이다.                  外國은행지점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公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운영하는 지점이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外國투자자본으로 이루어진 은행.</p>

○ 합영은행

북한의 합영은행은 어느 한 나라(본국)의 은행 또는 그밖의 금융기관과 外國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북한영역 안에 설립하고 운영하며 출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은행을 말한다. 북한에서 합영은행을 설립하려면 중앙은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중앙은행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영은행은 설립등록한 날부터 북한의 법인으로 인정된다.

<p>관계법조항</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3조                  외국투자자는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병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포함된다.                  합병은행은 공화국의 은행(기타 금융기관 포함)과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화국령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분에 따라 리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은 외국투자자가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운영하는 지점이다.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5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합병은행은 공화국령역 안이나 밖에, 외국은행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지점, 출장소를 내올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합병은행은 공화국의 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화국령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분에 따라 리익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합병 - 서로 다른 기업체나 회사들이 공동출자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업</p>

○ 외국은행

외국은행은 외국투자은행의 한 종류로서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될 수 있다. 외국은행이 설립되려면 은행설립신청서에 기본규약과 경제기술타산서·은행의 관리성원명단·투자자의 재정상태표와 영업허가증의 사본,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의 사본 등의 문건을 첨부하여 북한의 중앙은행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p>관계법조항</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3조                  외국투자자는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병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포함된다.                  합병은행은 공화국의 은행(기타 금융기관 포함)과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화국령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분에 따라 리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은 외국투자자가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운영하는 지점이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은행은 외국투자자가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하는 은행이다.</p>

○ 외국은행지점

북한에서 외국은행지점은 외국 또는 다른 지역에 설립한 외국은행의 영업분소를 말한다. 북한에서 외국은행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점을 설치하려는 본점은 지점설립신청서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중앙은행지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북한이 인정하고 있음은 국제적인 무역거래의 발전추세에 따른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3조                  외국투자자는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포함된다.                  합영은행은 공화국의 은행(기타 금융기관 포함)과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화국령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분에 따라 리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은 외국투자자가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운영하는 지점이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에 있는 은행이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운영하는 지점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지점 - 본점이나 총지점에서 갈라져 나와 그 관할밑에서 일정한 구역을 맡아 업무를 보는 기관</p>

○ 중앙은행(기관)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은 자금을 융통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재정적으로 통제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하고, 자본가들의 영리추구를 위하여 복무하는 영리적 기업체인 자본주의에서의 은행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은행의 재정적 통제는 본질상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화폐적 공간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국가적 통제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앙은행은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 통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계법조항	<p>외국투자은행법 제6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이 한다.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9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업종을 심의승인하며 필요한 업무규범을 만들고 그 집행을 감독통제한다. 외화관리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를 승인하며 그 집행을 장악통제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나라의 은행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은행.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중앙은행 - 나라의 은행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은행</p>

○ 외화관리기관

국제결제수단으로서 외화에는 외국의 통화는 물론 금 및 대외결제에 쓰이는 외국의 통화로 표시된 모든 신용증권과 지불증권들인 수형(어음)·지불행표(수표)·외국은행에 예금한 계좌잔고 등이 포함된다. 바로 이러한 외화에 대한 통일적인 통제를 하는 국가기관을 외화관리기관이라고 한다. 북한의 외화관리기관은 북한에서 거래되는 모든 외화에 대하여 통제·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간 또는 북한에 있는 외국인간의 외화거래를 승인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관계법조항	<p>외화관리법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명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9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업종을 심의승인하며 필요한 업무규범을 만들고 그 집행을 감독통제한다. 외화관리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를 승인하며 그 집행을 장악통제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해당국가의 령역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는 기관.</p>

○ 外國투자은행의 설립과 등록

북한에 外國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명칭·책임자의 이름과 약력·등록자본금·불입자본금·운영자금·출자비율·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힌 은행설립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外國투자은행설립신청문건에는 합병은행설립신청문건·외국은행설립신청문건·외국은행지점설립신청문건 등 세가 지가 있다. 다음 外國투자은행의 등록은 外國투자은행의 설립을 확인하고 그의 경 영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外國투자은행의 등록은 은행소재지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가 하도록 되어 있다. 설립승인을 받은 外國투자은행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外國투자은행법 제8조 공화국령역안에  外國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약  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율,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힌  은행설립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p> <p>外國투자은행법 제9조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가  한다.</p> <p>外國투자은행법 제10조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은  外國투자자가  한다.</p> <p>外國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10조 공화국령역안에  外國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자  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중앙은행지점)에  내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外國투자은행(합영은행,  外國은행,  外國은행지점)의   설립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는  행위.</p>

○ 합영은행설립신청서

합영은행설립신청서에는 합영당사자들의 기업의 명칭·국적·소재지·등록자 본·기업등록날자와 등록기관·기업책임자의 직무와 이름·합영은행의 명칭과 소 재지·등록자본금과 그 불입단계·불입액·기간·출자비율과 금액·예전되는 이사 장과 부이사장의 이름·합영기간·업무내용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10조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중앙은행지점)에 내야 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11조 합영은행설립신청서에는 합영당사자들의 기업과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기업등록날자와 등록기관, 기업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합영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과 그의 불입단계와 불입액, 기간, 출자비율과 금액, 예견하는 리사장과 부리사장의 이름, 합영기간,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12조 외국은행설립신청서에는 원기업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기업등록날자와 등록기관, 기업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외국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과 그의 불입단계와 불입액, 경영기간,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13조 외국은행지점설립신청서에는 본점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본점등록날자와 등록기관, 본점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외국은행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자금, 경영기간,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14조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들이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본국의 은행 또는 그밖의 금융기관이 외국투자가와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는 은행을 본국령역안에 내오는 행위.</p>

○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문건

북한에서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문건에는 합영은행설립신청문건, 외국은행설립신청문건, 외국은행지점설립신청문건 등 세가지가 있다. 첫째로 합영은행설립신청문건에는 신청서와 계약서·은행의 기본규약·경제타산서·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약력을 밝힌 문건·투자가의 영업허가증사본·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가 해당된다. 둘째로 외국은행설립신청문건에는 신청서와 은행의 기본규약·경제타산서·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약력을 밝힌 문건·영업허가증사본·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최근 3년간 재정상태표가 해당된다. 셋째로 외국은행지점설립신청문건에는 신청서·본점의 기본규약·지점관리성원의 이름과 약력을 밝힌 문건·지점책임자에 대한 본점의 전권위임장·외국환자업무승인서

사본·최근 3년간 본점의 재정상태표·손익계산서·영업허가증사본·지점의 경제 타산서 등이 해당된다.

<p>관 계 법 조</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15조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자가 한다.                  외국투자자는 외국은행설립신청서에 외국은행의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탁력을 밝힌 문건, 영업허가증사본, 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16조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한다.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17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합영은행, 외국은행이 지점, 출장소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한 은행설립신청서와 첨부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18조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와 그에 첨부되는 문건(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제외)은 조선어로 만들어야 한다.</p>
<p>북한응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한나라의 령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p>

○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

외국투자은행이 그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할 법정자본금에 관하여 「외국투자은행법」은 제도화하고 있다.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은 등록자본금·운영자금·자기자본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등록자본금은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이 보유하여야 하는 법정자본금으로서 조선원 3,000만원이상에 해당되는 전환성외화이어야 하며, 운영자금은 외국은행지점이 보유하여야 하는 자금으로서 조선원 8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외화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자본금은 불입자본금·예비기금·기타 잉여금으로서 채무의 보증액 또는 자기채무액의 5%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통해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정상화와 신용제고·파산 및 해산방지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p>관계법조항</p>	<p>외국투자은행법 제18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본금을 조선원 3,0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외화로, 1차불입자본금을 등록자본금의 50%이상 가져야 한다.                  외국은행지점은 운영자금을 조선원 8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외화로 보유하여야 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 제19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1차 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 제20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액 또는 자기 부담채무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유하여야 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36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가져야 한다.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의 등록자본금은 조선원 3,0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외화, 외국은행지점의 운영자금은 조선원 8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외화이어야 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30조                  외국투자은행등록자본금(운영자금)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리유와 변경하려는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밝히고 등록자본금(운영자금)변경과 관련한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36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가져야 한다.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의 등록자본금은 조선원 3,0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외화, 외국은행지점의 운영자금은 조선원 8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외화이어야 한다.</p>
<p>복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은행(합영은행,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자금.</p>

○ 외국투자은행의 적립금

외국투자은행의 적립금은 은행업무의 정상화와 자본금의 증대,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적립되는 자금을 말한다. 적립금의 종류에는 예비기금·상금기금·문화후생기금·기술발전기금 등이 있다. 적립금의 규모와 비율·적립 및 이용질서는 외국투자기업의 기금운영의 경우와 다름없다.

<p>관계법조항</p>	<p>외국투자은행법 제21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본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연간결산이익금에서 5%를 떼어 적립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은행법 제22조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은행이 은행업무의 정상화와 자본금의 증대, 종업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적립금 - 요긴할 때 쓰기위하여 얼마씩 정기적으로 내어 저축해 두는 돈</p>

○ 외화대부 및 투자

외국투자은행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북한영역안의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형(어음)할인, 증서대부, 시좌돈자리초과지불과 같은 외화대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외국투자은행의 여신업무에 대한 제한으로서는 특정기업에 외국투자은행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무역기관과 금융기관에 주는 대부는 제외)은 금지된다. 만약 초과대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부용도를 밝힌 신청문건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의 35%를 초과하여 외화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45조                  외국투자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화국령역안의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형할인, 증서대부, 시좌돈자리초과지불과 같은 외화대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그것을 초과하여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부용도를 밝힌 신청문건을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46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의 35%를 초과(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제외)하여 외화투자를 할 수 없다.</p>
--------------	---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외화 - 우리 나라 화폐단위밖의 다른 나라 화폐단위로 표시된 현금, 무현금증권, 돈자리잔고, 즉시 화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귀금속 같은 지불수단 및 유통수단.</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대부 - 은행이나 신용기관등 금융기관이 일정한 기간안에 되돌려 받는 조건 밑에서 수요자에게 자금을 꾸어주는 경제관계</p>
------	---

○ 보증

외국투자은행은 그 구체적인 업무의 하나로 입찰보증·계약이행을 담보하는 보증, 채무의 보증, 화물인수보증과 같은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보증과 생산자재의 수출입과 관련한 보증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47조</p> <p>외국투자은행은 입찰보증, 계약리행을 담보하는 보증, 채무의 보증, 화물인수보증과 같은 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채무자(주채무자)가 채무(주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대신 리행하기 위하여 채무자 이외의 자(보증인)가 채무(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보증채무 또는 보증계약이라고도 한다.</p>

○ 신탁업무

외국투자은행은 증권투자신탁·금전채권신탁·부동산신탁과 같은 신탁업무를 할 수 있다.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은 금전과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신탁계산자리를 따로 가져야 하며, 위탁받은 금전은 예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第 5 章 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관계법조항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50조</p> <p>외국투자은행은 증권투자신탁,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과 같은 신탁업무를 할 수 있다.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은 금전과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신탁계산자리를 따로 가져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신탁계약 - 신탁회사 또는 신탁은행과 재산 또는 금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권리, 의무, 책임등을 규정하는 계약. 부르쵸아민상법상 용어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신탁 -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 운영, 처분등을 위탁하는 일</p>

○ 외국투자은행의 예금지불준비금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지불준비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불입자본금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도록 한 것과 구별되고 있다. 이 경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지점에 월평균 예금잔고의 6%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예금준비지불금을 매일 두어야 한다. 예금준비지불금은 중앙은행과 합의하여 수형(어음)교환결제, 금융기관들 사이의 대차결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자금을 제때에 메꾸어야 한다. 아울러 예금지불준비금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p>외국투자은행법 제25조</p> <p>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어야 한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55조</p> <p>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거기에 월평균 예금잔고의 6%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예금지불준비금을 매일 두어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외국투자은행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은 기업소재지 중앙은행지점에 둔다.</p>

○ 外國투자은행의 決算

外國투자은행의 決算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年間업무의 決算은 다음 해 2월 안으로 하도록 하고, 정한 기간내에 연도업무決算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은행과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決算보고는 중앙은행이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年間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年間 업무決算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으로 外화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外國투자은행법 제26조                  外國투자은행의 決算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年間업무決算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外國투자은행법 제27조                  外國투자은행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年間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年間 업무決算이 끝난 날부터 30일안으로, 분기 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를 다음분기 첫달 15일안으로 外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外國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56조                  外國투자은행의 決算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外國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57조                  外國투자은행은 중앙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年間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年間업무決算이 끝난 날부터 30일안으로, 분기 재정상태표와 송금환자명세표, 수출입결제명세표, 투자항목명세표를 다음분기 첫달 15일안으로 外화관리기관에, 年間업무보고서를 다음해 3월안으로, 월예금 및 대출금 명세표를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外國인투자기업의 年間決算은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決算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p>

○ 外國투자은행의 우대

外國투자은행은 조세감면에 대한 우대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外國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 면제 및 그 다음 2년간 50%의 범위내에서 기업소득세의 감면, 북한의 은행 또는 기업에 런던금융시장의 이자율보다 낮거나 10년이상의 장

기대부시 이자수입에 대한 거래세 면제, 은행경영으로 획득한 소득과 청산후 자금에 대한 국외송금시 면세 등이 그 구체적인 혜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투자은행법 제28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리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여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li> <li>2. 우리 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리자수입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li> <li>3.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게 받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li> <li>4.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li> </ol>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59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투자은행을 10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익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li> <li>2. 공화국의 은행 또는 기업에 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리자률보다 낮은 리자률로 대부하였거나 10년이상의 장기대부를 주었을 경우에는 얻은 리자수입에 대하여 거래세를 면제한다.</li> <li>3.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투자은행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은행업무를 겸하여 하는 외국투자은행에 대하여서는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40% 덜어준다.</li> <li>4. 은행업을 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li> </ol>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결산년도와 외화관리기관이 내는 각종부기문건과 그 절차, 세금의 감면과 같은 외국투자에 주는 우대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p>

○ 외국투자은행의 해산 및 청산

외국투자은행은 존속기간의 만료, 두 개 이상의 은행통합, 지불능력부족에 의한 영업불가능, 계약업무불이행으로 인한 은행운영불가능,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영업불가능, 재판소의 해산판결 등의 사유에 의해 해산된다. 외국투자은행을 해산하려는 경우(재판소판결에 의한 해산제외)에는 해산승인신청서를 해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산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국투자은행직원, 중앙은행직원, 공인부기검증원, 변호사들로 조직된 청산위원회가 해당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p>관계법령</p>	<p>외국투자은행법 제14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의무의 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된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60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li> <li>2.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은행이 통합하는 경우</li> <li>3. 지불능력의 부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li> <li>4. 합병쌍방의 어느 일방이 계약의무를 불성실하게 리행하여 은행운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li> <li>5.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li> <li>6. 재판소의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li> </ol>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61조 외국투자은행을 해산(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해산은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해산하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을 첨부한 해산승인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은행의 결산 또는 청산, 해산, 새로운 은행의 설립에 대하여 등록기관에 해당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p>

○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제재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벌금의 부과 및 영업중지와 은행설립승인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정은 재산몰수와 형사적 책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부과하는 벌금이 형법인지 행정벌인지 그 성격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부과정도 및 절차도 애매하여 그 적용상 자의성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

<p>관 계 법 조</p>	<p>외국투자은행법 제29조 외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문다. 1. 승인없이 책임자,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2.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3.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4. 정정보고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한 경우</p> <p>외국투자은행법 제30조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종밖의 업무를 한 경우와 승인없이 기본규약을 고쳤거나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을 늘렸거나 줄인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64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도에 따라 1만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1. 승인없이 은행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2. 년도결산기마다 예비기금을 정한 비율대로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3. 업무검열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정정보고문건을 정한 기간안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않게 작성제출하였을 경우</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66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한 기간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제6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벌금과 영업중지, 은행설립취소조건을 밝히고 의견상이의 해결절차와 방법을 규제하고 있다.</p>

○ 재정상태표

북한에서는 이를 부기균형표라고도 한다. 재정상태표는 결산기간의 기업소의 재산 및 자금원천의 구성과 구조·경영활동에 대한 자금보장과 그 재정적 결과·채권채무관계·지불능력 등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작성시점에 따라 월재정상태표·분기재정상태표·년간재정상태표로 구분된다.

第 2 節 外國人投資企業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p>관 계 법 조 항</p>	<p>부기계산규정 제11조 재정상태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만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 채무, 자본은 일정한 구분, 배열, 분류, 평가기준에 따라 써넣어야 한다.</li> <li>2. 재산, 채무, 자본은 총액으로 올리며 재산항목과 채무, 자본항목을 상쇄하지 말아야 한다.</li> <li>3. 은행의 재무내용을 분석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재정상태표에 따라 밝혀야 한다.</li> <li>4. 재산의 합계액은 채무, 자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한다.</li> </ol>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일정한 날자 현재로 기업소의 재정상태를 경영재산과 자금원천의 호상관계속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재정부기결산의 기본문건.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재정상태표 - 부기계산에서 일정한 날자 현재로 기업소, 기관, 단체 등에 있는 모든 경영재산과 그것을 이루고 있는 원천을 종류별로 나누어 적어 넣은 표</p>



## 第 6 章 自由經濟貿易地帶法上 用語의 概念

### 第 1 節 自由經濟貿易地帶法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북한은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법령으로 승인하였다. 이 법은 6장 43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우리나라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 그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 법.

#### ○ 중앙대외경제기관(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내각 무역성)

북한에서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외국투자관계사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 사업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으로서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의미한다. 특히 자유무역지대와의 관계에서 중앙대외경제기관이라고 하는데,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다. 정무원은 북한의 1998년 헌법개정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은 내각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는 「내각」의 「무역성」으로 개편되었다.

중앙대외경제기관은 대외경제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그 권한과 임무에 맞게 해당한 기구와 직제·정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그 주요임무로는 국가정책에 기초한 외국투자의 유치,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과 관리운영,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및 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리운영상

第 6 章 自由經濟貿易地帶法上 用語의 概念

감독·통제,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하부구조건설에 대한 투자대상의 심사·승인 등을 들 수 있다.

<p>관 계 법 조</p>	<p>합작법 제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으로 그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합작법 제10조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조 국가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8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이 속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9조 중앙대외경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한다. 3. 하부구조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0조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지대당국을 통하여 투자신청을 받으면 해당 투자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협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p>
<p>복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관계사업,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 사업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p>

○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지대당국)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의 약칭이다. 지대당국은 중앙대외경제기관과 함께 지대관리기관의 하나이다. 지대당국은 나진-선봉 시행정경제위원회이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기구로서 대외경제위원회(무역성) 경제협조국이 조직되어 지대개발과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추진시키고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정경제부서들·외국투자의 접수·심의 및 등록과 관련한 부서들과 함께 항·출입국사업부서·외국투자봉사부서들이 속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p>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조                  국가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8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이 속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1조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 사업을 조직집행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2조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을 한다.</li> <li>2.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인신과 재산을 보호한다.</li> <li>3. 지대의 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li> <li>4.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며 총투자액이 하부구조건설부문에서 2천만원까지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li> <li>5.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li> <li>6. 투자가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li> <li>7.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li> <li>8.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제공한다.</li> <li>9. 이밖에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li> </ol>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을 실현하는 현지집행기관.</p>

○ 자유무역지대의 유통화폐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전환성의화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원과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비율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0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류통화폐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의화로 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경제무역활동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통화금융제도.

○ 특혜관세제도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두는 것에 대하여 북한은 지대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경영활동, 상품의 통과와 수출입, 가공을 비롯한 경제무역활동에서 특혜를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특혜관세제도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장려하고 지대를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중계무역, 가공수출활동과 관련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지대나 지대밖을 단순하게 시장으로 하여 판매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전한 무관세지역이 아니라 특혜관세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5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어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우리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적용되는 일반관세제도밖에 특별적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적용되는 관세제도.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특혜관세 - 특정한 나라 및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보다 특별히 낮게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 第 2 節 自由經濟貿易地帶 關聯法上 用語의 概念

### I.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人出入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1993년 11월 29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이 채택되었으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한다는 것은 '외국과 지대 사이의 왕래', '북한의 다른 지역과 지대 사이의 왕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출입국 - 출국과 입국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무사증입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보면 사증에 갈음하는 이른바 '초청장'의 휴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완전한 무사증제도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외국인이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가려는 경우에 지대안의 기관·기업소·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청한 문건을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6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청한 문건을 가지고 사증없이 들어올 수 있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지대에서는 무사증제도를 실시하며 외국인이 자유로이 거주 및 체류할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증 - 국경통과증서

○ 자동차통행증

외국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5일전까지 서면 또는 인쇄전신(Telex)이나 모사전신(Facsimile)으로 지대당국의 출입국 사무부서에 자동차통행증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15일로 되어 있다.

관계법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8조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리용하여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외국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5일전까지 서면 또는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에 자동차통행증발급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15조 자유무역항을 통하여 중계되는 무역화물을 자유경제무역지대밖의 공화국영역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실어나르려는 외국인은 자동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5일전에 해당 지역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17조 려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전에 해당 발급부서에 신청하여 기간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북한용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15일간이다.

○ 관광증

북한은 관광객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증을 요구하지 않는

다. 외국관광객이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의 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관광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해당 기관 또는 외국주재 북한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발급하는 관광증은 그 절차와 내용에서 사증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가진 다른 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북한용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해당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표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발급받아서 지대에 들어올 수 있다.

## II.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企業常駐代表事務所에 관한 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을 1994년 2월 21일 정무원결정으로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근거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 지대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대리점·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9조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 규정은 순전히 외국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설치한 상주대표사무소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2조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	---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기업이 자기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결 서를 밝힌 규정.
------	--

○ 상주대표사무소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이며 성원수는 5명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성원에는 책임자와 대표는 포함되지만, 통역원·타자수 같은 행정 기술인원과 운전수 같은 봉사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는 본기업(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 같은 봉사활동밖의 본사의 위임에 따라 대리업무활동,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추진사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동은 금지된다. 이에 관하여 국가간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3조 상주대표사무소설치는 자경무에 할 수 있다. 상주대표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이 포함된다.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4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하며 그 성원수는 5명을 넘을 수 없다.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5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본 기업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 기업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위임대리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기업의 대리위임장을 도행정 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6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본 기업의 위임대리업무활동범위를 벗어나 자체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리, 위탁판매를 하거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변경, 기간연장과 같은 신청문건은 조선어와 외국어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규정에서는 우선 상주대표사무소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이 속한다는 것과 그 상주기관과 성원, 활동범위를 밝히고 있다.

### Ⅲ. 自由經濟貿易地帶 加工貿易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가공무역규정」은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가공무역을 발전시키고 지대개발을 촉진하며 선진기술과 자본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1996년 2월 14일 정무원 결정(제8호)으로 승인되었다. 이 규정은 5장 43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가공무역을 발전시켜 생산을 정상화하고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며 외화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제정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3조 이 규정은 가공무역을 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공장, 기업소에 적용한다. 지대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들사이에도 이 규정에 따라 가공거래를 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가공무역질서를 규제한 규정.</p>

#### ○ 가공무역

북한에서 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원료나 반제품을 사다가 가공하여 다시 파는 무역방법이라고 설명된다. 또한 가공무역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대외시장의 파악, 거래상품 및 거래대상자의 선정과 함께 전환성외화획득, 가공능력, 해당 상품에 대한 가공무역 총비용 등을 잘 계산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북한은 가공무역을 통해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외화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가공무역의 강화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2조                  가공무역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수입하여 가공, 조립한 다음 그것을 수출하는 무역이다.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넘겨받아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가공, 조립하여 주고 가공비를 받는 샅가공,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일부를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가공, 조립하는 위탁가공도 가공무역에 포함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4조                  가공무역은 세계시장의 수요와 지대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의 가공능력을 잘 타산하여 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6조                  가공무역은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자동차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건재공업부분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다른 나라에서 원료나 반제품을 사다가 가공하여 다시 파는 무역방법.</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가공무역 - 원료나 반제품을 수입해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무역</p>

○ 가공무역계약(서)

가공무역에 있어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은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소재지·품명·규격·수량·포장 및 상표조건·검사기준과 방법·보장기간 및 제공지점·가공·조립제품의 보증기간·가공비·부대비용과 지불방법·지불기간·지불화폐·결제은행과 돈자리·위험부담의 범위와 한계·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8조                  가공무역계약은 가공무역을 하려는 지대안의 공장,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가공자라 한다)와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주문자라 한다)사이에 맺는다. 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소재지, 품명, 규격, 수량, 포장 및 상표조건, 검사기준과 방법, 보장기간 및 제공지점, 가공, 조립제품의 보증기간, 가공비, 부대비용과 지불방법, 지불기간, 지불화폐, 결제은행과 돈자리, 위험부담범위와 한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지대안의 공장,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기업사이에 가공무역을 위하여 맺는 계약서.</p>

○ 가공무역경제기술타산자료

가공무역경제기술타산자료는 가공무역승인신청문건의 하나에 속한다. 북한은 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당 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을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기술타산자료에는 공장·기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및 기술장비의 그 효과적 이용, 기술혁신대책, 가공무역대상의 합리성, 외화수지균형 등과 같은 자료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10조 경제기술타산자료에는 공장, 기업소가 현재 가지고 있는 로력 및 기술장비의 효과적 이용, 기술의 갱신대책, 가공무역제품의 합리적인 선정, 외화수지균형, 외화수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성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가공무역대상의 유익성을 분석평가한 자료.

○ 가공무역허가증

가공무역허가증이란 자유무역지대당국은 가공무역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20일 안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가공자(신청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가공자의 이름, 주소, 가공무역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가공무역의 기간 및 대상, 거래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가공무역계약기간과 같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등록을 하고 가공무역허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혹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대당국에 연장신청문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11조 지대당국은 가공무역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검토하고 가공무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가공무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가공무역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

<p>관 계 법 조</p>	<p>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12조 가공자는 가공무역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검토하고 가공무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가공무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가공무역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13조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가공무역계약기간과 같다.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다되었거나 가공무역허가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10일안으로 취소등록을 하고 가공무역허가증을 바쳐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41조 가공무역계약을 리행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가공무역을 중지시키거나 가공무역허가증을 회수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가공무역경영활동을 승인한 법적문서.</p>

○ 가공무역계약의 리행

북한은 가공무역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강조되는 사항을 다음의 몇가지로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은 가공무역계약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법규범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이를 보면, 계약당사자의 계약상의무의 성실한 이행 및 계약내용변경시 당사자합의후 지대당국에 통보, 보증기간내의 제품결합시 수리 및 교환, 주문자가 가공자로부터 6개월 경과후 제품불인도시 해당제품의 판매처분후 가공비·보상비공제 후 나머지 금액반환, 계약위반시 주문자는 제품인도거부후 계약상 대상의 인도요구, 가공자의 주문자의 원료 및 반제품에 대한 검사 등의 사항이다. 특히 북한은 가공무역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대외경제계약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p>관 계 법 조</p>	<p>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15조 계약당사자는 주문자의 계약리행담보를 위하여 선불금을 세울 수 있다. 가공자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문자는 선불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자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선불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상쇄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은 주문자에게 반환한다.</p>
----------------	---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계약상 의무를 정확히 집행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담보 - 어떤 성과나 결과에 대하여 미리 확증하여 책임지는 것</p>
------	---

#### IV.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人投資企業 公印彫刻 및 登錄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특정지역을 제한하여 부분적이거나 자본주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함께 대리 또는 위임을 통한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28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을 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률행위의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요구되며, 현재 국제적 관행이 서명만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에 비해 뒤떨어지는 감이 있으나 북한에서 공인조각·등록규정을 제정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식적인 의사를 신임하고 신속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의 「인감증명법」상의 인감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계법조항	<p>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인 조각, 등록, 리용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제4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부 공인도 이 규정에 따라 조각, 등록한다.</p>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을 상징하는 징표이며 공식적인 의사를 인증하는 기본수단인 공인을 조각하여야 한다.</p>

○ 공 인

북한은 공인의 개념을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증표이며 공식적인 의사를 인증하는 기본수단”이라고 설명하고, 그 형식과 모양을 정하여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은 금속이나 수지·나무·고무 같은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인장 등을 전문적으로 세기는 도장방에서 조각하거나 자체로 조각하는 통상의 인장과 다름없지만, 정해진 규격과 형태에 맞게 만들어 당국에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의 직경 또는 길이는 38mm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제2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증표이며 공식적인 의사를 인증하는 기본수단이다.</p> <p>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제6조 공인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표식에는 인민들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흐리게 하거나 나라들사이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수 없다.</p> <p>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제16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책임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입원, 외국출장과 같은 일로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공인을 쓸 수 있다.</p> <p>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제17조 공인은 공적인 문건에만 찍는다. 공적인 문건에는 비준문건, 통계문건, 증명문건, 확인문건, 계약문건, 합의문건, 신청문건, 청구문건 같은 것이 포함된다.</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을 상징하는 징표이며 공식적인 의사를 인증하는 기본수단인 공인을 조각하여야 한다.</p>

○ 공인조각

공인조각은 외국투자기업이 창설승인을 받은 후 공인조각신청이 지대당국에 의하여 승인되면 공인조각·등록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공인의 둘레에 조각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표

식은 공인의 중심에 조각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명판·봉합도장·증명도장·확인도장은 별도의 지대당국의 승인없이 기업책임자의 승인만으로 조각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공인에 조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조선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어 명칭을 부가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제3조 공인조각을 승인하는 사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하며 공인을 등록하는 사업은 라진-선봉시안전국(이 아래부터는 사회안전기관이라 한다)이 한다.</p> <p>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제8조 공인에 조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조선어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외국어로 된 명칭을 더 포함시켜 표기할 수 있다.</p> <p>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제11조 공인을 조각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인조각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공인조각신청서에는 해당한 신청내용을 밝히고 공인도안과 도안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공인을 조각하려면 신청내용과 공인도안, 도안설명서를 첨부한 공인조각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하며 창설승인을 받은 조건에서 공인을 조각할 수 있다.</p>

○ 공인등록

공인을 조각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인을 조각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사회안전기관에 공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공인등록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공인조각승인서 사본, 도장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장표는 실제로 공인을 압날하여 찍혀진 실물대용의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계법조항	<p>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제15조 공인등록은 공인등록부에 한다. 공인등록부에는 등록번호, 등록기관명, 소재지, 등록날자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공인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도장표를 붙인다.</p>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공인등록은 공인등록부에 한다.</p>

## V. 自由經濟貿易地帶 工業地區開發 및 經營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공단지구를 나누어 지역별 공업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기 위한 규범 및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을 1996년 4월 30일 정무원 결정으로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상업구역·상업용주택구역·관광 및 봉사구역·비행장·항만·고속도로의 건설 및 경영에 관해서도 이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이 된다.

관계법조항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4조 이 규정은 지대안의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부터는 개발업자라 한다)에 적용한다.</p>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국제화물중계기지로,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수출가공기지로, 국제적인 관광기지로 개발될 것이다.</p>

### ○ 공업지구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공업지구에는 한 개 또는 여러개의 현대적인 기업체로 이루어진 구역이 포함되며 공업지구개발에는 외국투자자에게 일정한 기간 토지를 개발용지로 임대하여 주고 그가 공업지구의 토지정리, 하부구조(상하수도·난방·전기·도로·통신 등), 기본건축물(생산건물·공공건물·보조건물·부속건물 등)을 건설하게 하는 종합개발과 하부구조만을 종합적으로 건설하게 하는 부문개발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공업지구의 종합개발과 부문개발 뿐만 아니라 상업구역, 상업용주택구역, 관광 및 봉사구역, 비행장·항만·고속도로의 건설 및 경영에 관해서도 공업지구 개발 및 경영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2조                  공업지구에는 한 개 또는 여러개의 현대적인 기업체로 이루어진 구역이 포함되며 공업지구개발에는 외국투자자에게 일정한 기간 토지를 개발용지로 임대하여 주고 그가 공업지구의 토지정리, 하부구조(상하수도, 난방, 전기, 도로, 통신), 기본건축물(생산 건물, 공공건물, 보조건물, 부속건물)을 건설하게 하는 종합개발과 하부구조만을 종합적으로 건설하게 하는 부문개발이 포함된다.                  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3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다. 상업구역, 상업용주택구역, 관광 및 봉사구역, 비행장, 항만, 고속도로의 건설 및 경영도 이 규정에 따라 한다.</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수출가공기지로서의 사명에 맞게 다음과 같이 10개 지역에 공업구를 형성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공업지구 - 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이 집중적으로 건설 배치됨으로써 그 지역의 총생산량에서 공업생산량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지구</p>

○ 공업지구개발(계획)

북한의 공업지구개발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나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개발업자는 대상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과 투자합의를 거친 후 지대당국에 공업지구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공업지구개발계획은 지대와 관련한 국토건설총계획과 산업 및 부문별 건설총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을 접수한 지대당국은 20일안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수정·보충·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업지구개발계획을 심사·승인받은 개발업자는 토지임대와 관련한 북한의 법규범에 따라 지대당국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 공업지구개발은 외국측 투자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북한의 기관·기업소와 합영 또는 합작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을 합영 또는 합작으로 추진하는 경우 북한측 투자자는 토지를 투자지분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측 투자자는 법규범에 따라 지대당국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을 받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7조                  공업지구개발에 참가하려는 개발업자는 대상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과 투자합의를 한 다음 지대당국에 공업지구개발계획을 내야 한다. 공업지구개발계획은 지대와 관련한 국토건설총계획과 산업 및 건설총계획에 맞게 세워야 한다.</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8조                  지대당국은 공업지구개발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계획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정, 보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9조                  공업지구개발계획을 심사승인받은 개발업자는 토지임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지대당국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11조                  공업지구개발은 외국측 투자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자가라 한다)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14조                  공업지구개발을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 공화국측 투자자는 토지를 투자몫으로 출자할 수 있다. 토지를 투자몫으로 출자하려는 공화국측 투자자는 해당한 법적수속을 거쳐 지대당국으로부터 토지리용권을 받아야 한다.</p>
<p>북한응례</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전망적으로 2010년까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21세기의 세계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국제교류거점으로 건설할 것으로 예견한다.</p>

○ 공업지구개발업자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공업지구의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설계안을 만들어 지대건설감독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개발업자가 제기한 공업지구개발설계 합의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하여 합의하거나 수정·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에 자체로 여러 외국투자자를 끌어들이 수 있으며, 해당 외국투자자는 개발업자가 선택하여 지대당국에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체 경영할 수 있으며 경영방법을 자체로 정한다. 반면 개발업자가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제3자에게 판매를 통하여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대당국에 넘겨주어야 한다.

<p>관계법조</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10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설계안을 만들어 지대건설감독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개발업자가 제기한 공업지구개발계획합의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고 합의해주거나 공업지구개발설계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발업자에게 수정,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18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공업지구의 개발이 계약에 종한 양도조건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임대료의 전액을 지불하고 총투자액의 30%이상을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개발구역안의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19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양수인을 자체로 정할 수 있다.</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24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체로 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경영방법은 개발업자가 정한다.</p> <p>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제25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안의 행정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공화국의 해당기관은 개발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공업지구안에 필요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동북아세아 및 세계 경제발전추세에 맞게 라진-선봉지역을 종합적으로 발전된 국제적인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당면단계는 2000년까지이며 전망단계는 2010년까지이다.</p>

## VI. 自由經濟貿易地帶 廣告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북한은 1996년 4월 30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광고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광고활동을 활발히 하고 광고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고 광고사업에서의 제도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한다. 기업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서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에서 북한의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위해 자본주의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자

第 6 章 自由經濟貿易地帶法上 用語의 概念

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북한의 대외특별법의 하나이다.

관계법조항	<p>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광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광고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고 광고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제1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광고물의 제작·설치를 수정 또는 중지시키거나 5,000원~1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p>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외국투자가는 출판물이나 방송보도수단에 의한 광고업을 제외한 광고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p>

○ 광고

북한에서 광고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개광고·안내광고·주문광고·알림광고·모집광고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거래의 형태에 따라서도 광고주가 직접 매체사에 광고를 하는 경우의 직거래 광고나 관공서의 공고(홍보)광고, 광고기업을 통하여 광고계약에 의한 광고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광고도 보통 유료로 매체를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유형으로서의 광고의 개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p>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제2조 광고에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개광고, 안내광고, 주문광고, 알림광고, 모집광고 같은 것이 포함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제4조 광고는 광고주가 직접할 수 있으며 광고기업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광고기업(이 아래부터는 광고업자라 한다)에는 광고판, 광고탑, 전기광고물, 전자광고판, 봉사간판과 같은 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출판물이나 방송보도수단에 의한 광고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제7조 광고의 내용은 건전하고 진실하며 친절한 것이어야 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광고-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소개 선전하는 것 또는 그 표현물</p>



○ 광고기업(광고업자)

북한에서 광고활동을 영업으로 하는 광고기업만을 광고업자라고 한다. 여기에는 광고판·광고탑·전기광고물·전자광고판·봉사간판과 같은 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광고업자의 법적 성질은 자기의 명의로 광고주의 계산하에 광고를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관계로 주선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출판물이나 방송보도수단에 의한 매체사의 광고업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제4조 광고는 광고주가 직접 할 수 있으며 광고기업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광고기업(이 아래부터는 광고업자라 한다)에는 광고판, 광고탑, 전기광고물, 전자광고판, 봉사간판과 같은 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출판물이나 방송보도수단에 의한 광고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 수 있다.
북한용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광고기업은 광고판, 광고탑, 전기광고물, 전자광고판, 봉사간판과 같은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기업이다.

○ 광고신청서 및 광고계약

광고주는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에 지대당국에 광고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광고신청서에는 광고주명·광고업자명 또는 출판보도기관명·광고명·광고 및 광고물의 형식·규격·수량과 광고물의 설치 또는 게시장소·광고물 보존기간·광고를 낼 출판물명·출판부수 및 광고내용에 대한 보도날자·시간 회수와 같은 내용들을 밝히고 광고물의 설치 또는 게시장소와 관련한 합의문건, 이 밖에 필요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대당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에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광고주와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 사이에 광고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광고계약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또는 출판보도기관명, 광고명, 광고 및 광고물의 형식,

규격, 수량과 광고물의 설치 또는 제시장소,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또는 제시기간, 광고내용에 대한 보도날짜, 시간 회수와 광고를 낼 출판물명,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광고승인과 관련한 문건,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설계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p>관계법 조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제10조</p> <p>광고주는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 지대당국에 광고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신청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또는 출판보도기관명, 광고명, 광고 및 광고물의 형식, 규격, 수량과 광고물의 설치 또는 제시장소, 광고물보존기간, 광고를 낼 출판물명, 출판부수 및 광고내용에 대한 보도날짜, 시간 회수와 같은 내용들을 밝히고 광고물이 설치 또는 제시장소와 관련한 합의문건, 이밖에 필요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제12조</p> <p>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광고주와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 사이에 광고계약을 맺어야 한다. 광고계약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또는 출판보도기관명, 광고명, 광고 및 광고물의 형식, 규격, 수량과 광고물의 설치 또는 제시장소,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또는 제시기간, 광고내용에 대한 보도날짜, 시간 회수와 광고를 낼 출판물명,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광고승인과 관련한 문건,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설계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광고 -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소개선전하는 것 또는 그 표현물.</p>

## VII. 自由經濟貿易地帶 中繼貿易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 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북한의 무역회사 뿐만 아니라 외국회사의 지사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중계무역활동에 대한 질서를 바로 세워서 중계무역업자들이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관계법조항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1조</p> <p>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질서를 세우며 중계무역업자들이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 중개무역 - 상품거래가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제3자를 거쳐서 진행되는 무역. 간접무역이라고도 한다.</p>

○ 중계무역

일반적으로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차익을 남기고 수요국에 전매하는 방식을 말하고, 이에 비해 중개무역은 제3국과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국가를 경유하여 대금결제 이루어지는 방식에 의해 수출입국간에 중개·알선하는 간접무역을 의미한다. 북한은 외화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른바 무역일꾼들의 외화벌이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것이 수입물품을 제3국에 다시 수출하는 무역형태로서 자체의 수출상품없이 무역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외화획득이 가능한 간접무역형태로서 이른바 '되거리무역'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중계무역에 관하여 북한은 "이 나라의 것을 가져다 저 나라에 넘기고 저 나라의 것을 가져다 이 나라에 넘기는 무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2조</p> <p>중계무역은 이 나라의 것을 가져다 저 나라에 넘기고 저 나라의 것을 가져다 이 나라에 넘기는 무역이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4조</p> <p>지대에서 합법적인 중계무역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무역회사와 다른 나라 회사의 지사, 대리인(이 아래부터는 중계무역업자라 한다)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중계무역업자는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다른 나라의 상품을 수입하여 다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무역</p>

○ 중계무역품

북한이 중계무역에서, 예를 들면 북한이 어느 한국가에서 100\$의 물품을 수입하여 다른 국가에 120\$를 받고 수출하는 경우를 중간무역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거래되는 물품을 통과물품으로서 '중계무역품'이라고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7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수출입허가, 가격승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8조 반출입하는 중계무역품의 출하지, 수량, 원산지, 상표조건은 제한하지 않는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9조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동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계무역품은 반입할 수 없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10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11조 중계무역품을 반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이 아래부터는 지대세관이라 한다)에 반출입신고서를 내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12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신고는 중계무역업자의 세관신고원이 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13조 중계무역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중계무역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중계 - 계삼자의 자격으로 당사자사이에 들어서 일을 주선하는 것</p>

○ 중계무역품의 보관 및 가공

북한에 들어온 중계무역품은 창고나 야적장과 같은 일정한 보관시설을 갖춘 장소에만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

별한 경우 세관이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중계 무역품은 제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의 선별·포장·조립과 같은 가공을 할 수 있는데,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대상 및 내용, 가공자 및 가공장소, 가공기간 등을 밝힌 신고서를 지대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가공은 중계 무역업자가 직접하거나 지대 안의 기업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공무역에 관해서는 가공무역규정에 의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14조 중계무역품은 창고, 야적장과 같은 일정한 보관시설을 갖춘 장소에만 보관할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15조 중계무역품의 보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특별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16조 중계무역품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관기간 연장신청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지대세관은 보관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17조 중계무역품의 보관료는 집입자가 부담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18조 중계무역품은 제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의 선별, 포장, 조립과 같은 가공을 할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19조 중계무역품을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가공대상, 가공내용, 가공자 및 가공장소, 가공기간 같은 것을 밝힌 신고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20조 중계무역품의 가공은 중계무역업자가 하거나 지대안의 기업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가공무역 - 다른 나라에서 원료나 반제품을 사다가 가공하여 다시 파는 무역방법.</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가공 - 모양을 아주 고치거나 다른 물품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원료나 소재에 품을 들이고 손을 대는 것</p>

○ 중계무역품의 감독통제

중계무역품의 반출입, 보관 및 가공 등에 대한 감독 및 통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세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감독내용은 반입금지물품의 감독, 정확한 품종과 수량에 대한 감독, 지정된 장소에의 보관여부, 신고한 내용에 맞게 가공하고 있는가의 감독 통제이다.

관 계 법 조 항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23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 보관 및 가공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대세관이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24조 지대세관의 감독통제내용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입이 금지된 중계무역품이 들어오지 않는가를 감독한다.</li> <li>2. 반입되었던 중계무역품의 품종과 수량이 정확히 반출되는가를 감독한다.</li> <li>3. 중계무역품을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보관하고 있는가를 감독한다.</li> <li>4. 중계무역품을 지대세관에 신고한 내용에 맞게 가공하고 움직이는가를 감독한다.</li> </ol> <p>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제2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00~1,500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중계무역을 몰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대안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자를 들여오는 경우</li> <li>2. 중계무역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li> <li>3. 중계무역품을 소매(전분판매는 제외)하는 경우</li> <li>4. 지대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계무역품을 가공하는 경우</li> </ol>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가공무역계약의 리행 - 계약상 의무를 정확히 집행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p>

VIII. 自由經濟貿易地帶 觀光規定上 用語의 概念

○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광을 통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자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관광에 관하여 처음으로 법규범을 마련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부분적이거나 관광분야에서 자유로운 관광여행을 허용하고 관광투자를 유인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진흥시키려는 정책적 의도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남한의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광을 통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북한용례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라진-선봉지구와 린접한 지역에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 관광객

관광규정에 의하면, 외국인과 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가 관광객이 되며, 이들에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자유로운 관광이 허용되며,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대밖의 북한영역안에서의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주민도 이에 의거하여 북한관광을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2조 외국인과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관광객이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관광객은 정한 질서에 따라 지대밖의 공화국영역안에서도 관광을 할 수 있다. 관광에는 여행을 통한 구경, 인식, 휴양, 연구, 오락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5조 관광객의 지대출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여행승인문건에 따라 한다. 관광여행승인 문건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지대관광관리기관이라 한다)이나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관광증 또는 관광여행증과 같은 증명문건이 포함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6조 관광객의 신변안전은 법적으로 담보된다. 관광객은 관광여행봉사, 생활봉사, 의료봉사와 같은 필요한 봉사를 보장받는다.</p>
-------	---

第 6 章 自由經濟貿易地帶法上 用語의 概念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15조                  관광객은 지대의 개발, 투자, 기업 창설 및 운영, 과학기술교류 및 경제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해당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과 협의하거나 그와 관련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16조                  관광객은 관광여행기간에 공화국의 법과 규정, 사회질서를 지키고 주민들의 레의도덕과 생활풍습 같은 것을 존중하여야 하며 관광여행을 그 어떤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관광객 - 관광하는 사람</p>

○ 관 광

북한에서의 관광은 북한과 외국간의 관광협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여행을 조직하는 회사(지대관광여행사)와 외국의 관광회사·기관·기업체·단체 및 개인간의 관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의 이념하에 국적·민족·정견·신앙에 관계없이 나라와 지역·개인들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교류하는 원칙하에 관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대외정책의 이념을 내세우는 자주·평화·친선이 강조되고 있으며, 차별없는 관광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3조                  관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관광협정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여행을 조직하는 회사(이 아래부터는 지대관광여행사라 한다)와 다른 나라의 관광회사, 기관, 기업체, 단체 및 개인 사이에 맺은 관광계약에 따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4조                  관광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 밑에 국적, 민족,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나라와 지역, 개인들 사이에 서로 리해하고 협력, 교류하는 원칙에서 한다.</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금강산과 칠보산, 경성온천들에 대한 관광도 예견하고 있다. 관광을 다양화, 다각화, 국제화 할 것을 예견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관광 -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인민경제의 발전면모, 력사유적등을 구경하는 것</p>



○ 관광여행

북한에서 관광여행의 형식이나 방법은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관광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회사 또는 관광을 직접 조직하는 해당국가의 기관·기업소·단체를 통하여 지대관광여행사에 소정양식과 요건에 의한 관광여행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대관광여행사의 소정절차를 거쳐 관광이 승인되면 별도의 사증(Visa)없이도 여행이 가능하며, 지대안의 외국인이 북한의 다른 지역을 관광하려는 경우 지대안의 관광봉사기관에 별도의 관광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10조 관광여행은 단체별로 하거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11조 관광객은 체류지의 관광회사 또는 관광을 직접 조직하는 해당 나라의 기관, 기업체, 단체를 통하여 지대관광여행사에 관광여행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광여행신청문건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별, 국적, 거주지, 직장, 직위, 려권 종류 및 번호, 관광기간, 관광지, 관광증을 받을 장소(나라 또는 대표부의 이름)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이 지역에서 국제적인 관광업을 널리 발전시킬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p>

○ 관광관리기관

지대관광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관장은 국가관광지도기관의 지도하에 지대관광관리기관이 담당하되, 두 기관은 국제적인 관광추세에 맞게 외국과 세계 및 지역적 협조기구·국제기구들과 관광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강조된다. 지대관광관리기관은 관광증 또는 관광여행증과 같은 관광여행승인문건을 발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관광관리기관은 관광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외관광시장의 조사 및 확대·대외관광선전·관광봉사활동에 대한 조절 및 감독·관광여행의 승인·관광봉사자의 양성·관광업에 대한 합의·기타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14조 지대관광관리기관과 지대관광여행사, 지대관광봉사기업(려관, 식당, 운수, 참관대상, 상점, 유희오락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25조 관광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관광관리기관, 지대관광여행사, 지대관광봉사기업이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26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지대관광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행, 대외관광시장의 조사 및 확대, 대외관광선전, 관광봉사활동에 대한 조절 및 감독, 관광여행의 승인, 관광봉사일군의 양성, 관광업에 대한 합의, 이밖에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31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지대안의 관광지과 관광대상을 개발하거나 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유희관광과 학술관광, 체육관광을 배합하여 진행할 것을 예견한다.</p>

○ 관광봉사기업

관광봉사기업은 여관·식당·운수·참관대상·상점·유희오락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장하고, 생명이 위급한 관광객이 생겼을 경우 필요한 구급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14조 지대관광관리기관과 지대관광여행사,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18조 지대관광봉사기업은 지대관광여행사 또는 관광객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봉사를 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19조 지대관광여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관광봉사 시설과 설비를 관광수요에 맞게 꾸리고 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관광객은 관리봉사를 계약대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	---

관계법조항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28조</p> <p>지대관광봉사기업은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봉사를 하며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정형, 봉사시설리용정형과 같은 자료를 달마다 1차씩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국제관광경로에로의 연결과 중국, 로런 접경지역에로의 국제관광봉사도 예견한다.</p>

○ ‘지대관광여행사’

지대관광여행사는 관광객에 대해 계약대로의 관광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대관광여행사는 관광객이 천막 또는 숙박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가져오는 경우 숙박용지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광외의 목적으로 지대에 왔던 관광객에 대해 관광봉사를 해주어야 한다. 지대관광여행사는 관광객의 접수와 안내, 관광봉사조직등을 담당하며 관광봉사현황을 종합하여 분기에 1회씩 관광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관계법조항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14조</p> <p>지대관광관리기관과 지대관광여행사, 지대관광봉사기업(려관, 식당, 운수, 참관대상, 상점, 유희오락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21조</p> <p>지대관광여행사는 관광밖의 목적으로 지대에 왔던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가 관광을 신청하는 경우 관광봉사를 조직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24조</p> <p>지대관광여행사는 지대관광봉사기업과 봉사계약을 맺었을 경우 계약에 따라 해당한 봉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27조</p> <p>지대관광여행사는 관광객의 접수와 안내, 봉사맞물림과 같은 관광봉사조직을 하며 관광봉사정형을 조합하여 분기 1차씩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p>
북한용례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p> <p>조선동해의 해안선을 따르는 바다관광유람을 예견한다.</p>

### IX. 自由經濟貿易地帶 外國投資家代理人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 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을 승인하였는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 투자와 관련한 절차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투자당사자로서 외국투자가의 효과적인 투자를 위하여 대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북한에서 대리행위는 북한민법상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이 법에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인을 통해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조).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집임자 대리업무규정」과 함께 북한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제정된 것이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투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 투자와 관련한 수속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제5조 대리인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위임한 자(이 아래부터는 본인이라 한다)의 권리와 리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대리인 - 대리의 도움을 받는 본인 또는 피대리인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 ○ 대리인

대리인규정에서의 인적 제한으로서 '본인'은 조선동포를 포함하여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가에 한하고, 이들은 북한의 기관·기업소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군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대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가에 의해 선정될 수 있는 대리인으로는 대외경제 및 외국투자와 관련한 학위, 학직소유자와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서 3년이상 일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을 보유한 일군이 외국투자

가대리인이 될 수 있다. 외국투자가대리인은 외국투자가의 투자와 관련한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 기업창설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문건의 작성, 기업창설수속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가(조선동포 포함)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제3조 대리인은 외국투자가의 투자와 관련한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 기업창설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문건의 작성, 기업창설수속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제4조 대리인으로는 대외경제 및 외국투자와 관련한 학위, 학직 소유자와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서 3년이상 일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일군이 될 수 있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대리인 - 어떤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지닌 권한과 의무를 맡아서 행사하는 사람</p>

○ 위임대리계약(서)

대리인은 관계기관과 합의한 다음 외국투자가와 위임대리계약을 맺어야 한다. 위임대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이름·계약날짜·대리권의 범위와 내용·대리기간·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연계방법·대리비용과 그 지불방법·제재 및 분쟁해결,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위임대리계약은 대리비를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여 지불하는 일종의 유상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위임대리계약은 투자가대리인등록신청을 하고 이를 등록부에 기록한 날부터 효력을 발하게 된다.

관계법조항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제9조 대리인은 관계기관과 합의한 다음 외국투자가와 위임대리계약을 맺어야 한다. 위임대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이름, 계약날짜, 대리권의 범위와 내용, 대리기간,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연계방법, 대리비와 그 지불방법, 제재 및 분쟁해결,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p>
-------	--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자대리인규정 제10조 외국투자자는 위임대리계약을 맺었을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소속기관 또는 기업소명, 대리인의 임무와 권한, 대리권의 범위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자대리인규정 제14조 위임대리계약은 대리인을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위임에 기초하여 하는 대리. 위임대리에서 위임은 위임계약관계나 로동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진행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위임대리 - 위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p>

○ 대리권

대리권은 타인의 명의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에게 있어야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법정대리권은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지만, 위임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권의 수여행위, 즉 위임행위에 발생원인을 갖게 된다. 대리의 위임은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는데, 공민이 대리를 구두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기관·기업소·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다.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잃은 경우에 소멸하게 된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인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자대리인규정 제15조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자대리인규정 제17조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수행한 대리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대리인과 민사거래행위를 한 제3자 앞에 책임진다.</p>
------------------	--

관계법조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자대리인규정 제20조</p> <p>대리권은 위임대리계약서에 밝힌 대리기간이 끝났을 경우, 위임대리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이밖에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효력을 잃는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p> <p>어떤 사람이나 또는 직무를 대리하는 권리</p>

○ 대리행위

북한민법상 대리인은 대리의 도움을 받은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도록 하여(제33조) 이른바 현명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대리인규정에 의하면, 무역이나 투자에 관한 기업활동의 비개인성 등에 의해 현명주의원칙이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해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게 된다. 외국인투자자대리인규정에서 대리행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로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자문사업·경제기술자료의 소개·기업창설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문서의 작성·기업창설절차 등의 사업을 들 수 있다.

관계법조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자대리인규정 제16조</p> <p>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며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자대리인규정 제18조</p> <p>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자신이 직접하거나 투자 및 기업창설을 방조하는 전문 봉사 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자대리인규정 제19조</p> <p>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p> <p>대리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그 사람앞으로 발생하게 하는 법적 제도.</p>

## X. 自由經濟貿易地帶 貨幣流通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통화와 금융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지대 안에서 화폐유통체계와 질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화폐유통체계와 질서를 세우고 화폐유통을 원활히 보장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 공화국국민(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의 화폐유통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유통화폐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다.</p>

### ○ 화폐유통

북한에서 화폐의 유통방법은 상점에서 소비품구입, 임금지불 등에 이용되는 현금유통, 즉 기관·기업소와 주민간 또는 주민들 상호간, 특별한 경우 기관·기업소 상호간 화폐거래에서 이용되는 현금유통과 공장·기업소 상호간의 거래, 국가의 기업에 대한 자금공여, 기업의 국가에 대한 납입 등의 경우에 은행에 개설된 계좌간의 차감결제에 의하여 행해지는 무현금유통이 있는데, 북한의 대부분의 화폐유통은 후자의 경우가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화폐유통의 경로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 것은 경제활동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류통화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권이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 제10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조선원을 다른 나라에 내갈 수 없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 제11조 중앙은행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공정리자률과 금융기관의 예금지불준비금의 적립비율을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대안에서 조선원현금에 대한 류통을 조절할 수 있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 제12조 공화국국민이 지대에 가지고 들어가거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조선원현금과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으로 송금하는 조선원의 한도는 중앙은행이 정한다.</p>
<p>북한용례</p>	<p>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대의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외국은행지점은 운영자금을 조선원 800만원이상에 해당한 전환성의화로 보유하여야 한다.</p>

○ 외 화

북한에서 외화는 조선원(북한 중앙은행권)을 제외한 모든 화폐와 화폐자금을 말하며 외화로 표시된 각종 청구권과 귀금속도 외화에 해당한다. 외화에는 전환성의화와 비전환성의화로 구분된다. 전환성의화는 다른 나라 화폐와 제한없이 교환할 수 있는 자유전환성의화와 몇 개의 제한된 화폐와 교환되는 제한전환성의화로 나뉘어진다. 화폐류통규정에 의하면, 조선원을 경영수입으로 하는 기관·기업소는 벌어들인 조선원을 외화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한도는 조선원을 버는데 지출된 수입상품 및 원자재대금에 해당하는 외화금액과 얻은 이윤의 70%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한 외화현금은 예금액 범위안에서 다시 외화현금으로 찾을 수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아 예금한 외화는 그 범위안에서 다시 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 제3조 지대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 또는 외화교환소에서 조선원현금과 바꾸어 써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 제21조 예금한 외화현금은 예금액범위안에서 다른 외화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으로 받아 예금한 외화는 그 범위안에서 다시 외화로 전환할 수 있다.</p>
------------------	---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자기 나라 화폐단위밖의 다른 나라 화폐단위로 표시된 현금.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외화 -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에서 값을 치르는 수단으로 되는 것 곧 금, 외국돈, 외국 유가증권, 외국은행에 맡기고 있는 예금같은 것을 통털어 이르는 말
------	--

○ 외국환자거래(외국환자은행)

북한에서 외국환자거래는 외화를 국제적으로 팔고 사는 행위를 말한다. 좀 더 넓게는 국가간의 자금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중 어느 한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채권채무를 현금 또는 금을 직접 주고 받지 않고 그것을 대신하는 지불수단에 의하여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환자거래에는 은행의 일반고객·외국환자은행·환자중개자·중앙은행이 참가하게 된다. 외국환자거래의 형태는 외국환자은행과 은행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거래와 외국환은행간 또는 환자중개인이 개입하는 외국환자은행간의 거래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제3조 지대안에서는 외화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 또는 외화교환소에서 조선원현금과 바꾸어 써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제20조 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판매하여 번 외화의 일정한 액을 외화로 전환시키는 준비금으로 거래은행돈자리에 늘 남겨놓아야 한다. 지대안의 외국환자은행은 은행돈자리에 남겨놓은 준비금을 원천으로 기관, 기업소가 번 조선원을 외화로 전환시켜주어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제22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은 조선원현금과 교환한 외화현금의 40%를 지대중앙은행지점에 의무적으로 맡겨두어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환자 - 외국화폐자금이 지불을 담보하는 모든 증권. 국내환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외국환자거래는 외국환자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교환소 - 일정한 일에서 바꾸어 주는 업무를 맡아보는 기관이나 장소

○ 환률(외국환자시세)

북한에서 환율은 조선원과 외화의 교환비율, 즉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비율을 의미하며 외환시세, 외화교환비율이라고 설명된다. 이 환율은 지대외화관리기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외화관리기관은 외화에 의한 수요와 공급을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환율을 변동·조정하며, 여기에서 정해진 환율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게 된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 제13조 조선원과 외화의 교환비율은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지대외화관리기관은 외화에 의한 수요와 공급을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환율을 변동시켜 조정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 제14조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률은 지대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 제15조 지대외화관리기관은 지대안에 외화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화조정기구는 조선원현금, 외화현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봉사기구이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한 나라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비율. 외환시세, 외화교환비율, 환률이라고도 한다.

○ 외화교환증

북한에서 기관·기업소와 개인은 외화현금을 조선원현금과 바꾸었을 경우에는 외화교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교환한 조선원현금은 외화교환증에 밝힌 교환액의 범위 안에서 다시 외화현금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이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는 조선원현금으로 내주거나 일정한 한도 안에서 외화현금으로 내주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곳으로 송금해 주거나 예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 제16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외화현금을 조선원현금과 바꾸었을 경우 외화교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교환한 조선원현금은 외화교환증에 밝힌 교환액 범위 안에서 다시 외화현금과 바꿀 수 있다.
-------	--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제17조 개인이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으로 받은 외화는 조선원현금으로 내주거나 일정한 한도 안에서 외화현금으로 내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거나 예금으로 받아들인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현금은 유통시킬 수 없으며 조선원과 바꾸어 써야 한다.

○ 외화교환준비금

북한에서 예금한 외화현금은 예금액 범위내에서 다시 외화현금으로 찾을 수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예금된 외화는 그 범위안에서 다시 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외국환자은행은 조선원현금과 교환한 외화현금의 40%를 지대 중앙은행지점에 맡겨두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지대 중앙은행 지점은 외화와 교환한 조선원현금을 다시 외화현금으로 바꾸어주는데 필요한 외화교환준비금을 언제나 보유·관리하여야 하며, 외화교환준비금이 보유한도는 지대안에서 이루어진 외화교환액의 40%로 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제23조 지대중앙은행지점은 외화와 교환한 조선원현금을 다시 외화현금으로 바꾸어주는데 필요한 외화교환준비금을 늘 보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외화교환준비금의 보유한도는 지대안에서 이루어진 외화교환액의 40%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제24조 외화교환준비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없이 쓸 수 없다. 중앙은행은 외화교환준비금의 보유정형을 늘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화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장악, 관리, 통제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외화관리기관이다.

## XI. 自由經濟貿易地帶 境界通行檢査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 境界通行檢査규정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境界通行檢査규정」을 승인하여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境界通行檢査질서를 확립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하에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 규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며, 인적인 적용범위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는 공민과 외국인, 북한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를 '지대境界通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출입규정에서 외국인과 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관 계 법 조 항	자유경제무역지대 境界通行檢査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境界通行檢査질서를 세우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통행 - 어떤장소나 구역을 지나 다니는 것

### ○ 지대境界通行檢査기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출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출입관련업무는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에서 담당하며, 지대의 국경검역은 국경철도역과 건널길·자유무역항·공항을 포함한 국경출입지점에 있는 국경검역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대境界通行檢査는 지대통행검사소, 즉 지대境界通行檢査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대境界通行檢査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출입국사업기관과 지대출입국사업기관이 맡아 하도록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자유경제무역지대 境界通行檢査규정 제3조 지대境界通行檢査는 지대통행검사소가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境界通行檢査규정 제7조 지대출입통로밖의 境界지점으로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통행검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통행 - 어떤 장소나 구역을 지나 다니는 것
------	---

## XII. 自由經濟貿易地帶 自動車登錄規定上 用語의 概念

### ○ 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을 승인하여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무역지대의 자동차관련 등록 및 기술검사 등에 관하여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를 예방하고 그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북한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자동차이용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자동차에 대한 과세와도 관련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관계법조항	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자동차 등록 및 기술검사를 잘하여 자동차사고를 미리 막고 그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북한용례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차전거, 특수차가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연유차, 세멘트운반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트랙도르 같은 것이 속한다.

### ○ 자동차등록기관

북한에서 자동차소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자동차등록기관에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사업은 사회안전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기관은 사회안전기관이 된다. 아울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북한의 「세금법」에 따라 재정기관에 자동차이용과 관련하여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책임을 지고 감독·통제하도록 자동차등록에는 처음등록과 변경등록이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제4조 자동차등록사업은 지대 사회안전기관이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제9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제10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기술검사 증서를 발급해주고 자동차번호를 밝힌 번호판을 팔아주며 자동차기술검사에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및 기술검사 증서에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자동차번호판의 규격과 자동차번호판을 다는 위치, 자동차기술검사 절차와 방법은 자동차등록기관이 정한다.</p> <p>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제13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소유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통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리용하는 행위</li> <li>2.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를 변경시킨 다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리용하는 행위</li> <li>3.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문건을 사실과 맞지 않게 만들어 내는 행위</li> <li>4. 정한 기간안에 자동차 등록 또는 기술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li> <li>5. 등록된 자동차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다른 번호판을 달고 자동차를 리용하는 행위</li> <li>6. 고장난 차 또는 환경보호한계기준보다 배기가스를 더 내보내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행위</li> </ol>
<p>북한용례</p>	<p>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서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자동차 리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p>





## 北韓의 對外經濟關係法規 現況

법 규 명	공 포 일·근 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정	1991. 12. 28 정무원 결정 제74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 지대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 4. 8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2. 12. 11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2. 12. 11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2. 12. 11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 4. 8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 4. 8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1993. 10.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 12. 10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1993. 11.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 12. 10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1983. 10. 1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 11. 1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수정·보충 1993. 12. 10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1984. 9. 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4. 1. 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수정·보충 1994. 4. 7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1993. 11. 29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1993. 12. 30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1994. 2. 21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	1994. 2. 21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1994. 5. 2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994. 3. 29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北韓의 對外經濟關係法規 現況

자유무역항 규정	1994. 4. 28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 규정	1994. 6. 14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외화관리법시행규정	1994. 6. 27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1994. 9. 7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986. 4. 9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 법령으로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1995. 2. 2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1995. 4.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1994. 12. 28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1995. 9.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1995. 2. 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합영법 시행규정	1995. 7. 13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집임자대리업무 규정	1995. 7. 13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1995. 6. 28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채택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 및 저장규정	1995. 8. 30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합작법시행규정	1995. 12. 4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	1995. 12. 4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외국인투자기업명칭체정규정	1996. 2. 14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외국인투자기업등록규정	1996. 2. 14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1996. 2. 14 정무원 결정(제8호)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공인 조각 및 등록규정	1996. 3. 28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 개발 및 경영규정	1996. 4. 30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1996. 4. 30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가대리인 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회폐류통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국경검역규정	1996. 6. 18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경계통행검사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외국기술도입규정	1996. 8. 11 정무원결정(제45호)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격규정	1996. 9. 1 정무원결정(제46호)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기업소관리운영규정	1996. 11. 23 정무원결정(제55호)으로 승인
토지·건물의 출자규정	1996. 12. 30
임대토지부착물의 이전보상규정	1996. 12. 30
자유경제무역지대 통계규정	1997. 4. 12 정무원결정(제19호)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가내편의봉사업규정	1997. 4. 12 정무원결정(제20호)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조선원대부규정	1997. 4. 12 정무원결정(제21호)으로 승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국내투자기업창설 및 운영규정	1997. 5. 17 정무원결정(제23호)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1997.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1998.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너지관리법	1998. 5



## 參考文獻

- 「廣東省便覽, 1996」(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6).
- 「나진·선봉지대 투자환경 및 관련법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6).
- 「北韓 經濟制度의 問題點과 改革展望」(民族統一研究院, 1996. 10. 30).
- 「北韓 外國人投資關聯法 研究」(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 1993).
- 「北韓法의 體系的 考察(Ⅲ)」(法務部, 1997).
- 「北韓法制概要」(법제처, 1992).
- 「북한투자실무」(대한무역진흥공사, 1993).
-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통일사법정책자료 95-IV(법원행정처, 1995).
- 金益洙 撰, 「豆滿江開發事業(TRADP)에 대한 分野別 評價」(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5).
- 金學洙,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 金洪澤·吳剛秀,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와 對北投資推進方案」(韓國開發研究院, 1995).
- 박정동, 「북한의 경제특구 - 중국과의 비교」(한국개발연구원, 1996).
- 朴井源, 「北韓法律用語分析(Ⅲ) - 民事法 編 -」(한국법제연구원, 1997).
- 방찬영, 「북조선의 대외개방·개혁정책과 합리적 대북정책의 모색」(박영사, 1996).
- 申雄湜·安成祚,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법규 -」(한국무역협회, 1998).
- 장효상, 「국제경제법」(法榮社, 1998).
- 전홍택·이영선 撰, 「한반도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한국개발연구원, 1997).
- 諸成鎬, 「對北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민족통일연구원, 1993).
- 崔達坤·申榮鎬, 「北韓法入門」(세창출판사, 1998).
- 최종고, 「北韓法」(博英社, 1996).
- 한국비교경제학회 撰, 「비교경제체제론」(박영사, 1997).
- 權五乘, 「北韓의 外國人投資關係法」, 「北韓研究」, 제4권 4호(大陸研究所, 1993 겨울).
- 권재영, 「북한에서 합영기업의 설립과 운영」, 「統一經濟」, 1995년 12월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3).
- 김동원, 「사회주의개혁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社會主義改革과 北韓」(고려대출판부, 1993).
-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分析」, 「主要國際問題分析」(외교안보연구원, 1993. 4. 28).
- 김정환,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分析」, 「北方通商情報」, 제85호(대한무역진흥공사, 1992. 11).

參考文獻

- 金 辰,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法規”, 「法學」, 제31권 1·2호(서울대 法學研究所, 1990).
- 남궁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운용실태와 성과분석”, 「統一研究論叢」, 제3권 1호(민족통일연구원, 1994).
- ———, “북한의 경제특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統一經濟」, 1995년 12월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 동용승, “북한의 외국투자자유치 관련법제의 현황과 활용 방안”, 「남북교류협력 법제 논문자료집」, (통일원, 1996).
- 방식호, “남북한 합작투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한림과학원 편,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下)」, (소화, 1996).
- 박성호, “북한저작권물의 한국저작권법상 보호문제”, 「국제법률경영」, 1991년 1호.
- 裴鍾烈, “北韓外資法令의 問題點과 對策”, 「北韓研究」, 제6권 1호(大陸研究所, 1995 봄).
- ———, “국내기업의 북한진출시 예상되는 북한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교류협력 법제 논문자료집」(통일원, 1996).
- ———,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方向”, 「輸銀調査月報」, 1993년 3월호(한국수출입은행, 1993).
- ———,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 현황과 과제”, 「統一經濟」, 1995년 1월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3).
- 손광락, “북한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北韓 經濟制度의 問題點과 改革展望」(民族統一研究院, 1996. 10. 30).
- 신웅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월간 경영법무」, 제17호, 1995년 8월호(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 ———, “북한에서의 외환관리”, 「월간 경영법무」, 제19호, 1995년 10월호(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 ———, “北韓의 새로운 合營制度”, 「人權과 正義」, 통권231호(大韓辯護士協會誌, 1995. 11).
- ———, “북한의 중계화물수송대리제도”, 「월간 경영법무」, 제22호, 1996년 1월호(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6).
- 오승렬, “북한경제제도의 한계와 개혁방향”, 「北韓 經濟制度의 問題點과 改革展望」(民族統一研究院, 1996. 10. 30).
- 유종권,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금융제도의 개혁”, 「北韓 經濟制度의 問題點과 改革展望」(民族統一研究院, 1996. 10. 30).
- 윤진기, “북한 경제법의 발전 및 체계”, 「경남법학」, 제9집(경남대 법학연구소, 1993).
- 李啓滿, “최근의 북한 外國人投資關聯法”, 「北韓研究」, 제5권 3호(大陸研究所, 1994 가을).
- 이순우,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 「남북교류협력법·제도 실천과제 연구」(통일원, 1993).

- 張明奉, “北韓 社會主義憲法 改正(’98. 9. 5)의 背景·內容·評價”, 「公法研究의 回顧」, 第79回 學術發表會 發表論文(韓國公法學會, 1998. 12. 19).
- 全洪澤·吳剛秀,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和 對北投資推進方案」(韓國開發研究院, 1995).
- 全洪澤, “남북경협 관련 북한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統一經濟」, 1995년 1월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 鄭東潤, “北韓의 對外經濟關係法”,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 ———, “北韓對外經濟法の의 回顧와 展望”, 「北韓法律行政論叢」, 제10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5).
- 鄭在吉, “새로 제정된 北韓의 社會主義商業法에 관한 研究”, 「北韓研究」, 제3권 3호(大陸研究所, 1992 가을).
- 정주환, “북한의 합영·합작법 연구”, 「’93 北韓·統一研究論文集(VI) : 北韓의 行政 및 法制分野」(통일원, 1993).
- 諸成鎬,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분석 및 평가”, 「統一研究論叢」, 제2권 1호(민족통일연구원, 1993).
- ———, “南北經濟交流協力에 다른 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저스티스」, 제26권 2호(한국법학원, 1992).
- 崔壽永, “북한의 외자유치 추진현황과 전망”, 「統一研究論叢」, 제2권 1호(민족통일연구원, 1993).
  
- 「경제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 투자환경」(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6).
- 「라진-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 현실태와 전망에 대하여」(평양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2. 4).
- 「민사법사전」(평양 :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 「법학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조선말대사전 1, 2」(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 「황금의 삼각주 나진·선봉 투자대상 안내」(평양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3. 10).
- 「황금의 삼각주 : 라진-선봉, 법규집」(1)~(7)(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
- 방완주, 「조선개관」(평양 : 조선문출판사, 1987).
  
-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는 담보”, 「근로자」, 1989년 2호(평양 : 근로자사, 1989).

## 參考文獻

-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추어 대외무역을 더욱더 발전시키자”, 「근로자」, 1989년 9호(평양: 근로자사, 1989).
- 박명희, “공화국대외민사법의 몇가지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제4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 전익춘,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근로자」, 1986년 4호(평양: 근로자사, 1986).
- 조용봉, “민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제4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 최원철, “합영·합작을 잘하는 것은 대외경제발전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No.4(평양: 과학학보: 력사·법학), 제4권 3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3).
- 한수길,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건설에 있어서 절실한 오늘의 요구”, 「근로자」, 1991년 4호(평양: 근로자사, 1991).
  
- “사회주의상업법에 대하여”(1)~(9), 「민주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1992년 5월 8일~6월 9일.
- “보험법에 대하여”, 「민주조선」, 1995년 5월 11일.
- “재정법에 대하여”, 「민주조선」, 1995년 10월 31일.
- “가격법에 대하여”, 「민주조선」, 1997년 3월 1일.
- “무역법에 대하여”, 「민주조선」, 1998년 3월 10일, 13일, 17일.
  
- 大内憲昭, 「法律からみた北朝鮮の社會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基本法令集付 -」(東京: 明石書店, 1995).
- 西尾 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外國人投資關聯法制」(東京: 啓文社, 1997).
- 鄭鐵原,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外國投資法規概說」(東京: 明石書店, 1997).
  
- 金文成, “擴大發展している對外關係と外國人投資の展望について”, 「月刊朝鮮資料」, 1998년 1號 (東京: 朝鮮問題研究所, 1998).
- 木棚照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對外民事關係法に關する若干の考察”, 「立命館法學」, 第249號(東京: 立命館大學法學會, 1996).
- 朴三石, “在日朝鮮人による合併事業の現狀と課題(上)”, 「月刊朝鮮資料」, 제30권 5호(東京: 朝鮮問題研究所, 1990).
- 西村峯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改正合營法の研究 - 中國法との比較 -”, 「産大法學」, 第27卷 第4號, 第28卷 第2號(京都産業大學法學會, 1994. 1·7).
- 任京河,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對外民事關係法(國際私法)についての解説”, 「月刊朝鮮資料」, 1996년 1월호(東京: 朝鮮問題研究所, 1996).



- 陳吉相, “改正合營法およびに同施行細則ついて”, 「月刊朝鮮資料」, 1994년 11월호(東京: 朝鮮問題研究所, 1994).
- Bryan, Greyson/Horton, Scott/Radin, Robin.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1(1997).
- Carr, Brendon A. “Ending the Hermit Kingdom’s Belligent Mendicancy : New Openness, 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Ending North Korea’s Belligent Mendicancy*, Vol. 1, No. 1.
-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 An Assessment of Recent Laws and Regulation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8(1988).
- Merrill, John. “North Korea’s Halting Efforts Economic Reform,” Lee Chong-Sik and Yoo Se-Hee, ed., *North Korea in Transition* (Institute of East Asi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1).
- Min, Timothy J.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Law : the Foundation for Foreign Economic Relations,”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1호(서울국제법연구원, 1997).



## 用語索引

○ 가공무역 .....	305
○ 가공무역경제기술타산자료 .....	307
○ 가공무역계약(서) .....	306
○ 가공무역계약의 리행 .....	308
○ 가공무역허가증 .....	307
○ 개인소득세 .....	249
○ 개인소득세과세대상 .....	250
○ 개인소득세를 .....	250
○ 개인소득세의 계산 .....	251
○ 개인소득세의 납부 .....	252
○ 개인소득세의 면제 .....	253
○ 거래세 .....	256
○ 거래세의 계산 .....	257
○ 거래세의 납부 및 감면 .....	257
○ 결혼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 .....	152
○ 결혼조건 및 방법에 대한 준거법 .....	151
○ 경영관리기구(합영주관기관)(합영공업총국) .....	204
○ 경영기간(존속기간) .....	233
○ 경영비밀의 법적 보장 .....	184
○ 경제기술타산서 .....	216
○ 국민의 행위능력에 대한 준거법 .....	147
○ 공업소유권 .....	212
○ 공업지구 .....	312
○ 공업지구개발(계획) .....	313
○ 공업지구개발업자 .....	314
○ 공인 .....	310
○ 공인등록 .....	311
○ 공인조각 .....	310
○ 공해상 동일국적선박의 위법행위로 인한 충돌에 대한 준거법 .....	151
○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 .....	174
○ 관광 .....	324

用語索引

○ 관광객	323
○ 관광관리기관	325
○ 관광려행	325
○ 관광봉사기업	326
○ 관광증	302
○ 관세	229
○ 관세	276
○ 광고	316
○ 광고기업(광고업자)	317
○ 광고신청서 및 광고계약	317
○ 국가가격제정기관	133
○ 국가검열감독기관	134
○ 국가보험기관	135
○ 국외송금(외화송금)	183
○ '국유화'의 배제	183
○ 국토관리기관(토지임대기관)	264
○ 기술비결	213
○ 기업등록증	208
○ 기업소득세	246
○ 기업소득세률	247
○ 기업소득세의 감면	248
○ 농민시장	132
○ 대리권	330
○ 대리인	328
○ 대리행위	331
○ 대외경제계약	160
○ 대외경제계약 당사자	160
○ 대외경제계약법	159
○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	166
○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165
○ 대외경제계약의 감독·통제	161
○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163
○ 대외경제계약의 변경	164
○ 대외경제계약의 양도	163
○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162

○ 대외경제계약의 취소 .....	164
○ 대외민사관계법 .....	144
○ 대외민사관계에 대한 분쟁해결 .....	157
○ 대외민사관계에 대한 재판 또는 중재의 거부·중지 .....	157
○ 대외민사관계의 규율의 일반원칙 .....	145
○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	146
○ 도매상업기관 .....	121
○ 도시경영세 .....	259
○ 등록면허세 .....	260
○ 등록자본 .....	229
○ '로동계약' .....	240
○ '로동법' .....	195
○ '로동보수(액)' .....	239
○ '로동일수' 및 '로동시간' .....	242
○ '로력' 채용원칙 .....	239
○ '로력알선기관' .....	237
○ '로력채용계약(서)' .....	236
○ '로력'채용 및 해고 .....	180
○ '리사회' .....	192
○ 무사증입국 .....	301
○ 무역은행 .....	209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145
○ 법인(외국인기업) .....	225
○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준거법 .....	147
○ 보세제도 .....	277
○ 보증 .....	289
○ 보충적 '로동보수'(상금, 장려금, 가급금) .....	243
○ 보험가액 .....	141
○ 보험계약 .....	140
○ 보험계약의 당사자 .....	137
○ 보험금액 .....	142
○ 보험법 .....	135
○ 보험보상금 .....	141
○ 보험보상의 예외 .....	143
○ 보험자 .....	138

用語索引

○ 봉사구역담당제 .....	131
○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준거법 .....	154
○ 부양관계에 대한 준거법 .....	155
○ 북한내 법인으로의 편입 및 배제 .....	180
○ 분쟁해결 .....	185
○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공동협의회) .....	222
○ 사회급양사업 .....	128
○ 사회주의사업 .....	117
○ 사회주의사업법 .....	117
○ 상속세 .....	255
○ 상속에 대한 준거법 .....	156
○ 상업검열사업체계 .....	133
○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합리화 .....	132
○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 .....	119
○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 .....	130
○ 상주대표사무소 .....	304
○ 상품공급계약(체결) .....	123
○ 상품공급사업 .....	120
○ 상품공급제도(주문제) .....	118
○ 상품보관관리사업 .....	130
○ 상품주문서 .....	122
○ '새끼회사'(子會社)의 설립 및 기업연합 .....	179
○ 세관검사 .....	276
○ 세관법 .....	274
○ 세관법상 제재 및 신고청원 .....	278
○ 세관수속 .....	275
○ 세금미납시 연체료 .....	261
○ 세무(납부)정형 .....	232
○ 세무등록증 .....	209
○ 세무등록증 .....	245
○ 소매상업기관 .....	122
○ 손해보상청구 .....	142
○ 손해보상청구서 .....	167
○ 구매 .....	125
○ 구매계약 .....	127

○ 수매의 형식 .....	126
○ 신용보증제 .....	124
○ 신탁업무 .....	289
○ 영업허가증 .....	207
○ 영업허가증서 .....	194
○ 외국은행 .....	281
○ 외국은행지점 .....	282
○ 외국의 해당기관의 판결·재결의 불인정 .....	158
○ 외국인기업 .....	172
○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 .....	227
○ 외국인기업등록신청서 .....	228
○ 외국인기업법 .....	224
○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서 .....	228
○ 외국인기업의 창설 .....	225
○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재투자대상 .....	231
○ 외국인기업의 해산 .....	232
○ 외국인재산의 등록 .....	254
○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대상 .....	176
○ 외국인투자기업 .....	169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	181
○ 외국인투자법 .....	169
○ 외국인투자의 금지 또는 제한대상 .....	178
○ 외국인투자의 목적물 .....	178
○ 외국인투자의 장려부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특혜 .....	177
○ 외국투자가 .....	170
○ 외국투자기업 .....	244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244
○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	238
○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 .....	196
○ 외국투자은행 .....	280
○ 외국투자은행법 .....	279
○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문건 .....	285
○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제재 .....	293
○ 외국투자은행의 결산 .....	291
○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등록 .....	284

用語索引

○ 외국투자은행의 예금지불준비금 .....	290
○ 외국투자은행의 우대 .....	291
○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 .....	286
○ 외국투자은행의 적립금 .....	287
○ 외국투자은행의 해산 및 청산 .....	292
○ 외국환자거래(외국환자은행) .....	334
○ 외화 .....	333
○ 외화(외화현금) .....	272
○ 외화관리기관 .....	283
○ 외화관리법 .....	271
○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 .....	274
○ 외화교환준비금 .....	336
○ 외화교환증 .....	335
○ 외화대부 및 투자 .....	288
○ 외화유가증권 .....	273
○ 위임대리계약(서) .....	329
○ 유언에 대한 준거법 .....	156
○ 이혼에 대한 준거법 .....	153
○ 인체보험 .....	136
○ 일원화상품공급체계 .....	123
○ 입양과 파양에 대한 준거법 .....	154
○ 자금대부 .....	236
○ 자동차등록기관 .....	338
○ 자동차리용세 .....	261
○ 자동차통행증 .....	302
○ 자원성의 원칙 .....	125
○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	303
○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	305
○ 자유경제무역지대 경계통행검사규정 .....	337
○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	312
○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	322
○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	315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	301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	309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	328



○ 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	338
○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	318
○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	332
○ 자유경제무역지대(‘지대’) .....	173
○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지대당국) .....	298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297
○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재산관계에 대한 준거법 .....	149
○ 자유무역지대의 류통화폐 .....	299
○ 자유수매 .....	127
○ 재산거래행위에 대한 준거법 .....	148
○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한 준거법 .....	148
○ 재산보험 .....	137
○ 재산세 .....	253
○ 재산세를 .....	255
○ 재정검열원·재정검열위원회 .....	211
○ 재정부기계산규범 .....	235
○ 재정상태표 .....	294
○ 재투자 .....	182
○ 저작권(저작소유권) .....	212
○ 종업원의 해고 및 사직 .....	241
○ 중계무역 .....	319
○ 중계무역품 .....	320
○ 중계무역품의 감독통제 .....	322
○ 중계무역품의 보관 및 가공 .....	320
○ 중앙대외경제기관(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내각 무역성) .....	297
○ 중앙상업지도기관 .....	120
○ 중앙은행(기관) .....	282
○ 지대경제통행검사기관 .....	337
○ ‘지대관광려행사’ .....	327
○ ‘지대당국’ .....	234
○ 지방세 .....	258
○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한 준거법 .....	148
○ 직업동맹조직(단체) .....	197
○ 채권양도에 대한 준거법 .....	151
○ 청산인(청산위원회) .....	201

○ 친부모·친자녀관계에 대한 준거법 .....	153
○ 토지리용권 .....	263
○ 토지사용료 .....	270
○ 토지이용권의 반환 및 박탈 .....	271
○ 토지이용권의 재임대 .....	267
○ 토지이용권의 저당 .....	268
○ 토지이용권의 판매 .....	266
○ 토지임대기간 .....	263
○ 토지임대료(이행보증금, 연체료) .....	269
○ 토지임대법 .....	262
○ 토지임대차 계약 .....	269
○ 토지임대차제도 .....	265
○ 토지임차자 .....	264
○ 투자지분상환과 이윤분배 .....	219
○ 특혜관세 .....	277
○ 특혜관세제도 .....	300
○ 편의봉사기관 .....	129
○ 편의봉사사업 .....	129
○ 표준계약서 .....	161
○ 피보험자 .....	139
○ 합법적 권익보장 .....	174
○ 합영계약서 .....	205
○ 합영기업 .....	171
○ 합영기업에 대한 출자 .....	190
○ 합영기업의 결산 .....	198
○ 합영기업의 경영활동 .....	194
○ 합영기업의 경영활동 .....	211
○ 합영기업의 기타 기금 .....	199
○ 합영기업의 로력 .....	201
○ 합영기업의 분쟁해결 .....	204
○ 합영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활동 .....	189
○ 합영기업의 신소청원 .....	203
○ 합영기업의 예비기금 .....	199
○ 합영기업의 재정결렬원 .....	193
○ 합영기업의 재정부기계산 .....	196

○ 합병기업의 창설 및 운영원칙 .....	187
○ 합병기업의 창설절차 .....	190
○ 합병기업의 해산 및 존속기간 .....	200
○ 합병기업창설신청서 .....	207
○ 합병당사자 .....	189
○ 합병법 .....	186
○ 합병부문 .....	188
○ 합병은행 .....	280
○ 합병은행설립신청서 .....	284
○ 합병회사의 경영관리기구 및 운영 .....	193
○ 합작계약(합작기업의 설립) .....	215
○ 합작기업 .....	171
○ 합작기업의 대상 .....	214
○ 합작기업의 등록자본 .....	221
○ 합작기업의 예비기금 및 필요기금 .....	221
○ 합작기업의 존속기간 및 해산 .....	223
○ 합작기업의 투자 .....	219
○ 합작기업창설신청서 .....	217
○ 합작법 .....	214
○ 합작상 권리와 의무의 양도 .....	218
○ 해난구조계약에 관한 준거법 .....	149
○ 해상 공동손해에 대한 준거법 .....	150
○ 현물출자 .....	210
○ 화폐유통 .....	332
○ 환률(외국환자시세) .....	335
○ 회사의 기본규약 .....	206
○ 후견에 대한 준거법 .....	155



연구보고 98-11 北韓法律用語의 分析(IV)

---

1998년 12월 26일 印刷

1998년 12월 31일 發行

發行人 徐承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亞商社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화: (02)579-0090, FAX(02)579-2381

등록번호: 1981.8.11. 제1-a0190호

---

값 12,0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95-9 93360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2.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all entries are supported by proper documentation.

3.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outlines the various method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4. These methods include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each with its own strengths and limitations.

5. The final part of the document provides a summary of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6.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studied, which supports the hypothesis.

7.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underlying mechanisms and to test the findings in a larger sample.